

KOTRA COUNTRY REPORT
KOTRA 국가정보

스웨덴

I . 일반

1. 국가개요

가. 국가개황

국명	스웨덴(Sweden)
면적	450,295 km ² (자료원 : E.I.U, 2022년 9월)
수도	스톡홀름(Stockholm)
민족(인종)	
언어	스웨덴어
종교	루터교(국교, 60%)
기후	알래스카 남부 그린란드와 동일한 위도에 위치하나 이들 지역보다는 기후가 훨씬 따뜻하다. - 북부 : 냉대성 - 남부 : 온대성
국가원수	국왕: 칼 구스타브 16세(Carl XVI Gustaf) 수상 : 마그달레나 안데르손(Magdalena Andersson)(2021년 11월 29일 취임) * 2022년 9월 11일 스웨덴 총선 이후 안데르손 수상은 사임 의사를 밝혔으며, 차기 수상 및 정부 구성 진행 중 ('22. 9. 기준)

2. 한국과의 관계

가. 한국과의 국교 수립 및 교민 수

국교 수립일

1959-03-11 (자료원 : 스웨덴 외교부)

협정 발효 현황

협정명	발효일자	발효내용	비고
무역의정서	1967-04-12	무역의정서	
사증면제협정	1969-10-01	사증면제협정	
섬유협정	1979-02-01	섬유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1982-06-30	이중과세방지협정	
경제산업기술 및 과학협력협정	1985-01-01	경제산업기술 및 과학협력협정	
투자보장협정	1995-05-01	투자보장협정	
군사기밀보호협정 및 국방협력양해각서	2009-12-01	군사기밀보호협정 및 국방협력양해각서	
과학기술협력협정 발효	2009-10-01	과학기술협력협정 발효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협약	2010-09-09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협약	
한-스웨덴 사회보장협정	2015-06-01	한-스웨덴 사회보장협정	

한국교민 수

13,055 명 (자료원 : 스웨덴 동포현황 13,055명(재외국민 2,018명, 시민권자 11,037명), 자료원 : 주스웨덴 한국대사관/ 2022.9월)

나. 최근 양국간 현안이슈

정치

한국전 당시인 1950년 스웨덴은 169명으로 구성된 의료지원단을 한국에 파견, 야전 병원을 지원했고 1959년 3월 11일 우리나라와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한-스웨덴 관계는 1959년 수교 이래 꾸준히 발전, 2009년 양국 수교 50주년에 이어 2010년도에는 한국전 60주년을 계기로 그간 구축돼온 양국 간 포괄적 협력 관계(comprehensive partnership)가 정부, 경제, 사회, 문화뿐 아니라 과학기술, 환경 및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확대 발전됐다. 한-스웨덴 수교 60주년이 된 2019년에는 한국과 스웨덴 양국에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였다. 6월에는 스웨덴 국왕초청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스웨덴을 국빈방문했으며, 12월에는 스테판 뢰벤 수상이 한국을 공식방문 하였다.

한국은 1963년 7월 주 스웨덴 한국대사관을 개설하였고, 스웨덴은 1979년 4월 주한 스웨덴 대사관을 설치했다. 2022.5월 기준 주한 스웨덴대사는 다니엘 볼벤(Daniel Wolven) 대사이다.

스웨덴은 1953년 이래 스위스와 더불어 중립국 감독위원회(NNSC) 일원으로 활동 중이다. 스웨덴은 북한과도 1973년 4월 외교 관계를 수립했으며, 주북한 대사관은 1975년 3월 개설했다. 그동안 주 중국 대사가 주 북한 대사를 겸임해 왔으나 2005년 가을부터 평양에 대사를 직접 파견했다. Andreas Bengtsson 대사가 주 북한 스웨덴대사로 재임 중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어려움으로 2021년 9월 1일 대사와 2등서기관 등 본국 파견 외교관 2인 모두 스웨덴으로 귀환했다. 스웨덴은 현재 남한과 북한 양측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남북한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 안드레아스 노를렌 의장 공식 방한

2022년 4월 10일부터 4월 14일까지 대한민국 국회 초청으로 안드레아스 노를렌 스웨덴 국회의장이 공식 방한했다. 2020년 박병석 국회의장 스웨덴 순방에 대한 답방의 성격으로, 박병석 의장은 수차례 회담 및 오,만찬 등을 진행하며 큰 환대와 예우의 뜻을 표현하여 양국의 협력관계 강화 및 양국 의장 간 우호관계와 신뢰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주요 일정으로는 4월 11일 국회 방문으로, 김부겸 국무총리 및 주요 정치인과의 면담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국회연설 청취가 있었다. 그밖에 정치, 경제, 문화계의 다양한 행사 및 관계자와의 만남을 통해 한국에 대한 이해 및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기회가 되었다.

○ 스테판 뢰벤 수상 한국 국민방문

스테판 뢰벤 스웨덴 수상은 2019년 12월 18~20일까지 한국을 국민방문하였다. 2019년 6월 한-스웨덴 수교 60주년 기념으로 스웨덴을 국민 방문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취해진 동 방문에는 외무부장관과 다수 기업인이 동반했다. 스테판 뢰벤 수상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낙연 전 총리를 예방하고 Korea-Sweden Business Summit에도 참석하는 등 한-스웨덴 현안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양국 간 협력을 다짐했다.

○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 스웨덴 국민 방문

칼 구스타프 16세 스웨덴 국왕 초대로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가 2019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스웨덴을 국민 방문했다. 스웨덴과 대한민국이 수교 6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스웨덴을 국민방문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6월 14일 오전 공식환영식 참석을 시작으로 공식일정을 시작했다.

칼 구스타프 16세 스웨덴 국왕은 공식환영식에서 '한국과 스웨덴은 민주주의, 인권, 개방된 경제라는 공통가치를 공유하고 있고, 이런 가치들은 양국 간 우정의 튼튼한 기반으로 이번 문 대통령 내외의 국민방문은 이런 양국 관계를 강화하자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문 대통령의 방문을 높이 평가했고, 대통령 내외의 방문기간 동안 디지털화, 지속가능성, 연구, 사회복지, 혁신, 보다 포용적인 사회 만들기 위한 노력 등 여러 분야에 관심을 두고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답사를 통해 스웨덴과 한국의 인연과 친밀함을 강조한 뒤 이번 국민방문이 양국 국민이 더욱 친밀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이번 스웨덴 방문에서 정치와 기업, 복지와 문화를 비롯한 다양한 현장을 방문하여 스웨덴의 비전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배우려고 한다'는 의지를 전했다.

한편, 스웨덴 의회를 방문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신뢰'를 주제로 연설했으며, 14일 오후에는 '한국-스웨덴 경제협력 Beyond 60, 혁신을 위한 Collaboration'을 주제로 한 '한-스웨덴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하여 기조연설을 했다. 이 자리에는 스웨덴 칼 구스타프 16세 국왕, 스테판 뢰벤 총리가 직접 참석하여 양국 정상이 함께 자리한 가운데 한국에서 동행한 52개사 100명의 경제사절단과 스웨덴 측 기업인 100여 명, 양국 정부인사 등 총 230여 명이 참석해 한-스웨덴 경제협력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6월 15일에는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Kista Science City)에서 열린 '5G 시연행사' 및 'e-스포츠 친선교류전'에 참석, 5G 및 5G 기반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여 양국 간 ICT 파트너십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오후에는 한국전에 참전한 스웨덴 참전용사의 인도주의적 실천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건립한 '한국전 참전비 제막식'에 참석하는 등 다양한 공식행사에 참석하였다.

- 칼 구스타프 16세 스웨덴 국왕 내외,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참관 위해 한국 방문

칼 구스타프 16세 스웨덴 국왕 부부가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참관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1973년 즉위 이후 공식·비공식 방문을 합쳐 여섯 번째의 한국방문으로 국민방문은 아니다. 국민방문은 2012년 5월, 2009년 7월 이명박 전 대통령 내외의 스웨덴 국민방문에 대한 답방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이자리에서 이 전 대통령과 만나 글로벌 리더로 발돋움하려는 한국과 스웨덴의 공동 번영 방안(양성평등, 복지 사회, 통상 증진 등) 분야에서 한국과 스웨덴 간 우호 관계를 증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경제

- 한-스웨덴 사회보장협정 체결

한국과 스웨덴은 2013년 9월 9일 요란 해그룬드 스웨덴 전 보건복지부 장관 방한을 계기로 양국 사회보장협정에 서명하였고, 양국회의의 비준을 거쳐 2015년 6월 1일 한-스웨덴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됐다.

- 연금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 한국 고용주는 한국에서 스웨덴으로 파견된 근로자(2년 미만)에 대해 한국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스웨덴 사회보험청에 사회보장세를 이중으로 납부하고 있었다. 협정 발효로 한국 고용주는 스웨덴 사회보험청에 납부하는 사회보장세(근로자 임금의 31.41%) 중 소득기초 노령연금, 유족연금 등 연금 관련 항목은 면제받을 수 있다.

- 한국에서 파견된 근로자가 2년 이상 스웨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스웨덴 사회보험청에 상기 항목에 대한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단, 양국의 당국이나 실무기관이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 합의를 한다면 납부면제 기간 연장이 가능할 수도 있다.

- 면제 신청 절차: 한국 본사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 국제협력센터에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 증명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스웨덴 현지법인으로 전달, 현지 법인이 스웨덴 사회보험청에 제출해야 한다.

- 우리나라와 스웨덴에 납부한 장기 파견자의 연금보험료 가입 기간 합산: 양측의 가입 기간을 합산해도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한-스웨덴 양국이 모두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제3국의 연금가입 기간도 합산한다.

- 연금 급여의 해외 송금 보장: 연금 수급권자가 상대국에 거주하는 때도 급여 수령 가능하다.

*단, 스웨덴의 보충연금, 유족 자녀수당은 해외 송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화

- 국제백신협회(IVI) 유럽사무소 스톡홀름에 설립

서울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백신연구소(IVI)의 유럽사무소가 스톡홀름에서 개소하였다. 국제백신연구소는 세계보건을 위한 백신의 발굴, 개발 및 보급을 위한 국제기구로, 2021년 스웨덴 외교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본부 외 첫 지역사무소인 유럽사무소를 스톡홀름에 설립하기로 결정하였다. 유럽사무소는 2022년 9월 운영을 시작하고 사무소장 정신 선임 과정에 있으며, 9월 5일~10일 사이 IVI의 대표적인 연수과정인 '국제백신학연수과정'을 서울 본부와 함께 개최하여 155개국 7,3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 주스웨덴 한국문화원 설립

스웨덴 국민의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한국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2022년 하반기 주스웨덴 한국문화원이 개관 예정이다. 한국문화원은 한국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상설전시관과 대규모 세미나 시설 등을 준비 중이며, 한국과 스웨덴 사이의 문화적 가교가 되는 공간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 스웨덴 내 한류

2022년 상반기 스웨덴 민영방송사 TV4에서 SBS 드라마 <모범택시>,<Trap(트랩)>을 방영하는 등 한국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작년 큰 인기를 끌었던 오징어 게임의 여파로 보인다. 또한 2022년 2월에 있었던 방탄소년단의 서울 콘서트는 스웨덴 전역의 일부 영화관에서 생중계되었고, 해당 공연의 온라인 관람권은 일찌감치 매진되는 등 스웨덴에서의 높은 열기를 보여주었다.

- 예테보리 세종학당 개소

2020년 7월 1일부로 예테보리 세종학당이 개소했다. 기존에 활발히 운영하고 있었던 예테보리 한글학교를 이어받은 것으로, 2020년 하반기부터 세종학당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세종학당은 한국어 강좌뿐 아니라, 한국 문화 행사를 열어 스웨덴 사람들이 다방면으로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

- 한국-스웨덴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협정 체결

한국-스웨덴 양국 간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협정이 2010년 9월 9일 스톡홀름에서 서명됐다. 2010년 11월 1일 발효된 한-스웨덴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은 양국 청년들에게 상대 국가에서 최장 1년 동안 체류하면서 관광과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로써, 18~30세의 우리 국민이 참여할 수 있다. 협정 체결로 우리 청년들이 저렴한 비용과 간단한 절차로 스웨덴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현지의 언어와 문화를 접할 수 있게 됐다.

스웨덴은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에 이어 우리와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협정을 체결한 8번째 국가이며, 스웨덴으로서는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에 이어 한국이 4번째로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협정을 체결한 국가이다.

3. 경제현황

가.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2018	2019	2020	2021	2022
경제성장률 (%)	2.32	0.94	-3	4.9	
명목GDP (십억\$)	556.07	528.93	5,374	5,444	
1인당 GDP (PPP, \$)	53,651.79	54,628.1	54,928	61,353	
1인당 명목 GDP (\$)	54,356.07	51,241.91	53,719	60,932	
정부부채 (% of GDP)	38.46	36.92	61.8	38.8	
물가상승률 (%)	2.04	1.74	0.5	2.4	
실업률 (%)	6.3	6.8	8.3	8.8	
수출액 (백만\$)	165,938.06	160,565.08	170,200.01	220,700	
수입액 (백만\$)	170,592.27	158,752.65	149,100.02	191,500	
무역수지 (백만\$)	-4,654.21	1,812.43	21,099.99	29,200	-
외환 보유고 (백만\$)	55,582.47	49,549.29	47,033.89	60,680	
이자율 (%)	-0.25	-0.25	0	0.25	
환율 (자국통화, 대미환율)	8.69	9.46	9.72	8.58	

〈자료원 : IMF, OECE, EIU, Trading Economy〉

나. 경제 동향

1) 경제성장률

스웨덴은 적은 인구에 의한 협소한 내수시장 극복을 위한 돌파구로 해외시장을 선택하고 있으므로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특히, EU 국가와의 교역량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스웨덴의 대외수출 및 경제는 EU 국가들의 경제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남유럽발 재정위기로 회복 중이던 경기에 제동이 걸리기도 하고 주요 교역 상대인 유럽 국가들의 긴축정책으로 수출이 위축되는 등

EU 국 경제상황에 매우 민감한 편이다. 한동안 위축세를 보이던 스웨덴 경제는 민간가계의 소비 증가와 활발한 주택건설 및 수출 회복으로 조금씩 회복세를 보인다. 2018년에 2.4% 성장했으나 2019년에는 글로벌 불확실성 증가, 브렉시트 영향, 미-중 통상마찰 등 글로벌 통상환경 악화로 성장률 0.94%를 기록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축으로 실업률이 8.3%로 치솟고, 민간소비와 공공소비가 각각 4.7%와 0.9%씩 감소했으며, 수출과 수입도 각각 5.6%와 6.2%씩 줄어들어 2020년 GDP성장률은 마이너스 3.0%를 기록했다. 2021년에는 백신접종 확대 및 글로벌 경기회복으로 4.9% 성장했으나, 2022년에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불확실성 고조와 소비자물가 인상으로 2.3%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 금리

글로벌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감 심화로 2014.10월 제로금리(0.0%)를 도입한 스웨덴 중앙은행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2% 달성을 위해 2015년 2월 기준금리를 -0.35%로 조정하였고 2016년 2월에는 -0.5%로 추가 인하하여 2018년 말까지 최저금리 기조를 유지하였다. 당초 2016년 하반기까지만 유지하려던 저금리 기조는 브렉시트와 미국 내 보호주의 여파로 2018년 하반기까지 유지해오다 중앙은행의 의도와는 달리 가계부채만 늘고 내수부진 효과가 작은 것으로 나타나자 2019년 1월 0.25% 포인트가 증가한 마이너스 0.25%, 2020년 1월 0.0%로 조정해 2022년 4월까지 제로금리를 적용해왔다.

스웨덴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2023년 이후에나 금리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 바 있으나 2022년 2월 발발한 우크라이나 사태로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소비자물가가 치솟으면서 2022년 4월 28일 기준금리를 제로금리에서 0.25%p 인상한 0.25%로 상향 조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공격적인 금리인상으로 스웨덴화가 지속 하락하고 수입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물가가 크게 치솟자 6월에 0.75%로 조정하였고, 9월 20일에는 한꺼번에 1.0%p를 올린 울트라스텝을 밟아 1.75%로 크게 인상했다.

3) 환율

스웨덴은 주식시장의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감소 등에 따라 스웨덴 크로나화 약세 현상을 보이고 있다. 유로화 대비 10.25(2018)→10.58(2019)→10.49(2020)→10.14(2021)이며, 미 달러화 대비 8.69(2018)→9.46(2019)→9.21(2020)→8.58(2021)이다. 2022년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미국의 공격적인 금리인상으로 스웨덴화가 크게 약세를 띠고 있다. 2022년 8월 기준 스웨덴화는 유로화 대비 10.50, 미 달러화 대비 10.37로 변동되었다.

4) 물가

2018년 2.0%, 2019년 1.8% 증가한 소비자물가 인상률이 2020년에는 코로나19 직격탄에 따른 경제위기로 0.5% 성장했고, 2021년에는 2.4%를 기록했다. 2022년 소비자물가인상률은 연초 3.0%로 전망된 바 있으나 8월 기준 9%를 넘어서다.

5) 실업률

코로나19 이전까지는 생산성이 향상하고 있는 서비스 분야 중심으로 취업률이 증가하여 2018년 6.3%, 2019년 6.8%의 실업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이 악화된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시행하면서 2020년 8.3%까지 치솟았고 2021년에는 8.8%를 기록했다. 2022년에는 7.7%로 전망되고 있다.

다. 경제 전망

스웨덴 GDP 성장률은 글로벌 불확실성 증가 및 스웨덴 크로나화 하락에 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면서 2020년 -3.0%를 기록했다. 특히, 저금리정책으로 2020년 말 기준 가계부채율이 가처분소득의 199.8%까지 증가한 것을 비롯하여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규제 강화로 가계부담 증가, 스웨덴 크로나화의 약세, 브렉시트로 인한 대영국 스웨덴 수출기업의 타격이 심했고, 미국의 자국산업 보호 확대로 미국시장에 진출한 스웨덴 기업과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Volvo, Ericsson, Atlas Copco사 등 제조업체 매출이 크게 감소하고, 미-중 통상마찰 등 글로벌 통상환경이 악화되던 와중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크게 위축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백신접종 확대 및 코로나19 규제완화로 서비스업 중심으로 뚜렷한 경기 개선세를 보였으나, 글로벌 공급망 내 물류 지연에 따른 원자재 병목현상으로 제조업 생산이 둔화하고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시장불안 또한 커졌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역외 상품수요 증가, 코로나 규제완화에 따른 소비심리 상승 및 EU 경기회복기금(RRF) 자금 본격 집행 등으로 민간소비와 공공소비가 각각 4.1%와 3.4% 증가하였고, 수출과 수입도 각각 7.8%와 7.5%씩 증가해 2021년 GDP는 4.9% 성장했다.

2022년에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 전기와 가스요금, 식품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물가인상률 급등, 원자재가 인상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 스웨덴의 대외수출마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은 전년대비 4.1%p 하락한 3.5% 성장에 그치고 수입 역시 전년대비 5.9%p가 줄어든 3.4% 성장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 공공소비와 가계소비도 전년대비 각각 0.2%p, 4.1%p가 줄어든 2.4%와 2.0% 성장으로 2022년 GDP 성장률은 2.3% 내외로 예상하고 있다. 2023년에는 0.5% 성장이 전망된다.

(자료원 : 스웨덴 국립경제연구소, 스웨덴 통계청, 스웨덴 중앙은행, E.I.U. DI 등 주요 일간지)

II. 무역

1. 수출입

가. 국가별 수출입

- 수출 상위 10개국

2018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17,987,499,326
2	노르웨이	17,293,183,628
3	덴마크	11,604,683,545
4	핀란드	11,595,440,536
5	미국	10,951,797,702
6	네덜란드	9,979,403,456
7	영국	9,638,196,753
8	중화인민공화국	8,002,101,278
9	프랑스	7,225,591,164
10	벨기에	6,785,584,681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국가명	금액(\$)
1	노르웨이	17,022,068,491
2	독일	16,859,325,507
3	미국	12,502,593,409
4	핀란드	11,477,402,327
5	덴마크	11,131,148,130
6	영국	8,889,256,245
7	네덜란드	8,620,347,136
8	중화인민공화국	7,750,754,711
9	프랑스	6,649,532,194

10	벨기에	6,508,725,243
----	-----	---------------

〈자료원 : UN Comtrade〉

2020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16,612,554,732
2	노르웨이	16,432,465,400
3	미국	13,050,966,934
4	덴마크	11,858,815,743
5	핀란드	10,963,616,865
6	중화인민공화국	8,661,160,118
7	영국	8,535,336,053
8	네덜란드	8,215,448,034
9	프랑스	6,407,987,015
10	벨기에	5,597,181,579

〈자료원 : UN Comtrade〉

- 수입 상위 10개국

2018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30,673,457,191
2	네덜란드	16,085,361,148
3	노르웨이	14,663,740,362
4	덴마크	12,037,071,659
5	영국	8,591,466,036
6	핀란드	8,087,772,679
7	중화인민공화국	7,921,048,747
8	벨기에	7,251,842,633
9	폴란드	6,895,432,875
10	프랑스	6,527,359,551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28,474,603,372
2	네덜란드	15,054,269,357
3	노르웨이	13,316,606,057
4	덴마크	10,504,854,241
5	중화인민공화국	9,753,106,090
6	핀란드	7,798,375,850
7	영국	7,349,576,209
8	폴란드	6,849,622,226
9	벨기에	6,798,741,064
10	프랑스	6,429,746,818

〈자료원 : UN Comtrade〉

2020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27,900,615,791
2	네덜란드	14,816,616,130
3	노르웨이	13,526,656,095
4	덴마크	10,186,877,256
5	중화인민공화국	9,325,652,682
6	폴란드	7,121,927,888
7	핀란드	7,024,664,294
8	벨기에	6,573,316,685
9	영국	6,409,736,497
10	프랑스	5,767,347,940

〈자료원 : UN Comtrade〉

나. 품목별 수출입

- 상위 10개 수출품목

2018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7,075,077,076
2	271019	기타	6,608,181,861
3	300490	기타	5,075,153,699
4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4,699,571,376
5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	4,255,054,213
6	030214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와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3,519,801,396
7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2,818,788,222
8	481092	여러 겹의 것	2,386,059,932
9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2,082,453,798
10	260112	응결시킨 것	2,008,916,913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300490	기타	6,410,830,195
2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6,126,869,471
3	271019	기타	5,493,575,227
4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4,797,490,009
5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	3,600,443,952
6	030214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와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3,243,348,525
7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2,341,436,813
8	481092	여러 겹의 것	2,301,627,440
9	260112	응결시킨 것	2,057,285,413
10	470321	침엽수류로 만든 것	1,927,263,633

〈자료원 : UN Comtrade〉

2020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300490	기타	7,440,241,029
2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5,502,141,912
3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cc 초과 3,000cc 이하인 것	4,689,332,310
4	271019	기타	3,818,570,536
5	030214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와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3,051,436,938
6	481092	여러 겹의 것	2,481,348,965
7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2,471,542,200
8	870360	그 밖의 차량(불꽃점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서, 외부 전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으로 한정한다)	2,470,731,656
9	260112	응결시킨 것	2,464,201,604
10	440712	전나무[아비에스(Abies)종] 및 가문비나무[피세아(Picea)종]의 것	1,969,698,411

〈자료원 : UN Comtrade〉

- 상위 10개 수입품목

2018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10,803,255,430
2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8,055,951,302
3	271019	기타	6,211,353,346
4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3,643,986,275
5	030214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와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3,581,837,349
6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cc 초과 2,500cc 이하인 것	2,489,530,513
7	84713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472,529,030
8	300490	기타	2,130,531,871
9	851762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	2,121,128,111

10	870899	기타	1,932,627,439
----	--------	----	---------------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8,225,115,903
2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6,922,054,962
3	271019	기타	5,646,522,340
4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3,336,061,204
5	030214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와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3,294,382,613
6	300490	기타	2,332,387,084
7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	2,193,165,035
8	851762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	2,114,874,740
9	84713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035,563,609
10	870899	기타	1,799,862,831

〈자료원 : UN Comtrade〉

2020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7,514,516,761
2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5,655,067,182
3	271019	기타	3,783,567,294
4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3,504,214,092
5	030214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와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3,073,866,962
6	300490	기타	2,699,542,758
7	851762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	2,325,644,146
8	84713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297,213,648

9	870899	기타	1,527,854,012
10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1,382,712,847

<자료원 : UN Comtrade>

2. 한국과의 수출입

가.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

-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표

(금액 : 백만\$)

년도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2018	1,047	1,862	-815
2019	1,071	1,744	-673
2020	921	1,723	-802
2021	1,520	2,047	-527
2022	1,001	1,278	-277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다. 한국의 주요 수출입 품목

- 한국의 주요 수출입 품목 현황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21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7414	전기자동차	336	0	335
2	8121	무선전화기	136	0	135
3	6134	아연도강판	50	4	46
4	2140	합성수지	67	57	10
5	7419	기타자동차	0	67	-68
6	8352	축전지	51	1	49
7	7420	자동차부품	54	23	30
8	2262	의약품	5	155	-150
9	3203	타이어	32	0	31
10	6137	도금강판	19	8	11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22년 (8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7414	전기자동차	227	0	227
2	8121	무선전화기	145	0	145
3	6134	아연도강판	67	2	65
4	2140	합성수지	61	61	0
5	7419	기타자동차	61	192	-131
6	8352	축전지	38	1	37
7	7420	자동차부품	36	12	24
8	2262	의약품	29	84	-55
9	3203	타이어	28	0	28
10	6137	도금강판	21	5	16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21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7419	기타자동차	0	67	-68
2	7412	화물자동차	0	146	-147
3	3109	기타플라스틱제품	3	196	-193
4	2262	의약품	5	155	-150
5	7111	원동기	5	117	-113
6	2140	합성수지	67	57	10
7	6192	기타철강제품	0	66	-66
8	8155	분석시험기	1	35	-34
9	0312	제재목	0	39	-39
10	6131	중후판	0	31	-31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22년 (8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7419	기타자동차	61	192	-131
2	7412	화물자동차	0	115	-115
3	3109	기타플라스틱제품	3	91	-88
4	2262	의약품	29	84	-55
5	7111	원동기	5	64	-59
6	2140	합성수지	61	61	0
7	6192	기타철강제품	0	46	-46
8	8155	분석시험기	1	44	-43
9	0312	제재목	0	36	-36
10	6131	중후판	0	30	-30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3. 수출 유망품목

1) 수출유망품목(상품)

품목명 1	전기차 배터리		
HS Code	850780	수입액('21/US\$천)	8,840
수입관세율(%)	0	대한수입액('21/US\$천)	188
선정사유	.스웨덴 정부 '18. 7. 1.자로 Bonus-Mallus 시스템 발효. .전기차·하이브리드차량 등 기후보너스차량 구매 시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휘발유·디젤 차량은 높은 자동차세 부과		
시장동향	.스웨덴 정부의 전기차 지원정책에 힘입어 자동차 시장에서 내연기관 차량의 전기차로의 전환 가속화 .전기차 부품 중 하나인 리튬이온배터리 시장도 동반 성장세 .LG에너지솔루션, 현재 Volvo승용차에 전기차 배터리 공급 중으로 폴란드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주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높은 경쟁력으로 우리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편 .스웨덴의 전기차 배터리 수입 상위국은 아일랜드, 중국, 덴마크, 대만, 독일 순 .한국은 수입 9위국으로 2021년 한국으로 부터 직수입은 전년대비 78.8% 증가, 시장점유율은 2.13%		
경쟁동향	.현재 LG에너지솔루션과 Volvo승용차가 전기자동차 배터리 부문에서 협력 중.		
진출방안	.완성차업체 공급이 최우선		
품목명 2	전기차 배터리 생산장비		
HS Code	847982	수입액('21/US\$천)	91,256
수입관세율(%)	0	대한수입액('21/US\$천)	27,321
선정사유	.볼보승용차 및 NEVS(구 Saab)의 전기자동차 생산계획 등으로 수요 확대 .스웨덴 전기차배터리 생산업체인 Northvolt사, 셸레프테오 지역에 Northvolt Ett공장 건설 중		
시장동향	.Northvolt사, 연산규모 60GWh 공장 건설을 위해 프로젝트 (1.1~1.5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21년 말에 1.2 프로젝트를 완료 .향후 1.3, 1.4, 1.5 프로젝트도 순차적으로 진행 예정		
경쟁동향	.믹싱장비, 코터장비, 롤프레스장비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발주에 성공 .포메이션장비는 중국 선도지능사와의 경쟁에서 밀린 바 있으나 선도지능사 제품의 품질불량 속출 및 납기 미준수로 인해 차기 발주 건에서는 우리기업의 수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짐 .한국은 스웨덴의 전기차배터리 생산장비 수입1위국으로 시장 점유율 29.7% 차지, 2021년 대한민국 수입은 전년대비 9,999% 증가		
진출방안	전기차 배터리 생산업체인 스웨덴 Northvolt사와 우리 업체 간 경험 프로젝트 진행		
품목명 3	LED		
HS Code	940540	수입액('21/US\$천)	2364,294

수입관세율(%)	0	대한수입액('21/US\$천)	667
선정사유	스웨덴의 가로등 교체수요 증가		
시장동향	수입 증가		
경쟁동향	.상위 수입국은 중국(52.1%), 폴란드(9.1%), 독일(8.8%) 순이며, 한국은 수입 23위 .대한국 수입은 전년대비 20.7% 증가, 한국산제품의 시장점유율은 0.18%		
진출방안	.성공적 북유럽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중국 제품 대비 가격 및 품질경쟁력 보유가 관건 .한-EU FTA로 인한 관세 혜택을 십분 활용하고 CE인증 사전확보 필요		
품목명 4	로봇용 기어박스		
HS Code	848340	수입액('21/US\$천)	242,457
수입관세율(%)	0	대한수입액('21/US\$천)	587
선정사유	ABB(로봇사업부)는 기어박스 등 일부 주요 부품공급선을 아시아로 전환 검토		
시장동향	.세계 최대 로봇제조업체인 ABB사가 연간 로봇 생산량을 확대할 계획이어서 산업용 로봇에 들어가는 기어박스와 서보모터 수요 증가 예상		
경쟁동향	.로봇용 기어박스시장은 유럽과 일본기업이 과점하고 있는 실정 .수입 상위국은 독일(27.5%), 덴마크(16.1%), 일본(12.4%) 순 .2021년 한국은 수입 23위국에서 3단계 오른 20위국으로 진입했으며 시장점유율도 전년의 0.10%에서 0.24%로 0.14%p 상승 .2021년 대한국 수입은 전년대비 153.0% 증가하는 등 지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상당히 고무적		
진출방안	.기술 우수성 및 발전 가능성을 어필하고 R&D 등을 통한 동반성장 방안 등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		
품목명 5	식품		
HS Code	210690	수입액('21/US\$천)	494,020
수입관세율(%)	0	대한수입액('21/US\$천)	18
선정사유	한류확산으로 K-food 인지도 상승, 김치 등 한국식품의 건강식 이미지 제고		
시장동향	수입증가		
경쟁동향	.한국은 스웨덴 식품수입(소스류 포함) 61위국으로 전년대비 18단계 하락했고 시장점유율은 0.1% 미만, 전년동기대비 9.6% 하락 .다만, 해당 통계치는 한국으로부터 직수입 현황으로, 독일 공장과 네덜란드 물류창고를 통해 들어오는 제3국 수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한국식품의 총 수입액과상당한 차이 발생 .관련 바이어들에 따르면, 제3국 수입을 포함할 경우 한국식품 수입은 지속 증가세인 것으로 알려짐		
진출방안	.현지인들에게 잘 알려진 김치, 라면, 만두와 초고추장, 불고기양념 등 소스류를 중심으로 홍보활동 강화 .알레르기 테스트 등 식품시장에서 요구하는 조건 사전구비 .최근 EU집행위가 식품의 에틸렌옥사이드 검역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라면 수출시, 에틸렌옥사이드 최대 허용치 준수여부를 증명하는 시험성적서와 검사 공식증명서 사전 구비 필요		
품목명 6	화장품		
HS Code	3304	수입액('21/US\$천)	522,982

수입관세율(%)	0	대한수입액('21/US\$천)	18,142
선정사유	.한류열풍으로 한국화장품에 대한 인지도 상승 .코로나19 불구, 2021년 대한민국 수입 전년대비 45.1% 증가 .한국은 스웨덴의 화장품 수입11위국으로 시장점유율 3.47% 차지		
시장동향	현지 백화점, 마스크팩 등 기초화장품과 메이크업 제품취급 시작,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음. 스킨케어와 색조화장품 등 대다수 화장품이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제품 위주로 구매 형성		
경쟁동향	글로벌 브랜드의 점유율이 높은 시장		
진출방안	EU 화장품규제(No. 1223/2009) 준수 및 CPNP등록 필수가격경쟁력 못지않게 친환경 제 품이라는 에코 인증 필요		

2) 수출유망품목(서비스)

품목명 1	건설 서비스
선정사유	건설 분야 전문인력 부족 심각
시장동향	스톡홀름, 요테보리, 말뫼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택난이 심각하여 주택건설과 인프라 구조 확대 필요, 전문인력 부족으로 스웨덴 건설업계 애로
경쟁동향	건설 현장 인력은 라트비아 등 발틱국에서 충당하고 있지만 , 전문 인력은 많이 부족한 상태
진출방안	전기배선, 배관 등 전문 자격증 필요부문 유력
품목명 2	콘텐츠
선정사유	스웨덴의 방송, 게임, 교육분야 콘텐츠 부족
시장동향	콘텐츠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콘텐츠의 대부분 이 미국과 유럽 위주로 제한적
경쟁동향	시장점유율 상위국은 미국과 영국 등 유럽
진출방안	관련 전시회 참석을 통해 우리 콘텐츠의 우수성을 알리고, 바이어들과 적극적인 네트워크 구축 필요. 교육, 게임, 방송 분야 콘텐츠 사업 진출 유망
품목명 3	물류 서비스
선정사유	물류 수요 증가
시장동향	2021년 기준, 스웨덴 진출 우리나라 물류기업은 대한항공 카고(항공), 현대상선(해운), LX판토스(구 범한판토스), 유코카캐리어스 유럽오피스 등 4개사. 현재 스웨덴 물류시장은 확대 추세로 범한판토스와 유코카 캐리어스사 '17년, '18년에 각각 진출
경쟁동향	글로벌 물류업체가 대부분
진출방안	스웨덴 남부와 중부 지방을 잇는 물류단지 진출유력

4. 무역협정

가. 무역협정 체결현황

협정명	체결국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비고
FTA(Free Trade Agreement)	대한민국	2010-10-06	2015-12-13	2011. 7. 1. 잠정 발효 및 2015.12.13. 전체 발효
A(Agreement)	스위스	1972-07-22	1973-01-01	
CA(Co-operation Agreement)	시리아	1977-01-01		잠정중단
CU(Customs Union)	안도라	1990-06-28	1991-01-01	산 마리노, 모나코, 안도라 3개국과 Association Agreement 진행중 (2014.12. 협상개시, 직적협상 2021.12)
CU(Customs Union)	산 마리노	1991-12-16	2002-04-01	산 마리노, 모나코, 안도라 3개국과 Association Agreement 진행중 (2014.12.협상개시, 직전협상 2022.7)kdrotl, wlrwjrguqtkd 2021.12)
EAA(Economic Area Agreement)	노르웨이	1992-05-02	1994-01-01	
EAA(Economic Area Agreement)	리히텐슈타인	1992-05-02	1994-01-01	
EAA(Economic Area Agreement)	아이슬란드	1992-05-02	1994-01-01	
CU(Customs Union)	터키	1995-01-01	1995-12-31	
Co-operation agreement	스리랑카	1995-04-19	1995-04-01	
AA(Association Agreement)	튀니지	1995-11-17	1998-03-01	포괄적 FTA(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rea, DCFTA) 협상 추진중(2015.10. 협상개시, 직전협상 2019. 5.)
AA(Association Agreement)	이스라엘	1995-11-20	2000-06-01	

AA(Association Agreement)	모로코	1996-02-26	2000-03-01	포괄적 FTA(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rea, DCFTA) 협상 추진중(2013.3.1 협상개시, 2019.6재추진) 협정 현대화 추진 중(2021.9. 추진)
PCA(Updated Partnership Agreement)	아르메니아	1996-04-22	2018-06-01	잠정 발효
A(Agreement)	페로제도	1996-12-06	1997-01-01	
IAA(Interim Association Agreement)	팔레스타인	1997-02-24	1997-07-01	
PCA(Partnership and Cooperation)	러시아		1997-12-01	2008. PCA 대체하는 RCA협상 개시, 2010. RCA 협상 중단
AA(Association Agreement)	요르단	1997-11-24	2002-05-01	
GA(Global Agreement)	멕시코	1997-12-08	2000-10-01	무역협정 현대화 추진중(2016. 5. 협정 현대화 협상개시, 2018. 4. 협상 원칙적 합의, 2020. 4.28. 협상 타결, 법률검토 작업 후 비준 추진 예정).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마케도니아	2001-04-09	2004-04-01	
AA(Association Agreement)	이집트	2001-06-25	2004-06-01	
AA(Association Agreement)	알제리	2002-04-22	2005-09-01	
AA(Association Agreement)	레바논	2002-06-17	2006-04-01	
AAAP	칠레	2002-11-18	2005-03-01	협정 현대화 추진중(2017.11.협정 현대화 협상개시, 직전협상 2021. 5) 2021.10. EU의회, 이사회 거쳐 최종 승인 계획
Co-operation agreement	파키스탄	2004-04-09	2004-04-09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알바니아	2006-06-12	2009-04-01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모네네그로	2007-10-15	2015-05-01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세르비아	2008-04-29	2013-09-01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2008-06-16	2015-06-01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카리포룸	2008-10-15	2008-12-29	잠정발효(앤티가바부다,바하마,바베이도스,벨리즈,그라나다,가이아나,자메이카)
IEPA(Interim Partnership Agreement)	카메룬	2009-01-15	2014-01-01	잠정발효
IEPA(Interim Partnership Agreement)	피지	2009-07-13	2014-07-28	
IEPA(Interim Partnership Agreement)	파푸아뉴기니	2009-07-30	2011-05-01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동남아프리카	2009-08-29	2012-05-14	잠정발효(마다가스카, 모리셔스,세이셸, 짐바브웨)
PCA(Partnership and Cooperation)	이라크	2012-05-01	2012-08-01	잠정발효
AA(Association Agreement)	중앙아메리카	2012-06-29		잠정발효온두라스,니카과라,파나마(2013. 8. 1.)
TA(Trade Agreement)	안데스공동체	2012-07-26		잠정발효콜롬비아(2013. 8. 1.), 페루(2013. 3. 1.)
DCFTAAA	우크라이나	2014-05-29	2016-01-01	
AA(Association Agreement)	조지아	2014-06-27	2016-07-01	
AA(Association Agreement)	몰도바	2014-06-27	2016-07-01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코소보	2015-10-22	2016-04-01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카자흐스탄	2015-10-26	2016-05-01	잠정발효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	2016-06-10	2016-10-10	잠정발효(남아공,보츠와나,레소토,나미비아,에스와티니,모잠비크(2018. 2. 4.)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가나	2016-07-28	2016-12-15	잠정발효
EPA(Stepping ston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코트디부아르	2016-07-28	2016-09-03	잠정발효
CETA	캐나다	2016-10-30	2017-09-21	잠정발효
PDCA	쿠바	2016-12-12	2017-11-01	잠정발효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일본	2018-07-17	2019-02-01	
FTA(Free Trade Agreement)	싱가포르	2018-10-19	2019-11-21	FTA내 투자분야는 별도로 하고 추진 (현재 투자보호협정 회원국별 비준 진행중)
FTA(Free Trade Agreement)	베트남	2018-10-19	2020-08-01	2020. 2. EU비준 및 2020. 6. 8. 베트남 비준 완료.2020. 8. 1.부로 FTA 발효(현재 투자보호협정 IPA는 회원국별 비준 진행중)
FTA(Free Trade Agreement)	메르코수르	2019-06-28		메르코수르 각 회원국별 의회 승인 후 잠정 발효예정이며, 이후 EU 국별 비준후 정식 발효
TCA(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	영국	2020-12-24	2021-05-01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솔로몬제도(Pacific)	2011-05-01	2020-05-17	

〈자료원 : EU 집행위〉

나. 논의 중 협정

협정명	협정대상국가	협정진행내용	비고
TTIP(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미국	협상 중, 직전 협상 2022.5.	EU-미국 무역 및 기술위원회 TTC 발족(2021.6.15)
FTA(Free Trade Agreement)	ASEAN	2009. 3. 다자간 협상 잠정 중단 합의 2009.12. EU- ASEAN 개별회원국 간 양자협정 추진계획 발표. 양자협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지역협정 가능성 타진 중	

FTA(Free Trade Agreement)	말레이시아	협상 잠정보류, 직전 협상 : 2012. 4.	
FTA(Free Trade Agreement)	태국	협상 중. 직전 협상 : 2014. 5.	
FTA(Free Trade Agreement)	인도네시아	협상 중, 직전 협상 : 2021. 11.	
FTA(Free Trade Agreement)	필리핀	협상 중, 직전 협상 : 2017. 2.	
IPA(Investment protection agreement)	미얀마	협상 중, 직전 협상 : 2016. 12.	
FTA(Free Trade Agreement)	인도	협상 중, 직전 협상 2022.6.	2021.5.8. 협상 재개 합의
FTA(Free Trade Agreement)	호주	협상 중, 직전 협상: 2022.2.	
FTA(Free Trade Agreement)	뉴질랜드	협상 완료, 직전 협상 2022.6.	EU-뉴질랜드 FTA 협상완료, 향후 이사회 채택이후 발효 예정
EU-China investment agreement	중국	2020.12.30. 타결 후 비준 추진중이었으나, 중국의 인권문제로 비준 추진 잠정 중단(2021.5.~)	
Update of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아제르바이잔	협상 중, 직전협상 2019. 4.	
EPCA(Enhanced Partnership Cooperation Agreement)	키르기즈스탄	협상완료, 직전협상 2019.6.	EU-키르기즈스탄 EPCA 협상완료, 향후 이사회 채택 이후 발효예정 (2022년 내)
EPCA(Enhanced Partnership Cooperation Agreement)A(Agreement)	우즈베키스탄	협상완료, 직전협상 2022.6.	

〈자료원 : EU 집행위〉

5. 수입규제 및 관세

가. 대한 수입규제 현황

-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수입쿼터

없음.

수입금지품목

○ 수입금지품목

EU 수입금지 품목으로는 동물 실험 화장품, 물개 제품, 불법 벌채 목제품 등이 있다. 이 외에도 EU는 현재 홍합과 조갯살 등을 포함한 식품류에 대해서는 수입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사전에 수입허가를 받은 업체만이 수입이 가능하고 수입업체는 통관 시 위생증명서를 비롯한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4대 분쟁광물(2021년 1월 1일부)

콩고 공화국, 르완다, 우간다 등 아프리카 분쟁지역에서 채굴되는 금, 주석, 텅스텐, 탄탈륨 등 4대 광물 수입이 2021년 1월 1일부로 금지되고 있다. EU 집행위는 반군·정부군 등 무장단체들이 채굴자금 유통을 장악해 군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광물채굴 과정에서 인권유린 및 노동착취 등이 발생해 수입금지 통해 유혈분쟁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2017년 관련 규정(No. 2017/821)을 제정하고 2021년부터 4대 광물제품을 수입하는 수입자에 대해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를 의무화하여 해당 제품에 분쟁지역 광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했다.

○ 일회용 플라스틱 품목(2021년 7월 3일부)

EU의 탈플라스틱 정책에 따라 면봉, 식기류(cutlery), 식품용기, 음료용 컵, 빨대, 풍선막대 등 일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이 2021년 7월 3일부로 국내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된다. 전 세계 플라스틱 연 생산량이 1950년 2백만 톤에서 2015년 3.8억 톤 등 190배 증가했으며, 전체 플라스틱의 60% 이상이 자연으로 흡수되는 상황에서 EU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보다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소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집행위는 EU 지침 2019/904를 통해 일부 플라스틱 제품의 유통 및 판매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동 지침은 2019년 7월 2일 적용되었으나 2년간의 회원국별 법령 수용 절차를 거쳐 2021년 7월 3일부로 시행되고 있다.

나. 비관세장벽

인증제도

비관세 장벽(Non-tariff barriers)은 정부가 자국제품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외국제품의 수입을 억제하려는 정책을 지칭하며,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는 인증제도와 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을 들 수 있다. 인증의 경우, 산업 분야별로는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 요구하는 인증이 가장 많으며 기계와 자동차에 대한 인증도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일례로 굴착기, 휠로더, 스kid로더와 같은 건설 중장비의 경우, 기본적인 CE 인증 외에도 EU 각 회원국이 각기 다른 국내 도로 인증(Road Homologation)을 요구하고 있어 우리 기업 수출에 애로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영국 등 일부 국가의 경우, 중고장비의 수입제한을 목적으로 CE 마크와 적합성 인증서 외에 별도의 Newness Certificate를 요구하는 때도 있어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기계는 한국 인증기관이 아닌 유럽의 주

요 인증 기관의 인증을 받은 CE 마크를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며, 현지 A/S 센터 설립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은 편이다.

EU에서 요구하는 대표적인 인증으로는 CE 마크, RoHS, REACH, CPNP, e-Mark가 있으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1) CE 마크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ies; EC)의 프랑스어표기인 'conformite europeenne'의 머리글자를 딴 마크로 EU 시장 내 안전에 관련된 통합 인증마크이다. CE 마크는 인증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증하지 않고 원산지를 명시하지 않으며, 다만 생산 과정이 EU의 요구 기준에 맞춰서 생산되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 마크는 1993년 7월 22일 도입된 인증으로 EU 지침 93/68/EEC을 통해 시행된 이후, 수차례 개정되었다. CE 마크는 유럽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필수 인증으로 완구류, 저전압 기기, 의료기기, 선박 용품, 승강기, 기계류, 통신단말기, 건축자재, 개인보호장비 등 매우 광범위한 공산품에 적용되고 있으며, 해당되는 세부 품목 리스트는 아래의 EU 집행위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 CE 적용 품목 리스트 링크 : https://ec.europa.eu/growth/single-market/ce-marking/manufacturers_en

o CE 마크 부착

- CE 마크는 제조업자 혹은 대리인이 부착해야 한다. - CE 마크는 확대 및 축소 시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 CE 마크는 읽기가 쉬워야 하고 견고하게,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되어야 한다. 제품 특성상 불가능할 때는 제품의 포장 및 사용설명서에 부착할 수 있다.
- 만약, 필요 때문에 통지 기관이 검사를 시행할 경우, 통지 기관 인식 번호 역시 CE 마크에 추가로 표시되어야 한다. 이 인식 번호 표시에 관한 책임은 제조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있다.

o CE 마크 대리인 규정

2021년 7월 16일 유럽연합은 시장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규정[Regulation (EU) 2019/1020]을 채택했으며 앞으로 CE 마크가 있는 모든 상품은 상품의 규정 준수를 위한 책임자로서 유럽연합 내 거주하는 유럽연합 대리인을 필요로 한다. 유럽연합 내 상품의 규정 준수를 위한 대리인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유럽연합 내 제조업체 또는 브랜드, 유럽연합 내 수입업체, 유럽연합 내 대리인, 유럽연합 내 배송 서비스 제공 업체 등이며, 대리인의 역할은 아래와 같다. - 상품의 유럽연합 적합성 선언 수집 후 유럽연합 관련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유럽연합 표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별도의 문서* 제공

* 유럽연합 적합성 선언(DoC), 기술문서(테스트보고서, 안전 인증서 등)

- 상품이 유발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해 관련 기관에 보고
-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상품의 규정 미 준수 문제 해결

2) RoHS -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 지침

RoHS는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equipment의 약자로, 전기·전자제품 내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지침으로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RoHS 지침 2011/65/EU 지침에 따라, 아래의 물질에 대해 규제치 이상을 포함한 전기·전자제품은 판매가 금지된다.

- 납 : 0.1%
- 수은 : 0.1%
- 육가크롬 : 0.1%
- 폴리브롬화바이페닐 : 0.1%
-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 : 0.1%
- 카드뮴 : 0.01%
- 프탈레이트 4종(DEHP, BBP, DBP, DIBP) : 0.1% (2019년 7월 22일부터 적용 중)

3) REACH - 화학물질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 규정

화학물질 관리 제도인 REACH는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 substances의 약자로 EU 내

연간 1톤 이상(3년 동안의 평균값) 제조 혹은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①화학물질과 ②혼합물(Preparation)에 있는 화학물질 그리고 ③완제품(Article)에서 의도적 (Intended) 또는 비의도적으로 배출 (Unintended release)되는 화학 물질을 관리 대상으로 한다.

○ 등록 대상

- 연간 1톤 이상 EU에서 생산하거나 수입되는 화학물질(substance)
- 2개 이상 화학물질로 구성된 혼합물의 경우, 각각의 화학물질이 연간 1톤 이상인 경우
- 의도적으로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제품의 경우(화학물질이 배출됨으로써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 연간 1톤 이상인 각각의 화학물질
- 고분자의 경우 단량체가 고분자 내 2% 이상 포함되어 있고 총량이 연간 1톤 이상인 경우, 또는 고분자를 함유한 조제 제품 내 각 성분 총량이 연간 1톤 이상인 경우

- 연 1톤 미만 제조/수입자, 대리인, 하위 사용자, 물질 정보를 보유한 제3자도 물질정보교환포럼(SIEF : substance information exchange forum) 참여를 위해 사전등록* 가능

* 사전등록: 사전 등록은 등록 절차의 하나로, 사전등록을 해야만 함량과 물질 특성에 따라 3년 6개월~11년까지 본 등록이 유예된다.

2008년 6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사전등록이 마감되었으나, 2008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연간 1톤 이상 수출하는 경우, 최초 수출 후 6개월 이내에 사전등록 서류를 제출하면 사전등록을 마친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톤수 별 유예기간을 적용 받을 수 있다.

○ 신고대상

- 완제품에서 고 위험성 물질이 비의도적으로 배출되는 경우, 그 함량이 완제품 대비 0.1% 이상 및 연간 1톤 이상이면 신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 완제품에서 고 위험성 물질(SVHC; 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이 비의도적인 배출(Unintended release)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함량이 완제품 대비 0.1% 이상이고 그 물질이 연간 1톤 이상이면 신고해야 한다.
- 제품 및 공정 중심 연구개발을 위한 물질도 화학물질 청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날로부터 5년간 등록 의무가 면제된다.

○ 물질 등록 절차

- 신청 및 제출: 화학물질 D/B 시스템 IUCLID(The International Uniform Chemical Information Database)내 물질 등록 및 관련 서류 제출
 - 등록사항 : 물질 정보(화학물질 번호, 물질명 등), 기업명 및 담당자, 수입량, 물리학적 특성, 독성 정보 등과 함께 기술 서류(Technical Dossier), 화학물질 안전 보고서(Chemical Safety Report)도 제출
 - IUCLID 해당 홈페이지 : <http://iuclid.eu>
- 평가 : 서류 검증 및 질적 검사
 - 물질 등록 서류 제출 후, 서류 검증 시스템을 통해 자동 검증이 시행되나 이는 모든 요구사항이 등재되었는지의 파악을 위한 단순 체크에 불과하다. 유럽물질화학청(ECHA : The European Chemicals Agency)은 등록된 물질 정보를 토대로 회원국들과 협의해 물질 별 위해성 평가를 수행하고, 질적 검사를 통해 등록신청 물질의 승인 또는 거부를 결정한다
 - 질적 평가에서 거부당하는 경우 1회에 걸쳐 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나, 2번 이상 거부되는 경우에는 사전등록 절차부터 다시 시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 ECHA 지원센터 연락처 : +358-9-686180(헬싱키)
- 등록비용 지불 및 승인번호 부여 : 승인 결정 후 등록비를 지불하면 해당 물질의 등록 고유번호를 부여 받게 된다. 물질 등록 일은 해당 고유 등록번호를 부여 받는 날짜로 지정된다.
- 등록 물질 공표 : ECHA는 등록 완료된 물질을 유럽화학물질청 공식 웹사이트(www.echa.europa.eu)에 공표한다.

4) CPNP(화장품 인증)

화장품을 EU 시장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책임자 지정 및 유럽 화장품 인증이라 불리는 CPNP(The 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등록절차를 거쳐야 하며, EU 수출에 흔히 사용되는 CE 인증의 경우 화장품 제품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CE 인증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CPNP 제도는 2013년 7월 11일부로 시행중이며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 규정(EU Cosmetic Regulation) No.1223/2009 내에서 규제되고 있다. CPNP 등록은 크게 아래와 같이 나뉜다.

- RP 지정 및 라벨링 : 수출기업은 해당 화장품을 법적으로 책임질 RP(Responsable Person)를 지정하고 필요서류를 RP에 제출하는 한편, EU 기준에 맞는 라벨 작성

- 성분 및 라벨 검토 : RP는 수출기업에서 전달받은 서류를 토대로 제품 성분과 라벨을 검토하고 이를 승인
- 제품정보파일 작성 및 등록 : RP는 CPNP 등록에 필요한 제품 정보 파일(PIF : Product Information File)을 작성하고 CPNP 등록을 완료함. 등록번호가 부여되면 해당 제품은 EU 시장에 판매할 수 있게 됨

실질적인 CPNP 등록 과정을 살펴보면, 수출기업이 사전 지정한 RP(또는 인증 대행사)로 제품 원료별 %가 명시된 전체 성분 표를 제출하면 RP가 제품별 테스트를 거친 후 가격 견적을 제시한다. 이를 토대로 양측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RP는 CPNP 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기업에 안내해준다. 이후, 수출기업이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RP는 취합한 자료를 토대로 제품 성분을 검토(Formula Review)하고 제품 안전성 보고서(CPSR; Cosmetic Product Safety Report)를 작성한다. 또한, EU 기준에 맞는 라벨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출기업과 수정 및 보완작업을 거친 후 승인한다. 이후 RP는 제품정보파일(PIF)을 작성하고 CPNP 등록시스템 내 등록을 마친다.

RP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제품별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제품정보, 제품 시험성적서, 성분 안전성 데이터, 제조번호, 성분표, 원산국명, 제품 출시되는 EU 회원국 명, 동물실험 테스트, 방부력 테스트, 안정성 및 적합성 테스트, IFRA 증명서 등이 있다. 제출되는 서류의 언어는 영어 또는 진출하려는 EU 국가의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지만, 대다수의 한국 화장품 기업들은 EU 1개국만 바라보고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여러 국가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 EU 회원국 내에서 통용되는 영어로 작성하는 것이 용이하다. 다만, 제품에 부착되는 라벨의 경우에는 반드시 화장품이 유통되는 국가의 언어로 개별 표기돼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라벨을 작성할 때 다수의 한국기업들은 마케팅 차원에서 제품 효능에 대한 사항을 조금이라도 추가하고 싶어 여러 효과(진정성, 지속성, 주름개선 등)를 제품에 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라벨에 적힌 모든 문구들은 실질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CPNP 등록이 가능하므로, 증빙하기 힘든 문구들은 과감히 삭제하고 처음부터 확실한 효과만을 강조하는 것이 좋다. CPNP 등록을 완료하기까지 1~2개월 정도가 소요되지만 만일 서류가 부족한 경우, 이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1년까지도 걸리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

5) e-Mark

e-Mark는 자동차 산업분야에 관련된 EU 적합성 준수 마크로 유럽시장에 자동차 및 자동차 관련 부품을 판매하기 전에 EU 회원국으로부터 반드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강제 검사 제도이다. e-Mark는 제조자가 스스로 적합성을 선언할 수 있는(Declaration of Conformity) CE 마킹과 달리, EU 각국의 인증기관이나 그 인증기관이 인정한 시험기관에서 형식승인 시험 후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시험 소요기간은 완성차의 경우 일반적으로 1~2개월 소요되며, 부품류의 경우 대부분 2개월 이내에 가능하다. ISO 9000을 획득한 제조 기업은 생산 절차의 적합성이 인정돼 기관의 면밀한 검사 없이 형식승인 획득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의 경우, 안전한 제품 제조 여부 확인을 위한 공장시설 및 생산절차 등 현장 검사가 시행될 수 있다. 또한, 형식 승인이 완료되면 인증 마크와 번호를 부여 받게 되는데, 마크에는 EU 개별국의 고유 번호가 매겨진다. 1개 회원국에서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은 다른 회원국의 별도 승인 없이도 역내 자유로운 유통 및 판매가 가능하다.

- EU 회원국 고유번호 예시 : 1=독일, 2=프랑스, 3=이탈리아, 4=네덜란드, 5=스웨덴, 6=벨기에, 9=스페인, 11=영국, 12=오스트리아, 13=룩셈부르크, 17=핀란드, 18=덴마크, 21=포르투갈, 23=그리스 등

6) 보조금

인증제도 이외에도 EU는 반덤핑 및 반 보조금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지속 강화해나가고 있다. 2020년 6월 7일, EU 집행위는 정부보조금을 받은 역외국 기업의 역내시장 경쟁 왜곡을 차단하는 규제 백서(White Paper on Foreign Subsidies in the Single Market)를 발표했다. 역외국 기업들이 보조금 수혜를 통한 풍부한 자금력을 이용해 EU 시장에서 역내 기업들과 상품 및 서비스 판매, 기업인수, 공공조달 분야에서 불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고 밝히며, 현행 제도로는 이들 기업의 규제가 힘들어 보다 강화된 규제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집행위는 이번 백서에서 아래와 같은 3가지 규제수단을 도입하며 해당 이해관계자 의견을 2020년 9월 23일까지 수렴했다. 집행위 차원의 내부적 평가와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2021년 중 관련 법안을 마련할 예정인 가운데 2021년 5월 집행위는 기업인수와 공공조달 입찰 시 EU 역외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 현황이 발견될 시 집행위에 이에 대한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도 추가 발의하였다.

- 일반(사후규제) : 특정 기업인수 건에 대해 인수자금 및 보조금 내역 사전 신고제.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시정방안제출 조건부 승인 혹은 기업 인수 금지 조치

- 기업인수(사전규제) : EU 내 영업 중인 기업이 과거 3년간 20만 유로 이상의 보조금 지원을 받았을 경우, 저가판매 등 경쟁 왜곡 여부를 심사하여 자산매각·투자금지 등 금전적 제재 부과. 피인수기업의 EU 지역 매출액이 5억 유로 이상이거나 EU 역외 지역 인수기업의 투자자금이 5천만 유로 이상인 기업인수건에 대해 EU 역외 정부가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한 정황이 있을 시 EU집행위가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음

- 공공조달 및 EU 펀딩(사전규제) : 특정 공공조달이나 기금마련(펀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입찰 기업에 보조금 수령 관련 정보 제출 요구. 부당한 혜택이 확인될 경우 최대 3년 입찰이 불가하며 펀딩 프로젝트 참여 역시 배제. EU 역외 정부가 EU 지역 내 2억5천만 유로 이상의 공공조달 입찰 건에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한 정황이 있을 시 EU집행위가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음

7)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2021년 7월 14일, EU 집행위는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초안을 발표했으며, 2022년 3월 이사회는 일반적 접근을 채택하고 2022년 6월 의회에서 수정안을 채택한다. 이사회와 집행위의 입장은 유사하나, 의회는 과도기 / 무상 할당 폐지 시기 / 배출 범위 관련 집행위와 입장 차가 있으며, 2022년 10월 삼자 협의의 진행이 예상된다. 향후 삼자 협의를 통해 규정(안) 내용을 확정 후 2023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CBAM은 역내로 제품 수입 시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 인증서(배출권)를 구매, 관할 당국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관할 당국에 승인 받은 수입업자가 제품별 탄소 함유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Certificate)를 구매 후 해당 수입에 대해 매년 5월 31일까지 관할 당국에 신고·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법안의 적용대상 제품은 배출량이 큰 시멘트, 전기, 비료, 철강, 알루미늄이며 유럽의회는 유기화합물, 플라스틱, 수소, 암모니아를 추가로 제안했다. 적용대상 제품 HS 코드 별 세부 품목은 아래의 표와 같다.

EU의 CBAM 적용 대상품목 (자료: EU 집행위)

분야	HS코드	HS 세부코드
시멘트(4개)	25	252310, 252321, 252329, 252390
전력(1개)	27	271600
비료(5개)	28, 31	280800, 2814, 283421, 3102, 3105(HS 310560은 제외)
철강(38개)	72	7201, 7203, 7205, 7206, 7207, 7208, 7209, 7210, 7211, 7212, 7213, 7214, 7215, 7216, 7217, 7218, 7219, 7220, 7221, 7222, 7223, 7224, 7225, 7226, 7227, 7228, 7229 73 7301, 7302, 730300, 7304, 7305, 7306, 7307, 7308, 7309, 7310, 7311
알루미늄(8개)	76	7601, 7603, 7604, 7605, 7606, 7607, 7608, 760900

한편, EU의 이 같은 탄소국경조정세 도입 추진에 대해 자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 하락을 우려한 여러 국가들이 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러시아는 EU 탄소국경조정세가 WTO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며 만약 도입하는 경우 유럽의 주요 무역 파트너 국가들은 EU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이라 경고하고 나섰다. 중국 역시 유럽 탄소국경조정세에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관련 업계는 EU가 테스트 차원에서 시멘트 등 산업 파급력이 다소 적은 분야를 선두로 적용한 후 석유화학, 철강 등 탄소 누출이 큰 다른 산업으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탄소국경세가 실제적으로 시행되는 경우,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역외국 수출 기업은 물론 중국, 인도 등 탄소배출 기준이 적은 국가에서 원자재 또는 중간재를 들여와 역내에서 가공·판매했던 EU 기업들 역시 영향을 받게 돼, 역내 공급망(GVC)이 재편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EU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8) EU 공급망실사 지침 (Supply Chain Due Diligence Directive)

2020년 4월 법안 수립 계획을 밝힌 뒤, 2022년 2월 집행위 초안을 발표했다. 동 지침의 주요 내용은 EU 역내외 대기업 및 중견기업 중심, 인권환경 관련 공급망 내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여 예방완화피해 구제 조치 시행의 의무화다. 이번 지침의 대상으로는 고용인원 및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역내외 대기업, 고위험 산업군(섬유, 광물, 농업, 임업, 수산업) 중견기업으로 협력사와 실사순수계약 체결 등을 통해 전 공급망에 걸친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고 예방 및 완화하고 매년 4월 30일까지 전년도 실사의무 이행에 대한 보고서 또는 성명

서를 기업 웹사이트에 공시해야 한다. EU 회원국은 감독기구를 지정하여 실사의무 이행을 감독하고, 집행위는 유럽 감독기구 연합회(European Network of Supervisory Authorities)를 설립하여 감독기구 간의 협력 및 조사, 제재 등에 대한 협의를 강화할 예정이다. 회원국 별 국내법 입법 과정에서, 위반시 제재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수준이 상이할 전망으로 입법 동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TBT

기술 장벽은 현재 EU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비관세 장벽으로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 등 국가 간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요인을 형성하는 것을 지칭한다. 자국민의 안전과 보건, 환경 등에 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유럽 내 기술장벽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관련 규제를 지속 심화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EU의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예는 아래와 같다.

1) 장난감 내 화학성분 기준 강화

EU는 어린아이의 신체와 직접 닿는 장난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20년간 거의 개정 없이 유지되던 EU 장난감 안전 규제는 2009년 신안전지침(2009/48/EC)이 공표된 후로 지속 심화하고 있다. 특히 장난감 내 함유되는 화학성분에 관한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데(2020년 11월까지 총 14건이 개정), 가장 최근 변경된 화학물질은 2019년 11월 알루미늄(Aluminium) 및 페놀(Phenol)에 관한 내용이다.

◦ 장난감 안전지침 역대 개정 내용

- 2012년 3월, Cadmium 허용치(migration limits) 조정
- 2013년 7월, Barium 허용치 조정
- 2014년 6월,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내 TCEP, TCPP, TDCP, BPA 함량 제한
- 2014년 6월, Nickel 허용 품목 조정
- 2015년 11월,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내 Formamide, BIT 및 CMI, MI 함량 제한
- 2017년 3월 Lead 허용치 조정 - 2017년 5월,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내 Monomer, Phenol 및 BPA 함량 제한
- 2018년 5월, Chromium VI 함량 제한
- 2019년 11월, Aluminium 허용치 조정
- 2019년 11월,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내 Monomer, Phenol 함량 제한 등

2) 플라스틱 식품 용기 내 비스페놀 A 사용제한

강화 2018년 2월 14일, EU 집행위는 2018년 9월 6일부터 플라스틱 식품 용기 내 비스페놀 A 함유량을 제한한다는 집행위 규정 No.2018/213을 채택했다. 비스페놀 A(이하 BPA)는 플라스틱 물질 제조에 사용되는 합성화학물질로 캔 음료, 생수통, 밀폐용기, 영수증 용지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물질이다. 최근 유럽 내 BPA 위해성이 집중 조명되고 있으며, 유럽식품안전청 EFSA(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은 2006년부터 식품 용기에 들어가는 비스페놀A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위해성에 대해 지속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도 물질 사용을 지속 강화하고 있는데, 집행위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2011년부터 영·유아용 젖병 내 BPA 사용을 금지했으며, 플라스틱 식품 용기에는 일정 제한치(0.6mg/kg) 내에서만 허용하고 있다.

유럽물질화학청 ECHA(European Chemicals Agency)는 2017년 6월, BPA 물질이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며 REACH 고 위험성 물질 목록(SVHC; 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에 올렸다. 집행위는 내부적 분석을 통해 플라스틱 식품 용기 내 BPA 물질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 기존 최대 허용기준을 0.6mg/kg에서 0.05mg/kg로 낮추기로 했다. 이 밖에도 통조림 제품의 경우, 제품 내벽의 부식방지를 위해 니스 및 코팅제가 사용되는데 여기에 BPA가 들어가므로, BPA 제한 용량(0.05mg/kg)을 니스 및 코팅제로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니스 및 코팅제가 들어간 플라스틱 식품 용기에 대해서는 적합성 선언문(declaration of conformity) 작성을 의무화한다고 전했다. 선언문에는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명시되어야 하며, 회원국 당국의 요청 시 기업은 10일 내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 제조 및 적합성 선언 기업정보(기업명 및 주소)

- 적합성 선언 작성 시기
- 제조 시, EU 규정 No.1935/2004 내 3, 15, 17 조항의 준수 여부
- 니스 및 코팅제가 사용되는 제품 정보(식품군 종류, 식품처리에 사용되는 온도, 기간 등) 및 제조품 정보

이 밖에도, 집행위는 3세 이하 영·유아의 경우 소량의 BPA 노출로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폴리카보네이트(PC) 재질의 병과 컵에 BPA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2018년 9월 6일부터 플라스틱 식품 용기 내 BPA 0.05mg/kg를 초과하는 제품과 BPA가 함유된 영·유아용 물병과 컵의 역내 판매가 금지되고 있다. 한편, 유럽의회는 관련 제조기업들이 향후 BPA 대체 물질로 비스페놀 S(BPS)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BPS 물질에 대한 위해성 역시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CHA 산하 위험평가위원회(RAC; Risk Assessment Committee) 역시 BPS는 BPA와 유사한 위해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제조기업의 BPS 사용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동의했다. 이 같은 추세로 향후 EU 내 BPA 물질 금지분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사료되며 BPS 물질 제한 가능성 역시 높은 것으로 판단돼 우리 기업의 예의주시가 요구된다.

3) 화장품 원료 규제 강화

2020년 2월 27일부로 자외선차단제, 염색, 샴푸 등에 사용되는 화장품 원료의 역내 판매가 금지되고 있다. EU는 피부와 직접 닿는 화장품 물질에 대해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관련 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데, 2018년에는 페니페놀 물질의 최대 허용 농도 제한(11월) 및 일부 메리골드 물질 사용을 금지(7월)한 바 있다. 올해부터 제한이 강화된 물질은 아래와 같다.

- (사용금지 물질) 2-클로로-p-페닐레디아민, 황산염 및 염산염(2-Chloro-p-Phenylenediamine, its sulfate and dihydrochloride salts)

염색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2-클로로-p-페닐레디아민 물질의 경우, 지금까지 마스크라와 아이브로우 제품에서 최대 4.6%까지 허용됐다. 유럽 과학위원회(SCCS; Scientific Committee on Consumer Safety)는 상기 물질에 대한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해당 물질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었고, 지속 사용 시 잠재적 위험성이 커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황산염 및 염산염 (its sulfate and dihydrochloride salts)의 경우, 2-클로로-p-페닐레디아민과 기본적인 물질 구조가 같으므로 이들도 같이 금지해야 하며, 금지 제품에 염색약도 추가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집행위는 이 같은 과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마스크라, 아이브로우 및 헤어 염색약 내 해당 물질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 (허용량 제한) 클림바졸(Climbazole)

비듬방지제에 주로 사용되는 크림바졸의 경우, 0.5% 내에서 사용이 허용됐으나 과학위원회는 이번 평가 후, 기존 농도로는 인체에 유해하므로 제품에 따라 아래와 같이 0.2~0.5% 이내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 로션, 크림, 발 전용 제품 : 최대 0.2%까지
- 샴푸는 0.5%까지만 안전(비듬 샴푸의 경우에는 2%까지 허용)

화장품 성분에 대해 새로운 제한 기준이 마련되면 이미 제조된 제품의 EU 내 반입 자체가 불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생산 중이던 화장품들은 변경된 기준에 맞춰 재생산해야 하는 등 생산라인에도 큰 차질을 받게 된다. 최근 역내 K-뷰티 열풍에 힘입어 EU 화장품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이러한 EU의 움직임에 보다 주시해 우리 수출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SCIP(Substances of Concern In Products) 신고제도

폐기물 기본 지침(Waste Framework Directive)에 따라 완제품에 포함된 고위험 우려 물질에 대한 데이터 제출을 의무화하는 SCIP(Substances of Concern In Products) 신고제도가 2021년 1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해당 신고제의 목적은 폐기물 처리자로 하여금 원활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고위험 우려 물질(SVHC)이 포함된 완제품이 시장에서 점차 퇴출되도록 하는데 있다.

따라서 고위험 우려 물질을 중량 대비 0.1% 이상 함유한 완제품을 공급하는 EU 내 모든 기업은 제품 정보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SCIP 신고를 위해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2020년 10월 28일 우려 물질을 함유한 제품 정보를 공개하는 SCIP데이터베이스를 개설했다. 따라서 신고된 물질은 다음의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https://echa.europa.eu/de/scip>)

5)신 체외진단기기법(IVDR) 시행 (예정)

신 체외진단기기법[IVDR : Regulation(EU)2017/746]이 2017년 5월25일 발효된 이후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5.26일부터 적용 될 예정이다. 기존 지침(IVDD: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s, 98/79/EC)대비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현재는 유럽 인증기관의 적합성 평가 없이 자가 적합성 선언 후 시판이 가능했으나 개정 후 등급 분류에 따라 유럽 공인 인증기관의 적합성 평가 수행이 필요하다. (체외진단기기 유형 분류 시스템을 위험 등급에 따라, 가장 낮은 Class A에서 가장 높은 Class D로 분류, Class A 등급을 제외하고는 지정 인증기관으로부터 필수 인증 취득 필요함) 관련해 앞으로도 EU에서 판매 예정인 체외진단기기들은 엄격한 임상적 증거 제출하고 시판 뒤에도 사후 감독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관련업체는 이에 따른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6) 한국 인스턴트 라면류 및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에틸렌옥사이드 검역 강화

아시아에서 수입된 인스턴트 라면 및 식물 성분 함유 건강보조식품에서 에틸렌옥사이드 오염 가능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EU 집행위는 이를 규제하기 위해 규정 (EU) 2019/1793를 개정하여 제3국 수입 식품 검역을 강화하였다. 개정된 규정 (EU) 2021/2246에 따라 부속서에 등재된 규제 대상 품목의 EU 수출을 위해서는, 제품의 선적 전 정밀검사를 통해 EU의 최대 허용 잔류 기준을 준수했다는 시험성적서와 검사 공식증명서를 통관 시 제출해야만 한다. 시험성적서는 한국식품과학연구원, 한국식품과학연구원 부산지소, 한국분석기술연구원, 한국기능식품연구원, 한국에스지에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공식증명서의 경우 시험성적서를 첨부한 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신청하면 된다.

◦ EU) 2021/2246 부속서 II에 등재된 한국 대상 품목 및 수입 요건

- 규제 대상품목(CN 코드): 식물 성분 함유 건강보조식품(ex 1302, 2106), 인스턴트 라면(1902 30 10)

- 수입 요건

공식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에틸렌옥사이드의 최대 잔류 수준 준수 여부 검사 증명서 제출

검사증명서: EU 공식증명서(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발행), EO 시험성적서(국내 지정 공식검사기관 발행)

* CN 코드: CN Code는 HS code 공통 6단위 하에 2단위를 추가하여 사용하는 코드

** 에틸렌옥사이드 검역 강화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브뤼셀 무역관의 해외시장 뉴스 'EU, 2월 18일부로 에틸렌옥사이드가 함유된 한국산 식품에 수입강화조치 시행' 참고 요망

기타

◦ EU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EU의 철강 세이프가드는 일부 철강 품목의 쿼터(수입제한 물량) 내 수입 물량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다. 해당 조치는 미국이 2018년 3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자 미국 수출이 어려워진 아시아의 철강이 유럽 시장으로 몰릴 것을 우려하여, 유럽 집행위원회가 유럽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26개 철강재 및 철강 제품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치이다.

지난 2020년 7월 01일부터 모든 국별 쿼터를 연간에서 분기별로 변경하고, 대규모 철강 수출자의 잔여 쿼터 접근 상한을 설정하는 내용의 세이프가드 개정안이 발효 되었고, 해당 개정안에 따른 3차연도 세이프가드는 2021년 6월 30일에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유럽철강협회(EUROFER)가 세이프가드 연장을 강력히 요구했고, 또한 EU 12개 회원국이 세이프가드 연장 검토를 요청함에 따라 유럽집행위원회는 지난 2월 26일 일부 철강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연장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역내 생산, 소비 및 고용 등, 철강 수입으로 업계 불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코로나 이후 더욱 심각해지는 것으로 드러나, 2021년 6월 10일 EU 집행위는 WTO에 역외국 철강재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3년(2021.07.01~2024.06.30) 더 연장하겠다고 통보했다. 집행위는 현재 방식과 동일한 총 26개 품목 내 쿼터제를 시행하고 초과 물량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연도별 3% 중량 방식 역시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다. 관세제도

관세제도 개요

스웨덴은 EU 회원국으로서 EU의 공동 관세 제도를 따르고 있다. EU-27국 내 수출입 통관, 관세평가, 화물관리 등 세관 행정에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는 관세법령은 1992년 제정된 유럽 공동체 관세법(CCC; Community Customs Code)이다. 2000년대 들어 EU의 정치·경제·사회적 통합이 가속화되고 이를 둘러싼 세관 행정 환경에 변화가 일자, 2008년 6월 EU는 세관 현대화 법(MCC; Modernised Customs Code)이라는 새로운 관세법을 제정해 발효시켰다. 이후, 2013년 10월 기존 세관 현대화 법(MCC)을 보완한 신관세법(UCC; Union Customs Code)을 마련하고 2016년 6월 1일부로 적용 중이다. 새로운 관세법은 세부적 실행규정 제정권이 EU 집행위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관세법 위반에 따른 조사, 벌금 등은 회원국 세관 당국의 소관으로 정하고 있다.

EU 관세는 크게 협정 특혜관세, 개도국에 적용되는 GSP 관세, 최혜국 관세(MFN; most-favoured-nation)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협정 특혜관세는 FTA 등 무역협정에 따른 관세로 해당 협정 내 규정된 특정 세율이 적용되며(예시 : 한-EU FTA로 0% 무관세 수출), 최혜국 관세는 WTO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말한다. GSP의 경우, 개도국 수출업체가 유럽으로 수출할 때 관세를 덜 내거나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cheme of Preferences)로 일반 GSP, GSP+, EBA로 나뉜다.

◦ 일반 GSP : 전체 상품분류 중에서 2/3에 대해 관세인하 또는 무관세가 적용되는 완전한 관세감축 혜택을 제공한다. EU Regulation No.978/2012 부속서에 대상국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 GSP+ : 일반 GSP에 해당하는 품목 카테고리에 대해서 완전 무관세라는 더 강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인권, 노동권, 환경 및 건전한 거버넌스와 관련된 국제협약을 비준하고 이행하는 국가에 부여 중이며, 대상국 명단은 EU Regulation No.978/2012 부속서에 수록되어 있다. ◦ EBA(Everything but Arm) :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ies)에 대해서 무기류를 제외한 모든 상품이 유럽연합시장에 무관세 및 쿼터의 적용 없이 수출될 수 있도록 하는 특혜 공여 정도가 가장 높은 유형이다

◦ (참고) 일반특혜관세제도 분야별 해당국가 리스트(2021년 5월 12일 확인 기준) :
https://trade.ec.europa.eu/doclib/docs/2019/may/tradoc_157889.pdf

현재 GSP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 만료를 앞두고 있으며, EU 집행위는 만료를 앞두고 2021년 9월 22일 개정안을 제안했다. 특히 집행위는 GSP 참여국이 인권·환경보호·거버넌스와 함께 이민문제 해결에 협력할 것을 개정안에을 통해 제안하고 있다. 또한 GSP 수혜국이 준수해야 할 기존 27개 협약중 6개 협약이 추가됐으며, 특혜 조건을 심각하게 위반할 경우 해당 국가에 대한 특혜 철회절차를 18개월에서 7개월로 단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EU 의회와 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수정후 승인이 되면 최종 채택 될 예정이다.

1) 관세율

EU 공동 관세율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제품 관세 분류방식인 HS(Harmonized-System) 체계를 기초로 EU가 마련한 복합분류(CN; Combined Nomenclature) 방식에 의해 분류된다. CN은 HS 품목 분류표와 CN 소호(sub-heading) 분류, 추가적인 부(Section) 또는 관련된 챕터(Chapter)의 주(Note) 등 보충규정이 포함되며, 이사회 규정 EEC 2658/87 부속서 내에서 명시된다. CN 분류체계는 8자리의 숫자로 구성되는데, 처음 6자리 숫자는 HS 코드와 동일하고 나머지 7,8번째 숫자는 EU에서 독자적으로 마련한 세부적 분류체계가 더해진다. 이 외에도, CN에 의해 규율되지 않는 EU 차원의 세부적 분류목적을 위해, CN 8자리에 2자리를 추가한 10자리 형태의 통합관세율(TARIC; Integrated Tariff of the European Communities)이 존재한다. Taric은 특혜관세, 관세할당 등 관세율과 관련된 모든 조치를 비롯해 과일과 채소의 표준 수입가격 및 단위가격, 농산물 구성요소, 특정물품의 수량 제한, 특정물품에 대한 수출입 통제, 수출입 신고서에 사용되는 코드 등 기타적인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관세율은 FTA 등 무역

EU 집행위는 매년 관세율표를 EU 관보(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OJEU)를 통해 공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관세율에

는 종가 관세(Ad-valorem Tariff)가 적용되고 석탄, 농산물 일부, 식품, 영화 필름 등에는 종량세(Specific Duties)가 적용되며, 국제 가격의 변화에 대해 일정 수준의 관세 유지를 목적으로 담배, 과일, 카펫과 시계 일부 등에는 종량세로 관세의 상·하한선을 설정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종가세를 부과하는 선택 관세(Alternative Tariff)가 존재한다. 이 밖에도,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심한 과일, 채소, 화훼류 등의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율이 신축적으로 조절되는 계절 관세(Seasonal Tariff)가 적용된다. 한편,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뿐만 아니고 수입 부과금(Import Levy)을 부여한다. EU는 1년에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역내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거나 일시적으로 수요가 급증해 EU 역내 생산만으로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품목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관세 부과를 면제해주고 있다. 이들 품목은 EU 관보를 통해 발표된다.

2) 관세 부과 가액

EU 내 수입되는 상품의 실질거래 가격, 즉 송장 금액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단, 인도 조건에 따라 송장에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송장 금액과는 별도로 관세 부과 가액 산정 시 반영되는 요소들이 있는데 운송료, 보험료, 로열티, 라이선스 수수료, 연구개발비 등이 그러하다. 통관 시 관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세율은 회원국마다 다소 상이)와 일부 특정 제품(담배, 주류, 석유 등)에 대해서는 특별세(excise)가 부과된다. 2021년 5월 기준, 적용되고 있는 국별 부가가치세(VAT) 요율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할 수 있다.

- 링크 :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business/vat/telecommunications-broadcasting-electronic-services/vat-rates_en

한편, 22유로 미만 소규모 제품에 적용돼왔던 VAT 면제제도는 고부가가치 소형제품 판매가격을 22유로 미만으로 허위 작성하는 등 제도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2021년 7월 1일부로 폐지되어 현재 제품 가격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VAT가 부과되고 있다.

○ 부가가치세(VAT) 관련 신규 내용

2021년 7월 1일부로 역외국 제품에 대한 전자상거래 부가가치세(VAT) 시스템이 변화된다. 집행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22 유로 미만의 소규모 제품에 대해 VAT를 면제해왔으나, 많은 역외국 기업들이 이 제도를 악용해 스마트폰 등 고부가가치 소형제품 판매에 대한 인보이스를 22 유로 미만으로 허위 작성해 VAT를 면제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역외국 전자상거래 판매 중 25%에 달하는 거래가 VAT 납부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역내생산 제품에만 부과되는 VAT로 많은 EU 기업이 불공평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 시정해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1년 7월 1일부터는 제품 가격과는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VAT가 부과될 예정이다. 당초 EU는 2021년 1월 1일부로 동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회원국 상황을 고려해 발효시점을 6개월 연장한 7월부터 적용한다고 전했다.

3) 관세제도 신규내용

2020년 9월 28일, EU 집행위는 현행 관세 행정시스템을 고도화해 보다 통합된 관세동맹을 위한 관세 액션플랜을 발표했다. 집행위는 회원국간 관세 행정시스템 수준이 다소 상이해, 시스템이 비교적 취약한 회원국 내 불법제품 유입 및 관세법 위반 사례 등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리와 코로나19 등 위기상황 대응을 위해서도 보다 탄력적인 관세 행정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회원국 간 협력체계 강화 및 효과적인 세관 리스크 관리를 통해 역내 수입 관세행정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집행위가 추진 예정인 관세동맹 액션플랜은 크게 전자상거래 관리, 법규준수, 리스크 관리, 관세행정 협력 등 4개의 분야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 분야의 경우, 2024년 1월까지 전자상거래 기업의 VAT 납부여부에 대한 관세당국의 접근성을 확대해 수입물품의 판매처 추적, 저가신고 차단 등 통관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며 2023년까지 온라인 플랫폼에 관세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공동관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관세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EU 차원의 공동된 제재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며 리스크 관리 분야의 경우, 현행 EU의 수입물품 전자신고 관리시스템(ICS2; Import Control System)을 2024년까지 개선해 회원국간 보다 통일된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 코로나19 대응위한 의료품목의 관세·부가가치세 면제 연장(2022.1.1)

2022년 1월 1일, EU 집행위는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의료품목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관세·부가가치세의 면제 조치를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EU는 역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마스크, 손세정제, 체온계, 심전계, 호흡기, 진단시약 등 총 41종의 의료품목에 대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2020년 1월 30일부터 면제해오고 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중요 의료물자의 안정적 수급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3차례 연장되었다.

- EU 전자상거래 부가가치세 과세 규정 개정

EU는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의 일환으로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역내 기업에게 공정경쟁 여건을 보장하는 EU 전자상거래 VAT 개정법을 2020년 2월 채택해, 2021년 7월1일부로 시행되고 있다. 동 규정의 주요 변경사항은 IOSS(관부가세 신고 간소화 시스템) 플랫폼 신규 도입, 역외 수입 상품의 VAT 면제 조건 폐지, 부가세 준수 책임 이전 (판매자→플랫폼 사업자) 등이다.

- EU 집행위, 우크라이나 상품에 대한 수입관세 적용 중단 제안

2022년 4월 27일 EU 집행위는 우크라이나 사태이후, 우크라이나의 생산·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1년간 모든 우크라이나 상품에 대한 수입관세 적용 중단을 제안 했다. 이와 같은 조치는 EU의 수입 쿼터제가 적용되는 농산물과, DCFTA 체결로 단계적 관세 적 관세 철폐 중에 있던 비료, 알루미늄, 자동차 등 일부 공산품에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EU 내 철강 수입을 제한하는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우크라이나 면제 및 우크라이나에 부과된 기존 반덤핑 관세 조치 해제도 이번 제안에 포함되어 있다. 해당 제안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경제적으로 지원 하며, 동시에 역내 식량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조치로 유럽 의회와 이사회 승인을 거쳐 최종 발효 될 전망 이다.

관세율 알아보는 법

아래의 EU 집행위 ‘Taric’ 사이트 내에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유럽의 수입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

- 집행위 관세율 확인 관련 링크: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taric/taric_consultation.jsp?Lang=en&Taric=&EndPub=&MeasText=&Area=&Regulation=&LangDescr=&callbackuri=CBU-0&MeasType=&SimDate=20150610&StartPub=&OrderNum=&GoodsText=&Level=&Expand=false

이 사이트를 클릭 후 상품 HS Code(Goods code)와 상품의 원산지 국명(Country of origin)을 입력하면 품목별 세율을 알아볼 수 있다. 이 밖에도, 한국 외 특정 국가를 선택하게 되면 해당국으로부터의 수입관세율 역시 확인이 가능하므로 여타국과의 EU 수입 관세를 비교해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EU는 수출입상품 품목분류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CLASS)을 2020년 5월 구축해 상품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했다. 이 플랫폼을 통해 수출입품목에 대한 EU 결정(CCC Conclusion), 분류규정(Classification Regulation), EU 사법재판소 규정(ECJ Ruling), Taric 등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 관련 사이트 링크 : <https://webgate.ec.europa.eu/class-public-ui-web/#/search>

6. 통관 · 물류

가. 물류정보

물류정보

1) 주요 무역항 및 물동량

- 주요 무역항: 한국에서 출발한 스웨덴행 화물은 주로 유럽내 전초기지인 네덜란드 항구를 거쳐 스웨덴 서해안의 2개 항구(요테보리항, 헬싱보리항)와 동해안의 예블레항을 통해 스웨덴으로 들어온다. 스웨덴으로 들어온 화물은 주로 철도, 트럭 등을 이용해 스웨덴 내륙 지역으로 운송되는 경우가 많다. 스웨덴의 주요 항구로는 요테보리항, 헬싱보리항, 예블레항이 있다.
- 주요 무역항별 물동량: 2020년 기준 스웨덴의 대외 총 물동량은 168백만 톤으로 2019년 대비 1% 감소했다. 국내 물동량 역시 전년 동기대비 1%가 감소한 24.1백만 톤으로 집계되었다. 주요 무역항별 물동량은 요테보리항(37.9백만 톤), 헬싱보리항(7.9백만 톤), 예블레항(6.3백만 톤)이다. * 2022기준 해운 물동량 최신자료

2) 주요 공항 및 물동량

- 주요 공항: 스웨덴의 주요 국제공항은 스톡홀름과 요테보리 등 주요 대도시에 위치하고 있다. 이중 우리나라 방문객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공항으로는 스톡홀름의 알란다(Arlanda) 국제공항과 요테보리의 란드베테르(Landvetter) 국제공항이 있다. 이외 유럽 노선을 운항하는 공항으로 스톡홀름 외곽에 소재한 스카브스타(Skavsta) 국제공항이 있다.
- 주요 공항 이용 승객 수: 코로나19 확산으로 이동이 제한되면서 2020년 공항 이용객수가 급감한 이후 2021년 하반기부터 회복세로 돌아섰다. 2021년 기준, 스웨덴의 항공 물동량은 총 14만톤, 공항 이용객수는 1천만명을 넘어섰다. 이중 국제선 이용승객이 약 8백만, 국내선 이용 승객이 약 2백만 명으로 집계됐다.

3) 유의사항

스웨덴 철도 운송은 컨테이너를 적재하고 긴 구간을 장시간 운행한다. 따라서 속도가 빠르며 급정차시 컨테이너 내부의 적재물이 컨테이너 외부로 튀어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적재물의 중량과 내부 고정상태를 철저히 검사 후 운송을 허가하므로 한국에서 컨테이너 적재 시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릴 또는 롤로 포장돼 있는 코일이나 철재, 전선, 기타 구조물 등의 중량은 반드시 제한 이내인지 확인해야 하고 컨테이너 내부에 팔레트나 제품을 고정하는 자재의 규격과 방법을 스웨덴 철도회사 규칙에 따라야 운송이 허가된다.

4) 기타 참고사항

코로나19로 물류비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2021년 기준, 동아시아와 북유럽 간을 운행하는 컨테이너 해운사의 40ft 컨테이너 요금은 약 11,050달러(Freightos Baltic Index 2022/ '22.4월기준)로 확인됐다. DB Schenker사의 경우, 한국 부산항→스웨덴 요테보리 항구까지 운임은 20ft(US\$ 10,000), 40ft(US\$ 19,000)이다. 다만 물류 상황과 시점에 따라 요금이 변동할 수 있으므로 운송 전 재확인 필요하다.

나. 통관제도

통관 유형별 절차

- 서류 절차

스웨덴의 통관절차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일반적인 절차를 따르며, 필요 서류는 신청서, 인보이스 원본, 선적서류, 공급자증명서 등이다. 이밖에 수입승인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입 허가서가 필요하다. 1988년부터 시행된 EU의 서류 간소화 방침에 따라 150여 가지의 통관서류를 단일화해 통일 양식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EU의 공동관세규정(Codex)에 의거한 물품분류 및 관세부과가 이루어지

고 있다. 통관 시에는 수입 신고서와 세관 신고서를 화물 송장 사본 1부와 함께 제출하며 각종 특혜 협정 즉, FTA, EFTA 협정이나 EU 조약 등과 관련된 품목일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물품 검사

세관에서는 화물 송장 등의 항목별 내용에 대한 정확성 여부를 심사한다. 물품 검사는 보통 세관이 정한 시간에 세관 통제 구역인 부두나 창고 등 지정된 장소에서 하며, 플랜트 설비, 정밀 기기, 귀중품, 긴급 수요 물자, door to door로 운반되는 경우와 같이 세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검사가 곤란한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원이 현장에 파견돼 검사한다.

1) 약식통관(Simplified Import Entry)

샘플 등을 수입할 때 주로 이용되며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하지 않고 선하증권(BL) 혹은 항공화물운송장(AWB) 및 상업송장(인보이스, Commercial Invoice)만 준비하면 된다. 내용물 가치가 1,600SEK 미만일 경우 부가세나 관세를 내지 않고 약식통관이 이루어진다.

2) 정식통관(Standard Import Entry)

정식통관은 수출입 회사들이 일반적인 통관절차를 거칠 때 이용되는 방법이며, 보통 1,500SEK 이상의 품목에 대하여 정식통관이 이루어진다.

수입업자는 상업송장 등 관세평가 및 세 번 분류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포함한 선적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 수입허가 및 관세 납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물품의 인출 이전에 한-EU FTA 체결로 관세는 0%이고 세관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통관 구비서류로는 선하증권, 인보이스,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원산지 증명서 등이 있으며 특수 품목의 경우 특정 라이선스가 요구될 수 있다.

3) 임시통관(Temporary Import Entry)

스웨덴에 들어온 품목을 사용하지 않고 12개월 이내에 다시 반출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 임시통관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경우에는 현금 보증이나 관리자의 허가에 의한 별도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으며, 현금 보증을 했을 경우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전시회 참가물품의 경우 카르네 협약에 의해 임시 통관이 가능하다.

4) 우편통관

모든 국제우편물은 관세법과 국제협약에 의하여 세관의 검사를 받게 되는데, 이는 관세 등의 조세확보와 국민건강보호를 위해서이다. 따라서 일부 국제우편물은 스웨덴 내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 구비서류는 '국제우편물 통관 신청서' 안에 보내는 품목의 금액(Value)과 종류, 보내는 목적 등을 기입해야 한다.

5) 보세통관

보세 운송(T1 혹은 Transit document)은 수입통관 완료 전에, 화물이 이동될 때 보세 운송서류(T1)를 반드시 발행해야 하는데 이 서류는 스웨덴 이외 EU국으로 배송 시 수화인이 해당국에서 직접 수입통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용된다. 이 밖에도 화물의 스웨덴 항구 도착 이후 수입통관이 바로 진행되지 않고 보세창고로 운반될 경우에 창고까지 운송을 위해 발행하기도 한다. 보세운송 통관에 필요한 서류는 인보이스, 포장명세서 등이며 스웨덴 이외 EU 국으로 배송하는 경우에는 해당국 통관사무실 주소가 필요하다.

보세 운송서류의 유효기간은 보통 7일 정도로, 해당국 도착 이후 유효기간 내에 수입통관이 반드시 진행돼 보세 운송서류가 수입통관서류로 대체되어야 한다. 만일 보세 운송서류로 운송된 화물이 수입통관 유효기간 내에 통관되지 않는 경우, 다른 보세창고에 보관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해당국 도착 시 지정된 통관사무소에서 통관이 완료된 후에 최종 목적지로 배송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통관절차 완료를 위해서 트럭은 중간경유(Multi-stop)를 해야 한다. 이때 관세 및 부가세는 통관과 동시에 즉시 납부해야 한다. 보세보관(IMAJ 혹은 In Bond Document)은 화주가 화물에 대해 수입통관을 하지 않은 채로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하는 서류로, 위 서류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연장이 가능하므로 실제적인 유효기간은 무제한이라고 볼 수 있으며, 수입통관 완료 전까지는 부가세의 납부 의무가 연기된다.

6) 중앙집중식 통관(2025년부터 시행 예정)

EU는 2025년부터 중앙집중식(Centralised Clearance) 통관 시스템을 신규 도입해 수입세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통관 비용을 절감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EU 영토 최초 반입지에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만일 역내 다른 지역에서 통관을 원하는 경우에는 최초 반입지에서 보세운송(Multi-stop)을 통해 물품을 해당 통관사무소까지 이동시킨 후 수입통관을 진행해왔다. 다만, 이 경우 보세운송을 위한 별도의 서류발급 및 비용, 시간이 추가로 발생해 수입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애로로 작용해왔다. 이에, 이번 도입되는 중앙집중식 통관방식에 따라 앞으로는 수입물품이 수입신고자와 다른 장소에 있어도 신고자가 귀속된 세관에서 통관할 수 있게 돼,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통관방식은 당초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여전히 회원국 간 세관 인프라 시설 수준 차이가 매우 커 EU 전체의 조화로운 시스템 운영을 위해 도입시기를 조금 늦추기로 결정했다.

통관 시 유의사항

알코올과 담배는 EU 역내국과 EU 역외국으로부터의 반입량에 큰 차이가 있다. 만 20세 성인부터 알코올 반입이 가능하며 2004년부터 EU 역내국으로부터의 알코올 반입량에는 제한이 없다. 단 반입량이 큰 경우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지 또는 상업적인 판매 목적으로 반입하는지의 여부는 관세청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돼 있다.

개인 사용 및 상업적 반입 기준치는 1인당 독주 10리터(알코올 22% 이상) 또는 포도주 20리터(알코올 함유 15~22%)와 그 밖에 포도주 90리터(알코올 함유 15% 이하) 및 맥주(알코올 함유 3.5% 이상) 110리터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EU 역외국으로부터의 알코올 반입량은 만 20세 성인 1인당 독주 1리터(알코올 22% 이상) 또는 스트롱 와인 2리터(알코올함유 15~22%)와 그 밖에 포도주 4리터(알코올 함유 15% 이하), 스트롱 비어 16리터로 제한하고 있다.

만 18세 성인부터 담배의 반입이 가능하며 2004년부터 EU 역내국으로부터의 담배 반입량에는 제한이 없다. 단 반입량이 큰 경우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지 또는 상업적인 판매 목적으로 반입하는지의 여부는 관세청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한다. 개인 사용 및 상업적 반입 기준치는 1인당 담배 800개비, 시가 200개로 기준을 정하고 있다. EU 역외국으로부터의 담배 반입량은 만 20세 성인 1인당 담배 200개비, 시가 50개비로 제한하고 있다. 마약, 무기류, 폭발물, 방사성 물질, 살아있는 동물, 어·육류 식품 등은 반입이 규제되고 있다.

나. 주요 포워딩 업체 및 통관업체

◦ DHL Freight(Sweden) AB

주소	Bjornstigen 85, 170 72, Solna, Sweden
전화번호	(+46) (0)771 345 345
이메일	미공시
홈페이지	http://www.dhl.se
비고	이메일 홈페이지에서 직접 작성

◦ DB Schenker

주소	Lilla Bommen 3, 411 04, Goteborg, Sweden
전화번호	(+46) 31 703 80 00

이메일	미공시
홈페이지	http://www.dbschenker.com/se
비고	이메일 홈페이지에서 직접 작성

◦ PostNord

주소	Terminalvagen 24, 171 73, Solna, Sweden
전화번호	(+46) (0)771 33 3310
이메일	미공시, 홈페이지에서 직접 작성
홈페이지	http://www.postnord.se

◦ 대한항공 카고(Korean Air Cargo)

주소	Box 42, 190 45, Stockholm-Arlanda, Sweden
전화번호	(+46) 8 593 78862
이메일	미공시
홈페이지	http://www.koreanair.com

◦ Maersk Sverige AB

주소	Molndalsvagen 24, Box1115, 405 23 Goteborg, Sweden
전화번호	(+46) 31 364 1918
이메일	se.import@maersk.com(수입관련), se.export@maersk.com(
홈페이지	http://www.maersk.com

〈자료원 : 운송업체 홈페이지〉

III. 투자

1. 투자환경

가. 투자유치제도

외국인투자법

1) 외국인 투자 유치 관련 법규

스웨덴 외무부 산하기관인 Business Sweden은 스웨덴에 투자하거나 연구 활동을 하고자 하는 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각 기업의 요구에 맞춘 컨설팅 및 정보 수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본 지원제도가 있다. 외국인의 스웨덴 내 투자와 관련한 별도의 법규는 없으며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서도 스웨덴 국내 기업과 동일한 법규를 적용하고 있고 외국 기업과 국내 기업 간 법적 지위, 권리, 의무 등에서 차별을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촉진법과 같은 특별한 투자법규는 존재하지 않는다.

2) 스웨덴 투자관련법(비즈니스 관련법)

외국 기업과 국내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 시 적용되는 법규는 동일하며 관련법은 아래와 같다.

- The Companies Act(2005:559)
- The Act on Partnerships and Non-registered Partnerships(1980:102)
- The Trade Register Act(1974:1571)
- The Trade Register Regulation(1974:188)
- The Bookkeeping Act(1999:1078)
- The Annual Accounts Act(1995:1554)
- Planning and Building Act(2010:900)
- Real Estate Transaction Law(2011:666) 등 다수

3) 외국인 투자와 관련해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기관

- o Business Sweden(The Swedish Trade &Invest Council)
 - 주소: World Trade Center, Klarabergsviadukten 70, Box 240, 101 24 Stockholm Sweden
 - 전화: 46-8-588 66000
 - 홈페이지: www.business-sweden.se
- o Business Sweden 한국 지사
 - 주소: 서울 중구 충무로 2가 64-5, 신일 빌딩 11층, 100-861
 - 전화 : 82-2-739 1460
 - 팩스: 82-2-739 1463
 - 이메일: 홈페이지에서 직접 작성

투자인센티브

1) 세제 인센티브

스웨덴의 법인세율은 20.6%로 다른 유럽국가 및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일반 개도국과 유사한 수준이다. 스웨덴 무역 투자청(Business Sweden)의 발표로는, 이와 같은 낮은 법인세 이외에도 계열사 매도 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한 세금공제, 그룹 내부 배당금에 대한 세금 면제 및 주요국과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포괄적인 조세 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비상장 주식이나 10% 이상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장 주식을 1년 이상 보유 시 자본이득과 배당금에 대한 세금면제도 있다.

2) 지역 인센티브(북부지역 투자에 대한 지원)

스웨덴은 한국과 달리 외국인 투자지역이나 경제자유구역이 별도로 조성돼 있지 않다. 대신 상대적으로 인구밀도가 현저히 낮고 개발이 부진한 스웨덴 중·북부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국내 기업 및 외국 기업 차별 없이 동일하게 심의를 거쳐 개발 및 고용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개발 보조금은 투자지역, 기업규모 및 투자분야에 따라 개별 심의를 거쳐 투자 금액의 10~40%의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다.

지역 고용 보조금은 고용 효과, 경제성장, 지역 비즈니스 활동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고 각 신청 건에 대한 개별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액을 산정한다. 첫 고용 후 계속 고용이 증가할 경우를 전제로 최대 3년간 지원해준다.

제한 및 금지(업종)

원칙적으로 제한업종 및 제외업종은 없다. 단, 국가산업 정책 등의 이유로 업종에 따라 라이선스 및 인허가권을 요구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가 예상되는 특정 지역의 과도한 투자, 국가 소유 부동산 투자는 제한한다. 알코올, 담배 등과 같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산업은 제한한다.

나. 투자입지여건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1) 입지 여건

스웨덴은 지자체가 공업용지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공장부지 결정은 지자체가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자체는 특정 지역에서만 공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한편, 해당 지역 내 공장 부지는 기업 유치를 위해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기도 한다. 부지 확보의 용이성, 환경보호 문제 등으로 공장들은 주로 도시 외곽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 스웨덴의 대표적 기업들은 대부분 각 지방의 소도시에 분산돼 있는데, 이는 당초 기업이 설립될 당시부터 소재지에서 커왔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Volvo사가 요테보리 외곽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Scania사와 AstraZeneca사는 스톡홀름 외곽지역인 쇠데르텔레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2000년 말뫼-코펜하겐(스웨덴과 덴마크의 경계)을 잇는 교량이 완공됨에 따라 해당 지역(Oeresund)의 경제권이 단일화됐으며, 특히 IT 및 생명공학 관련 산업이 집중적으로 발전되고 있다. 이 지역을 Medicon Valley로 부르기도 한다.

한편 Business Sweden(www.business-sweden.se)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투자가의 목적에 맞는 공장 부지를 알선해 주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Business Sweden을 접촉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스웨덴 북부지방은 2011년 Facebook이 룰레오시에 대형서버를 설립한 이후 추가 투자로 이어졌으며, 글로벌 IT 기업들에 스웨덴 북부 지방이 데이터센터 건설 최적지로 부상하였다. 당시 Facebook은 '룰레오 지역의 공기 중 자연 냉기가 서버 홀의 온도를 낮게 유지하는 핵심으로 투자를 결정하게 된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현재 북부 셀레프테오 지역에 스웨덴 전기차배터리 생산업체인 노스볼트(Northvolt)사가 전기차배터리 생산공장을 건설 중으로 관련 협력사들의 진출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21년 11월 Microsoft사는 예블레, 산드빅, 스타판토르프 등 세 곳에 Data Center를 오픈했다. 해당 Data Center는 Microsoft사의 클라우드 플랫폼인 Azure 운영 및 Office 365 서비스 운영을 위해 구축했으며, 총 투자규모는 3,000만 달러 내외로 알려졌다.

2) 산업단지

스웨덴은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개발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GDP의 3.4%(2019, 2021 기준 최신자료)를 연구개발비로 사용하는 등 연구개발에 집중해 교육과 산업 분야 모두 튼튼한 기술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 특히 1980년 초부터 산학협동체인 사이언스 파크가 활성화되면서 스웨덴 산업을 크게 성공하게 하는 토양 역할을 해왔다. 스웨덴 사이언스 파크의 총 본산인 Swedish Incubators &Science Parks는 43개의 비즈니스 인큐베이터와 33개의 사이언스 파크로 구성된 우산형 조직으로서 5,000개 회사, 7만 명의 종업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투자자들이 물리는 주요 도시별 사이언스 파크는 아래와 같다.

산업단지

◦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Kista Science City)

규모	2,500헥타르
위치	Borgarfjordsgatan 12, Box 1073 164 25 Kista, Stockholm, Sweden
임차료	N/A
관할기관 및 연락처	전화: +46-072 381 9062 (Communication Manager 개인연락처, 홈페이지에서 Communication 팀 연락처 확인 가능) 이메일 : info@kista.com
비고	유럽 내의 가장 다이내믹한 IT 및 전기통신 분야 센터 중 하나로 스웨덴의 실리콘 벨리로 불리고 있다. 1970년대 Ericsson사와 IBM사가 들어서면서 각종 하이테크 업체들이 모여 현재의 사이언스 시티가 설립 됐으며, 현재 입주기업 972개사, 32,500명이 근무하며 이중 ICT기업 종사자는 18,108명, 클러스터 거주 민은 12만 명 내외이다. 스톡홀름 대학(The University of Stockholm), 왕립 공대(The Royal Institute of Technology)와 연계돼 있으며 1,100명의 연구원, 8,000여 명의 학생이 모여있다.

○ 린셰핑 사이언스 파크(Linköping Science Park)

규모	N/A
위치	Teknikringen 10, 583 30 Linköping
임차료	N/A
관할기관 및 연락처	전화: +46 72 464 7255 (Communication Officer 개인번호), 홈페이지에서 전체 직원 연락처 확인 가능 이메일 : info@linkopingsciencepark.se
비고	1984년 설립된 공단으로 시그널 및 영상공학, 전기, 소프트웨어, 센서공학과 전기통신 분야가 밀집돼 있다. The University of Linköping과 The Linköping Institute of Technology와 연계돼 있으며, 400개사에 7,000여 명이 종사하고 있다. 이전에 매르데비 사이언스 파크(Mjardevi Science Park)로 불리던 것을 최근 린셰핑 사이언스 파크로 개명

○ 린드홀멘 사이언스 파크(Lindholmen Science Park)

규모	N/A
위치	Lindholmenspiren 5, 402 78 Göteborg
임차료	N/A
관할기관 및 연락처	전화: +46 (0) 31 764 70 00 이메일 : visitorscentre@lindholmen.se
비고	2000년에 설립된 교통, ICT, 미디어 분야의 사이언스 파크로, 375개사에 약 2만 명이 종사

○ 살그렌스카 사이언스 파크(Sahlgrenska Science Park)

규모	N/A
위치	Medicinaregatan 8A, 413 90 Göteborg
임차료	N/A
관할기관 및 연락처	전화: +46 (0)72 375 7507 (Communication Consultant 개인번호, 홈페이지에서 전체 직원 연락처 확인 가능) 이메일 : info@sahlgrenskasciencepark.se
비고	요테보리 대학에 소재한 의약분야 사이언스 파크

○ 사이언스 파크 쉐브데(Science Park Skövde)

규모	N/A
위치	Kanikegrand 3B, 541 23 Skövde, Sweden

임차료	N/A
관할기관 및 연락처	전화: +46 (0)500 44 8954 이메일 : info@scienceparkskovde.se
비고	쉐브데 대학에 소재한 게임 분야 사이언스 파크로 유럽 최대의 게임클러스터인 Sweden Game Arena를 두고 있다. 학생 500명, 교수와 연구원 40명, 출시게임 50여 개, 게임 스튜디오 40여 개가 있으며 매년 약 10여 개의 게임 스타트업 기업이 탄생한다. 이전에 고티아 사이언스 파크(Gothia Science Park)라 불리던 것을 최근 사이언스 파크 쉐브데로 개명했다

◦ 읊살라 이노베이션 센터(Uppsala Innovation Centre)

규모	N/A
위치	Dag Hammarskoldsvag 38, 751 83 Uppsala, Sweden
임차료	N/A
관할기관 및 연락처	전화: +46 (0)73 079 0721(Communicator 개인 연락처) 이메일 : info@uic.se
비고	1999년 STUNS(읍살라 지역 내 대학, 기업, 공공기관 간의 협력 증진 목적 설립 기관), 읊살라 광역시, SLU Holding(스웨덴농업과학대학 지주회사), 읊살라대학 지주회사(UUAB) 등의 공동 출자로 설립된 이노베이션 센터로 5개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스웨덴 최대의 생명과학 산업단지로 생명과학, ICT, 크린테크 기업들이 소재하며, 사무공간 제공이 아닌 비즈니스 개발 지원에 초점을 두고 매년 70~80개 기업과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70여 명의 비즈니스 코치들이 있으며 이들은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지 않는다.

<자료원 : 시스타 사이언스파크 등 각 산업단지 홈페이지, 스톡홀름무역관 자체조사>

주요 지역별 여건

없음.

2. 외국인직접투자

가.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표

(금액 : 백만\$)

2017	2018	2019	2020	2021
15900.1	4221.45	10112.3	26109.3	-

<자료원 : UNCTAD Stat>

나. 대외 직접투자 현황

- 대외 직접투자 현황표

(금액 : 백만\$)

2017	2018	2019	2020	2021
27361.5	17834.5	15549.2	31014.5	-

<자료원 : UNCTAD Stat>

3. 한국기업 투자

가. 한국기업 투자 통계

- 한국기업투자 통계표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2019	14	4	27,867	14	11,181
2020	7	2	50,908	8	18,110
2021	14	9	249,268	18	104,147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나. 업종별 투자 동향

- 업종별 투자 동향표

- 2019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제조업	3	1	4,668	3	4,672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3	1	18,917	2	2,402
정보통신업	1	1	1,464	2	1,70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	0	1,886	3	1,464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 업	3	0	931	3	933
교육 서비스업	1	1	1	1	1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20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제조업	1	1	3	1	3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1	0	41,831	4	11,242
정보통신업	2	0	3,201	1	1,001
금융 및 보험업	1	0	0	0	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	1	5,872	1	5,863
교육 서비스업	1	0	1	1	1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21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제조업	8	5	11,594	8	11,59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0	0	0	3	31,067
건설업	1	1	3	1	3
부동산업	2	2	235,958	4	60,19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	1	1,313	2	1,292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 업	1	0	400	0	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다. 한국기업 진출현황

○ 현대상선

진출연도	2003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해운 대리점
취급분야	컨테이너 해상운송
모기업명	현대그룹

○ 삼성전자

진출연도	1992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도·소매
취급분야	전자제품(가전,통신,정보)
모기업명	삼성그룹

○ 기아자동차

진출연도	2004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도·소매
취급분야	자동차
모기업명	현대자동차

○ LG전자

진출연도	1999
진출형태	현지 판매 법인
업종	도·소매
취급분야	전자, 전기제품
모기업명	LG

○ 대한항공 카고

진출연도	2006
진출형태	지사
업종	운송물류
취급분야	운송물류
모기업명	한진그룹

○ 현대모비스

진출연도	2008
------	------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도·소매
취급분야	자동차부품
모기업명	현대자동차그룹

○ 한국타이어

진출연도	2009
진출형태	법인
업종	도·소매
취급분야	자동차부품(타이어)
모기업명	한국타이어

○ 제일노르딕

진출연도	2013
진출형태	법인
업종	서비스업
취급분야	디자인, 인테리어, 설치/시공
모기업명	삼성그룹

○ LX 판토스(구 범한판토스)

진출연도	2017
진출형태	지사
업종	운송물류
취급분야	운송물류
모기업명	LG

○ HS AD

진출연도	2016
진출형태	지사
업종	홍보
취급분야	디자인, 인테리어, 설치/시공

모기업명	LG
------	----

○ 유코카 캐리어스 유럽오피스

진출연도	2018
진출형태	지사
업종	운송물류
취급분야	자동차 운송물류
모기업명	유코카캐리어스(주)

○ 제일엠앤에스

진출연도	2020
진출형태	법인
업종	도.소매
취급분야	전기차배터리 관련장비
모기업명	제일기공

○ 동진 스웨덴

진출연도	2020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제조
취급분야	전기차배터리 장비
모기업명	동진 세미캠

○ 웰코스 스웨덴

진출연도	2020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장비 설치업체
취급분야	전기차배터리 기기 및 장비 설치
모기업명	(주)웰코스

<자료원 : 해당기업 담당자 접촉>

4. 투자진출방식

가. 투자진출 형태

법인

법인은 법적으로 현지에서 독립된 하나의 회사로, 한국 본사와는 업무적 협력 관계와 TOP 경영진에 대한 선임권만 있으면 되는 형태이다. 법인은 생산이나 판매를 현지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본사와도 계약으로 거래가 이루어져 독립적으로 손익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철저히 현지 기업으로서 현지화된 영업전략을 펼쳐나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 현지법인

법인은 독립된 하나의 회사로 생산이나 판매를 현지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본사와도 계약으로 거래가 이루어져서 손익이 독립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철저히 현지 기업으로서 현지화된 영업 전략을 펼쳐나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현지법인은 해당 국가 내의 모든 법적 책임을 현지법인만이 지며, 한국 본사는 그 책임 소재가 없다. 영업이익은 현지법인에 귀속된다. 법인 설립은 스웨덴 회사등록청(Swedish Companies Registration Office)에 하며, 구비서류 및 상세 절차는 아래와 같다.

법인 설립 시에는 정관과 주식납입대금 증명서를 첨부해 스웨덴 회사등록청(Swedish Companies Registration Office)에 신고하는데, 법인 설립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해당 최소 자본금을 예치한 후 예치금 영수증을 받아 스웨덴 회사등록청에 법인설치신고 양식과 함께 제출한다. 법인 설립 시 구비 서류로는 회사설립 정관 및 공증서, 설립자의 신분증명서, 사업허가서 및 사업 관련 자격증 등 최소 납입 자본금 증명서 등이 있다.

최소 자본금은 민간기업은 2만 5천 크로나(약 2,900달러), 국영기업은 25만 크로나(약 2만 9천 달러)이며, 법인설립 신고 시 등록비용은 민간기업 및 국영기업 모두 2,200크로나(약 256달러)이다. 법인 설립 신고 전 공문서류를 받을 수 있는 주소(사무실)가 반드시 마련돼 있어야 한다. 법인의 이사회는 최소 1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스웨덴이나 유럽에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이사회 멤버는 전과 기록이나 파산 기록이 없어야 한다. 스웨덴이나 유럽 이외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이 이사회 멤버가 되면 동 비율의 EU 거주자를 이사회에 포함해야 한다. (예, 한국인 1명이 이사회 멤버가 될 경우 EU 거주자 1명을 반드시 이사회에 포함)

법인의 감사는 외부 감사기관을 선정해야 하며, 회사 등록 시뿐만 아니라 매년 연간 보고서(Annual Report) 작성 시에도 감사의 최종 감사가 있어야 한다. 법인 설립절차가 회사 등록청으로부터 마무리되면 스웨덴 세무서에 고용인과 VAT 관련 세금신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 설립 소요기간은 통상 약 7일이 소요되며 1인당 GNI 대비 법인설립비용은 0.5%이다. 관련 법령으로는 The Companies Act(2005:559)가 있으며 법인 설립 절차에서 내·외국인 차별은 없다.

지사

법인이 법적으로 현지에서 독립된 하나의 회사인 반면, 지사는 일종의 현지 사무소로서 독립된 회사가 아니라 본사 직원이 업무를 보기 위해 편의상 마련해 놓은 사무실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해외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는 현지에서 영업 활동(특히 판매)을 하기 위해 본사 직원이 파견되기 때문에 현지 통제가 용이하며, 자사를 잘 파악하고 있는 인력이 파견됨으로써 업무 진행상 커뮤니케이션 오류가 줄어들고, 회사의 기밀이 외부로 새어나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이익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사의 이익은 본사에 귀속되며, 책임소재 면에서도 한국의 본사에까지 그 책임 소재가 있다. 지사는 대회 홍보에서 외국 회사로 한시적 인상을 줄 수 있고 영업활동 및 오더 수주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세무 감사 시 감사의 범위가 한국 본사까지 미치는 경우가 있어 회사기밀 유지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외국 회사의 지사는 대체로 설립이 자유롭고 최소 자본금 제한이 없다. 지사 설립 등록절차는 현지법인 등록절차와 동일하나 설립신고 시

등록비용은 2,000 SEK(약 233달러)이며, 설립에는 약 7일이 소요된다. 관련 법령으로는 The Companies Act(2005:559)가 있으며, 지사 설립 시 필요한 서류로는 신청서, 최근 2년간 본사 재무제표, 본사가 부도회사가 아니라는 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연락사무소

외국기업의 투자진출 형태로는 법인과 지사설립 2가지 유형만 가능하며, 기존 투자 진출형태 중 하나이던 연락사무소 설립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변경되었다.

다만,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6개월 미만 스웨덴에 진출할 경우에는 지사나 지점으로 국세청에 등록 후 번호를 받아 활동할 수 있으며,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기업등록청에 등록해야한다.

나. 투자진출시 유의사항

투자진출시 유의사항	1) 투자위험도 스웨덴은 정치, 경제적으로 매우 안정되어 있어 사실상 국가부도 위험은 제로(0) 상태다. 스웨덴의 투자환경 역시 안정적인 편으로 스웨덴 투자진출에 따르는 제도적 측면의 리스크 또한 매우 낮다. 다국적 컨설팅 기관인 A.T.Kearney가 매년 발표하는 '외국인직접투자 신뢰지수(Foreign Direct Investment Confidence Index)'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스웨덴의 FDI 신뢰지수는 3.0점 만점에 1.79로 조사대상 25개국 중 13위다. 2) 투자진출형태별 애로사항 독자투자 및 합작투자에 따른 별도의 어려움은 없는 편이다. 다만, 스웨덴 현지사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한국 투자자로서는 자칫 불리한 투자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3) 분쟁해결 스웨덴에는 대 스웨덴 투자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창구로 Business Sweden(http://business-sweden.com)이 있으며, 투자나 교역 중 분쟁이 발생할 경우, 스톡홀름 상공회의소내 상사중재원(arbitration Institute of the Stockholm Chamber of Commerce)에 중재를 요청할 수가 있다. 분쟁해결 및 애로사항 상담 연락처는 (TEL: +46-8-555 10011, http://sccinstitute.se) 이다.
------------	---

다. 회사 유형

주식회사

1인 이상의 발기인(초기 투자자)을 필요로 하며 투자자의 수에 제한이 없는 것이 주식회사의 특징이다. 단일 주주, 단일 대표이사 가능하며 최소 1인 이상의 이사회 구성이 필요하다. 유한회사에 비해 이사회, 주주총회 외에도 감사위원회가 설치돼야 하므로 설립이 복잡하고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매출규모나 직원 수로 볼 때 전형적인 대기업의 형태로 주식양도의 자유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추후 상장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운영에 관련(특히 재무)한 사안들이 정확히 기재되고 공시되도록 하는 규정들이 많이 있다. 지분의 이전 및 주식의 양도에 대해서 자유로운 합의가 가능하나 경영진에 대한 주주의 관리·감독이 감사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주주의 의사표시는 유한회사에 비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진다.

유한책임회사

스웨덴의 가장 일반적인 법인 형태(코만디트볼라그, Kommanditbolag)로서 주식회사(악티에볼라그, Aktiebolag)에 비해 설립절차가 간단하며, 경영진에 대한 주주의 관리·감독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회사의 자산에 대해서는 주주가 불입한 자본금 한도 내에서 유한책임을 지나, 주주에 의한 보증이나 차입 등 주주가 별도로 각서한 사안에 대해서는 무한책임이 있다. 최소 1인 이상의 발기인(주주)과 현물투자가 요구되나, 현물투자의 경우 현물가치에 대한 전문기관의 평가보고서가 요구돼 원활한 회사 설립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유한회사의 자본금은 주식회사와 달리 주식을 발행하지 않고 지분으로 표기되며, 지분의 이전과 양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증인에 의한 법적 절차가 필요

하다.

- 1인 유한책임회사와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가 있다.
 - 1인 유한회사는 투자자가 1인인 경우로 회사 설립 및 운영에서 각종 서류작업 및 운영방식이 간단하며, 특히 내부의사결정기관과 절차를 투자자의 뜻대로 정해 정관에 기재할 수 있다.
 - 2인 이상 유한회사는 투자자가 2인 이상일 때 설립 가능한 회사이다.

개인사업자

소규모 영세기업 형태의 개인사업 운영을 위해 법인이나 지사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단 이때는 스웨덴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에 한정하며, 본인의 주민등록 번호가 회사등록번호가 돼 1인 회사를 운영할 수 있다. 회사 등록은 스웨덴회사등록청에 한다.

라. 회계/법무법인 안내

○ EX Tuto Affarjuridik

전화번호	(+46)46-771225
주소	Valhallavagen 40, Stockholm, Sweden
홈페이지	https://www.extuto.se
이메일	info@extuto.se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해당사항 없음
비고	1989년 설립된 법무법인으로 비즈니스 관련법 전문

○ Foretags Juristerna(Juristfirman Dan-Louis Schneider AB)

전화번호	(+46) 8 667 9270
주소	Melodislingan 22. 2tr , 115 51 Stockholm, Sweden
홈페이지	https://www.foretagsjuristerna.se
이메일	dan-louis@foretagsjuristerna.se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해당사항 없음
비고	1989년 설립된 비즈니스 관련법 전문

○ Advokatfirman Salmi Partners

전화번호	(+46) 8 673 5180
주소	Drottninggatan 71C, Box 3095, 103 61 Stockholm, Sweden
홈페이지	https://www.salmipartners.se

이메일	reception@salmiprpartners.se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해당사항 없음
비고	비즈니스 관련법 전문

◦ KPMG

전화번호	(+46) 8 723 9100
주소	Vasagatan 16, 111 20 Stockholm, Sweden
홈페이지	https://www.kpmg.se
이메일	info@kpmg.se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해당사항 없음
비고	글로벌 회계법인으로 전 세계 150개국 진출 스웨덴은 60개 지역 소재, 종업원 1,500명으로 구성

◦ Deloitte

전화번호	(+46)752462000
주소	Rehnsgratan 11, 113 79 Stockholm, Sweden
홈페이지	https://www2.deloitte.com/se/sv.html
이메일	info@deloitte.se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해당사항 없음
비고	글로벌 회계법인으로 전 세계 140개국 진출, 스웨덴 30여 지역에 1,000명의 종업원을 두고 있음.

◦ Grant Thornton

전화번호	(+46) 8 563 070 00
주소	Kungsgatan 57, Box 7623, 103 94 Stockholm, Sweden
홈페이지	https://www.grantthornton.se
이메일	info@se.gt.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해당사항 없음
비고	스웨덴에서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회계법인 중 하나

〈자료원 : KOTRA 스톡홀름 무역관〉

5. 외환

가. 외환제도

외환 제도 개요

스웨덴은 1945년부터 적용하던 고정환율제를 1993년 변동환율제로 전환했다. EU 회원국이지만 Euro system 일원이 아니므로 외환관리는 유럽중앙은행이 아닌 스웨덴 중앙은행(www.riksbanken.se)에서 직접 관리 감독한다.

1) 외환 관리

외환관리는 스웨덴 중앙은행이 총괄하나 실제 업무는 시중 은행에 위임하며 중앙은행은 금융기관들의 외환 업무를 총괄 감독할 뿐이다. 실제적인 외환거래는 시중은행 및 금융기관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외환 매입은 수입에 따른 충분한 근거가 있거나 청구서가 첨부되면 자유롭게 매입할 수 있고, 국제외환 시장에 상장된 통화(USD, EUR, GBP, NOK 등)로 대금결제가 가능하다.

2) 현지 금융 조달 여건

거래 은행과 안정적인 거래 관계가 있고 자금 용도 및 상환 계획이 확실하면 일반적으로 융자는 가능하다. 외국 회사가 스웨덴에서 법인 등 법적 권리를 가진 조직을 운영하는 경우, 자금 조달 방법은 스웨덴 회사와 똑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정부에서 편딩을 받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도 스웨덴 은행과 같은 절차를 밟으면 된다. 스웨덴 은행으로부터 대출은 다른 선진국처럼 매우 자유로우며 대출방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자산이 있을 때는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자산이 없을 때는 모기업 또는 제2자의 지급보증으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스웨덴의 경우 금리(기준금리 0.25%, 2022.5월기준)가 낮은 대신 다양한 금융상품(팩토링 등) 거래가 매우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자동차를 비롯한 각종 사무용품의 리스, 물품 등을 할부로 구입할 수 있으며, 그 외 개인 간의 거래에 팩토링 회사를 이용할 수도 있다. 스웨덴의 주요 은행으로는 SEB(www.seb.se), NORDEA(www.nordea.se), Handelsbanken (www.handelsbanken.se), Swedbank(www.swedbank.se) 등이 있다. 다른 EU 국가나 EEA 은행은 EU법에 기반을 둔 EU Financial Passport에 따라 스웨덴에서 영업할 수 있다. 아직 한국은행 중 스웨덴에 진출한 은행은 없다.

외환 규제

원칙적으로 외화 자금의 반·출입이 자유로우며 특별한 규제는 없다. 다만 은행을 통해 10만 크로나 이상의 자금을 외국으로 송금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입금될 경우 거래 은행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거래 은행은 신고된 사항을 중앙은행에 통보해야 한다.

스웨덴 내 직접 투자는 중앙은행 허가 사항이었으나 1989년 7월 1일부터 완전 자유화됐으며, 외자 도입 시에도 금액, 기간, 목적에 대한 제한이 완전히 해제됐다. 외국인 및 해외직접투자, 기업들의 해외 자금조달, 기업들의 해외자본 및 투자 이익, 모기업과 자회사 간 거래, 수출입, 무역 거래, 중업원 임금, 포트폴리오 투자 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규제가 없으며, 다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별도로 외환 거래를 할 경우에는 당사자(개인 및 기업)가 직접 스웨덴 중앙은행에 외환거래 내역을 통보해야 하는데, 이는 통계상의 목적이지만 별도의 규제를 하기 위함은 아니다.

과실송금 보장 제도에 대한 제한도 없으며, 주식 배당금 송금 시에는 원천세를 징수한다. 법인 혹은 지사에 투자된 자본의 본국 송금에 대한 외환 규제는 없으며 재화 혹은 서비스의 구입 및 판매, 이자, 로열티, 배당금 및 기술 자문료를 포함해 소득의 본국 송금에 대한 규제 또한 없다.

국제연합이나 유럽연합의 정치적 제재를 받는 국가와의 거래는 금지되고 있다.

최근 들어 검은돈 세탁 및 테러 자금 반·출입을 막기 위한 조치가 강화되면서 스웨덴 은행은 한국을 비롯한 88개국과의 외환거래만 가능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개인의 외환 거래 시에도 계좌주 관련 정보, 송금내용 및 용도, 연간 송금예상금액, 납세 국가 및 돈세탁 및 테러 자금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자세한 정보 등을 요구하는 등 외환거래를 강화해가는 추세이다.

6. 노무

가. 임금 수준

기준환율 : 1달러=8.58크로나(2021 연평균환율 기준)

대졸-사무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4,685	고졸-생산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3,554	최저임금 (시간당, 달러)	18.64
비고	스웨덴 통계청이 발표하는 임금수준 통계치는 주로 직업군에 따른 평균 임금이 일반적임. 따라서 대졸-사무직 초임, 고졸-생산직 초임에 대한 자료 확인이 용이치 않아 일반 사무직 평균과 단순 생산직의 평균 임금을 기재함. 사기업의 경우 공기업에 비해 급여수준이 높은 편임. 스웨덴은 다른 나라와 달리 최저임금제도 시스템이 없음. 따라서 위에 기재한 시간당 최저임금은 스웨덴 통계청에서 발표한 직종별 평균 월급 순위 자료를 토대로 최저임금을 추정한 수치임을 참고바람.				

<자료원 : 스웨덴 통계청, 스웨덴 경영자협회, 스웨덴 일반노조 LO>

나. 노무관리

고용계약

스웨덴에서는 고용주가 고용인을 위해 의무적으로 각 고용인 보수의 31.42%에 해당하는 고용주세(사회보장 보험료 포함)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용인 대부분은 기술별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회원이다. 따라서 일정 분야의 기업 피고용인들은 여러 개의 노동조합원이 될 수도 있다.

노동조합의 회원 가입은 의무는 아니지만, 회원들이 비회원과의 근무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필수적인 경우가 많다. 노동조합 간의 경쟁이 존재하기 때문에 고용주와 합의해 특정 조합의 회원만을 고용하기도 한다. 노사의 총체적 합의는 그 회사가 속한 고용주 단체와 관계되는 노동조합 간에 2년, 3년, 4년마다 이루어지며, 여기서 임금, 근로 조건 및 기타 노사 관계 문제를 협의하게 된다. 협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스웨덴 고용주 연합과 노동조합 사이의 교섭이 이루어지게 되며, 필요할 경우 공식 중재자를 두기도 한다.

스웨덴은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구조이며 전반적인 노동자들의 임금 및 근무 조건이 개별 기업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산(産)별 노조가 형성돼 있으며, 노조 조직률 및 근로자들의 노조 참여율도 매우 높다. 스웨덴의 경우 직종에 따라 전국노조에 가입하거나 지역 노조에 가입하고 있으며, 노조원은 노조에 회비를 납부하고, 부당행위를 당하는 경우 처리를 의뢰하고 있다.

전국노조 아래에는 단위별 직종 노조가 결성돼 임금협상은 정-사-노에서 가이드 라인을 합의하고 실질적인 임금협상은 단위 노조별로 하고 있다. 최하위의 직장별 개별 노조는 거의 유명무실하고 단체행동은 단위별 직종 노조별로 수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 고용자의 약 83%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다.

고용주세는 31.42%이며, 고용자가 지불하는 소득세는 지방자치 세금 형태로 지불하게 되므로 거주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나며 보통 26~35%의 소득세를 지불하게 된다.

○ 노동법

고용안정법(Acts on Employment Security)을 비롯한 다수의 노동 관련법은 노동 시장, 노동 환경, 고용자들의 결정 과정에의 참여 등을 조절하고 있다. 한편 2001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고용 안정법이 적용되고 있다. 그동안 조업 단축 시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용됐던 해고 순서 관련법(고용법 1982:80, 22§)은 근로자를 감원하는 순서에서 반드시 나중에 채용한 근로자를 먼저 해고하게 돼 왔다. 그러나

2001년 개정된 법안에 따라 최대 10명의 종업원을 둔 고용주는 조업 단축 시 근로자를 감원하는 데 있어서 최대 2명까지 해고 순서 관련 법에서 예외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즉, 고용주가 근로자를 특별히 회사에 필요한 자원이라고 인정할 경우 회사 형편상 감원이 불가피할 때도 감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스웨덴 정부는 최근 15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고용분쟁발생 시 그동안 해결 시점까지 고용인의 고용조건과 급여를 유지하던 것을 없애는 개정법안을 통과시켰고, 조업단축시 고용인을 해고할 경우 적용했던 해고순서 관련법 예외인원도 2명에서 5명으로 확대한 개정안도 2021년부터 발효되었다.

근로시간

법정 근무 시간은 주당 최대 40시간을 넘지 못하게 돼 있으며 평균근로시간은 36시간/주이다. 휴일 및 시간외근무수당은 평일의 2배를 지급한다.

초과근무를 시키기 위해서는 사전 통보가 필요하며 불시 초과근무 요구 시에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직종에 따라 다르나 근로자의 연간 시간 외 근무 및 휴일근무 시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뒤따르고 있어 현지영업 및 현지 투자 시에는 이를 잘 점검해야 한다. 그러나 세일즈 및 일반사무직의 경우 해당 업무에 따라 별도의 신고 없이 알아서 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휴가

연간 최소 법정 유급 휴가는 5주일(근무 일수로 25일간)이다.

해고

고용안정법(Acts on Employment Security)을 비롯한 다수의 노동 관련법은 노동 시장, 노동 환경, 고용자들의 결정 과정에의 참여 등을 조절하고 있다. 그동안 조업 단축 시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용됐던 해고 순서 관련법(고용법 1982:80, 22§)은 근로자를 감원하는 순서에서 반드시 나중에 채용한 근로자를 먼저 해고하게 돼 왔다.

그러나 2001년 개정된 법안에 따라 최대 10명의 종업원을 둔 고용주는 조업 단축 시 근로자를 감원하는 데 있어서 최대 2명까지 해고 순서 관련법에서 예외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즉, 고용주가 근로자를 특별히 회사에 필요한 자원이라고 인정할 경우 회사 형편상 감원이 불가피할 때도 감원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스웨덴 정부는 최근 15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고용분쟁발생 시 그동안 해결 시점까지 고용인의 고용조건과 급여를 유지하던 것을 없애고, 조업단축 시 고용인을 해고할 경우 적용했던 해고순서 관련법 예외인원도 2명에서 5명으로 확대한 개정안을 통과시켜 2021년 발효되었다.

퇴직금

스웨덴에선 퇴직금 지급 관련 법이 존재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이 재량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실업수당

노동조합 가입자가 실직시, 국가에서 지급하는 기본 실업수당 이외 조합내 규정에 따라 경력 공백기간 동안 일정수준의 실업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다. 사회보장세

건강보험

기업(고용주)이 부담하는 고용주세에 건강보험 3.55%가 포함된다.

고용보험

○ 사회보장 보험료

스웨덴에서는 고용주가 고용인을 위해 의무적으로 각 고용인 보수의 31.42%에 해당하는 고용주세(사회보장 보험료 포함)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스웨덴 진출 우리 기업도 스웨덴 고용인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본사 파견 한국인 직원에 대해서도 보수의 31.42%에 해당하는 사회보장 보험료를 납부해 왔다. 그러다 2013년 9월 9일 요란 해그룬드 스웨덴 보건복지부 장관 방한을 계기로 한국과 스웨덴이 양국 사회보장협정에 서명함으로써 2015.6.1일부로 발효, 본사파견 직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이중 납부가 면제되었다.

- 연금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 한국 고용주는 한국에서 스웨덴으로 파견된 근로자(2년 미만)에 대해 한국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스웨덴 사회보험청에 사회보장세를 이중으로 납부하고 있었다. 협정 발효로 한국 고용주는 스웨덴 사회보험청에 납부하는 사회보장세(근로자 임금의 31.42%) 중 소득기초 노령연금, 유족연금 등 연금 관련 항목은 면제받을 수 있다.

보험료를 납부한 외국인은 국민 기본연금 수급권이 있으나, 실제로 기본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스웨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연금 수급권 획득 이후 외국으로 영구 이주하는 자에게는 기본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한다. 한편 3년 이상 사회보장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추가연금 수급권을 획득하게 되는데, 외국으로 영구 이주하는 경우에도 동 추가 연금은 지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상사 지사의 본사 파견 직원은 보통 4~5년 후 주재국을 떠나게 되므로 추후 추가 연금은 받을 수 있으나, 기본연금은 받을 수 없다.

산재보험

기업(고용주)이 부담하는 고용주세 31.42%에 산재보험은 0.2%가 들어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국가 기본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으로 구성된 피라미드 형태로 퍼스널넘버가 있는 경우 국가에서 지급하는 기본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업연금은 고용주가 고용인들을 위해 개별적으로 적립해주는 형태로 이럴 경우 정부에서는 해당 금액만큼 고용주세에서 감면해준다. 개인연금은 개개인이 별도로 적립한다.

7. 세무

가. 조세제도

법인세

◦ 법인세

법인세는 이익 규모와 관계없이 20.6%로 일정하다. 법인세는 전 세계에서 발생한 총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며, 면세 항목과 감가상각비는 제외한다. 스웨덴에 주재하는 기업의 경우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도 과세되지만, 비거주 기업은 스웨덴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해서 과세된다. 모든 스웨덴 기업을 포함한 과세 가능한 영구 설립기관(예: 지사)을 둔 비거주 외국 기업은 세무 기간마다 납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면 회계 연도가 4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인 법인은 늦어도 이듬해 4월 30일까지 납세신고를 끝내야 하고, 회계 연도가 1월 1일과 3월 31일 사이에 끝나는 법인은 당해 5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보통 납세 신고서 제출은 6월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고 그 이상의 연장도 가능하지만, 연장 사유가 구체적이고 정당해야 한다. 또한, 납세 신고서와 함께 일반적으로 감사를 거친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납세 신고서를 경영진의 결제를 받고 제출하기 전에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자문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세금의 부과는 기업이 제출한 납세 신고서를 근거로 현지 세무 당국이 실시하며 납세자는 세금 부과 이전에 서면 혹은 구두로 세금 액수의 변동을 가져올 사유를 표시할 수 있다. 결정이 이루어지면 결정에 대한 이유를 밝히며, 항소할 수 있는 권한이 납세자에게 있음을 알린다. 납세자가 올바르게 납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납세 신고서의 정보가 미흡할 경우 세무 당국은 추정치 혹은 임의로 세금을 부과한다.

만약 과다하게 세금이 부과됐다고 판단할 경우, 세금 부과서를 받은 날로부터 4주 이내에 시 세무위원회(Municipal Tax Board)에 서면으로 항소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사건을 재심사해 세금을 새로이 부과한다. 그럼에도 위원회의 재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경우 4주 이내에 서면으로 다시 지자체 세금심의위원회(Municipal Tax Council)로 항소할 수 있으며, 지자체 세금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기 어려울 때는 8주 이내에 국세청(Skatteverket)에 항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는 직접 출두하거나 회계사 혹은 변호사를 대신 선임할 수 있다. 그 이후의 항소 절차는 세무 당국이나 납세자의 항소에 따라 6개월 이내에 고등법원(High Court)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대법원으로 이어지게 된다. 법원 내에서의 항소는 이따금 회계사들의 지원을 받고 변호사들에 의해 처리된다.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세무 연도 5년이 지나기 전에 부과 금액에 대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세무 당국은 재심사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여길 시에 수용할 수 있다. 만약 세무 당국이 수용하지 않으면 납세자는 법원으로 항소할 수 있다.

◦ 외국 기업에 대한 조세

외국 기업 및 지사도 법인세 등은 동일하게 납부해야 하며, 간접세도 마찬가지이다. 과실 송금보장제도에는 제한이 없으며, 주식 배당금 송금 시 원천세를 징수한다. 세제를 보면, 군수 산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등하게 대우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스웨덴 기업과 외국 기업의 차별이 없다.

이중과세 방지 협정의 조항에 따라 지사의 이윤 중 법인세가 부과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다.

- 지사에 의해 직간접으로 발생한 모든 거래 소득과 지사를 위한 자산 혹은 소유권으로 발생한 소득
- 또한 재화의 구입, 광고 및 기타 보조 활동을 위한 사무실이나 고정된 장소는 납세 의무가 없으며 지사의 본사로의 이윤 송금에 대한 원천징수세나 기타 세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 조세 협정에 의해 일반적으로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원천 징수된 금액과 조세 협정에 의한 세율 차이의 환급을 위해서는 세무 당국으로 서면 제출이 필요하며, 세무 당국은 외국인 주주에게 해당 금액을 환급해야 한다.
- 원천징수세는 확정 세액으로서 다른 원천의 손실로 감소할 수 없다. 외국인 주주들도 이중과세 방지 조약 체결국에 해당하면 거주자 회사의 공개된 배당금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인소득세

스웨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개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스웨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스웨덴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개인 소득세를 납부한다.

개인소득세의 경우 기본 과세로 지방세(평균 31.56%) 및 일정 소득수준 이상 소득자에 따른 내국세를 추가(20% 추가)한다. 기존에는 내국세가 20%와 25% 등 두 가지 있었으나 관련법 개정으로 2020년 1월부터 25% 내국세는 없어졌다. 연간 소득이 52만 3,200SEK(약 5만 6,800달러) 이하 소득자는 지방세만 부과하게 돼 있다. 개인 소득세는 각 자치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28% 선부터 시작되며 누진 세율이 적용된다. 지방세는 거주지 지자체가 징수한다.

그동안 일부 외국기업의 경우 고용주가 아닌 고용인 개개인이 국세청에 자신의 소득을 신고하고 개인소득세를 자진납부하던 시스템을 개정, 2021년 1월부터는 모든 외국기업도 스웨덴 기업과 마찬가지로 고용주가 급여 지급 시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한편, 자본 이자(capital interest), 자본 이득(capital gains), 배당금에 따른 순소득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30%의 개인 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자본 손실에 대해서는 손실분의 100%까지 향후 발생하는 자본 이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식료품 12%, 서적·신문류 6%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25% 이다.

특별소비세

개인과 기업이 사용하는 일부 제품에 간접세인 특별소비세를 부과한다. 개인에게 적용되는 특별소비세는 알코올세와 담뱃세가 있다. 알코올세는 술 종류와 알코올 도수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담뱃세는 일반 담배와 궐련 담배, 스누스라고 불리는 잎담배를 구분하여 각각 차등 세율을 적용한다. 기업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로는 알코올세, 담뱃세, 에너지세(자동차용, 난방용), 살충제세, 화학물질세, 천연 자갈세, 광고세, 복권 및 게임세, 항공세 등이 있다.

품목별 특별소비세는 아래와 같다.

- 알코올세
 - 맥주 : 2.8% 이상 (2.02 SEK/리터, 부피 기준 알코올 비율)
 - 예) 알코올 도수가 5%인 맥주 200리터에 대한 세금 계산 방법 : 200리터 x 5.0(%) x 리터당 SEK 2.02 = SEK 2,020
 - 와인 : 2.25% 이상 4.5% 이하 (9.19 SEK/리터)
 - 15% 이상 18% 이하 (54.79SEK/리터)
- 담배세
 - 일반담배 : 1.64 SEK/개 +소비자가가격의 1%
 - 궐련형담배 : 1.44 SEK/개
 - 스누스(입담배) : 468 SEK/kg
- 광고세 : 7.65% (2021년 기준), 2022년부터 광고세 폐지
- 쓰레기세 : 573 SEK/톤
 - 국소량의 쓰레기 배출 시, 저울 고장 등으로 무게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 기타 특정한 기준에 해당될 시 폐기물의 부피를 무게로 변환하여 세금 부과
 - 폐기물 유형에 따라 부피->무게 변환 기준이 다름
- 살충제세 : 34 SEK/kg
- 복권, 경마 등 오락세 : 2,000SEK/데스크 , 라이선스 대상인 오락의 경우 수익의 18%
- 가전제품 등 전자제품의 화학물질세
 - 백색가전 : 11 SEK/kg

- 기타 전자제품 : 166 SEK/kg, 단 제품당 최대 457 SEK
- o 항공세 : 국내, 유럽국 내, 기타국에 따라 차등(64 SEK/265 SEK/424 SEK)

품목별 특별소비세율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다(스웨덴어)

<https://www.skatteverket.se/>

8.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스웨덴은 국내 개별법에 따라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물, 영업비밀, 반도체배치설계, 식물품종, 컴퓨터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 등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실용신안 제도는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특허권은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되고 제외 유형에 속하지 않는 발명에 대해 인정되고,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된다. 디자인권은 신규성이 있고 독창성이 인정된 제품이나 장식의 선, 윤곽, 색상, 모양, 질감 또는 재료의 특성에서 파생된 제품 전체 또는 일부의 모양에 대해 인정되고, 보호기간은 5년이나 최대 25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스웨덴은 헤이그 협약에 가입되어 있다.

상표권은 식별력이 인정되고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출원일로부터 10년간 보호되며, 갱신이 가능하다. 저작권은 별도 등록절차 없이 저작물의 창작이 완료된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저작권자의 사후 70년까지 보호된다.

스웨덴 법에 따라 등록이 필요한 지식재산권은 스웨덴 특허등록청(Patent och Registrerings Verket, 이하 'PRV'라고 함)에 개별 출원 및 등록을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내 기업들의 경우 현실적으로 EU 차원의 보호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시간적, 경제적 측면에서 더 유용하다.

스웨덴 내 지식재산권 침해소송은 2016년 9월 1일 설립된 전문 지식재산권 법원인 특허 및 시장 법원(The Patent and Market Court)에 관할이 있고 항소는 특허 및 시장 항소법원(The Patent and Market Court of Appeal)에서 이루어진다.

한편, 스웨덴은 EU 회원국으로, 개별국 등록출원 이외에도 EPO(유럽특허청) 및 EUIPO (유럽연합지식재산청)를 통한 특허 및 상표디자인 등록출원으로 EU 가입국 내에서 보호받도록 할 수 있다.

(자료원 : 스웨덴 특허등록청, 유럽특허청, 유럽연합지식재산청)

9. 청산 및 철수

청산 및 철수

1) 개요

법인은 현지에서 법적으로 독립된 하나의 회사이기 때문에 해당 국가 내의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게 돼 있다. 따라서 스웨덴 회사등록청에 철수신고만을 하는 지사와는 달리, 법인 철수 및 청산은 매우 까다로운 편이다. 법인 철수 및 청산 시에는 설립 때와 마찬가지로 스웨덴 회사등록청(Swedish Companies Registration Office)에 직접 신고하게 돼 있다.

2) 법인 청산절차

자본소유주/법인소유주들은 주주총회에서 어떤 형태로 기업을 청산할 것인지 합의해야 하고, 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정리해 법인을 해산시킬 수 있는 청산인을 임명해야 한다. 한편 법인 철수 시에는 법인 철수 및 청산 이유로 회사정리, 주식회사의 모든 주식 매각, 기업합병, 기업분할, 파산 등 다섯 가지 항목 중 한 가지 해당 항목을 적어 보고하게 돼 있으며, 법인의 철수 및 청산절차가 종결될 때까지는 매년 기업 연차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기업청산 소요시간은 보통 2년 정도가 소요되며 채권회수율은 76.6%로 알려졌다. 법인 철수 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고용인 처리문제로서 관련 노조 및 이사회와의 사전 조율은 물론, 고용인의 재취업을 위한 계획서가 선결돼야 가능하다.

○ 청산신고

- 주주총회에서 청산결정이 내려지는 즉시 청산인은 청산 결정사실을 스웨덴 회사등록청에 신고해야 한다.
- 청산신고서는 서류를 작성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며, 온라인 상으로 접수할 수가 없다.
- 청산인은 이사회 또는 대표 등 최소 1인이 맡으며 법인, 미성년자, 파산자, 영업정지 중인 개인, 후견인의 보호 아래 있는 개인, 법적 권리가 제한된 개인은 청산인이 될 수 없다.
- 신청서 : 법인 청산신청서 No.832 (Frivillig Likvidation, nr 832)
- 구비서류 : 청산결정을 내린 주주총회 의사록, 법인 청산이유서, 기업 연차보고, 고용인의 재취업을 위한 계획서 등
- 수수료 : 1,100크로나(2021년과 동일)
- *법인 청산신청서는 회사등록청 홈페이지(www.bolagsverket.se)에서 다운로드 가능

<https://bolagsverket.se/ff/foretagsformer/aktiebolag/avveckla/likvidation/frivilliglikvidation-1.8189>(법인 청산신청서)

3) 지사 청산절차

지사는 법인과 달리 청산절차가 간단한 편이다. 지사의 청산이 결정되면 회사등록증과 함께 지사 청산신청서를 스웨덴 회사등록청에 송부하며, 이때 해당연도의 회계보고서를 함께 보낸다

○ 청산신고

- 신청서 : 지사 청산신청서 No.889 (Deregistration, No. 889)
- 구비서류 : 회사등록증, 회계보고서
- 수수료 : 없음
- *지사 청산신청서는 회사등록청 홈페이지(www.bolagsverket.se)에서 다운로드 가능

https://bolagsverket.se/polopoly_fs/1.3737!/Menu/general/column-content/pdfFile/889e.pdf(지사 청산신청서)

4) 관련 법령

법인의 철수 및 청산 시 고용인 보호를 위해 적용되는 주요 법령으로는 MBL(노동법)과 LAS(고용보호법)가 있으며, 관련 내용은 국회, 산업고용인협회(www.industriarbetsgivarna.se)와 스웨덴 회사등록청(www.bolagsverket.se)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관련법

- 노동법 1976:580(MBL, Employment Act)
- 고용보호법 1982:80(LAS, Law on Employment Protection)

(자료원 : 스웨덴 회사등록청)

IV. 참고정보

1. 시장특성

가. 시장 특성

소비인구

1,046만 명의 인구를 가진 스웨덴은 북유럽 전역에서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진 시장으로 2021년 기준 전체 연간 수출 규모는 약 2,207억 달러, 수입 규모는 약 1,915억 달러이며, 대한 수출 규모는 약 20억 4,700만 달러, 수입 규모는 약 15억 2,000만 달러 규모이다. 소비재 및 산업재의 높은 해외 의존도 때문에 외국과의 교역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며 외국 제품에 대해서도 품질과 가격만 괜찮다면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자료원 : 스웨덴 통계청, IMF, KOTIS〉

소비 성향

안정된 수입과 잘 발달한 사회보장제도로 인해 높은 품질의 내구성이 좋은 제품을 선호하며, 자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매우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시장은 부가가치가 높은 내구재 시장과 일반 소비재 시장으로 구분되는데 내구성 제품에 대해서는 유명 브랜드나 자국산 제품에 대해 강한 애착이 있으며, 높은 품질 수준과 적극적인 A/S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소비재 제품에 대해서는 가격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품질과 가격을 철저히 비교한다. 철저히 신용을 바탕으로 하는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구매 후 자유로운 반품, 교환 등 소비자에 대한 보호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높은 품질 수준을 요구하고 있으며 납기도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다.

스웨덴인은 매우 실용적으로 유명한 브랜드 제품이라고 무조건 좋아하지 않고 품질만 좋으면 브랜드를 그다지 따지지 않는다. 하지만 새로운 상품에 대한 관심은 낮은 편이어서, 기존에 이미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에 대해서는 충성도가 있지만 잘 알지 못하는 브랜드에 대해서는 경계심이 있는 편이다. 특히 자국 브랜드에 대한 강한 선호 경향이 있다.

한편, 코로나19 이후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비중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디지털 마케팅의 범위와 규모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또한 최근 기후문제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비건, 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뚜렷히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모든 연령대와 제품군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원료, 포장재, 생산 과정에서의 지속가능성 여부가 구매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스웨덴 비즈니스 특성으로는 보수성과 정확성을 들 수 있는데, 지난 1995년 EU에 가입했지만 아직 유로화를 쓰지 않는 신중함을 보이고 있다. 한 번 제품 이미지가 나빠진 업체는 또다시 스웨덴 시장에 발을 들여놓기가 쉽지 않은데 이는 시장 규모가 크지 않아 동종업계 종사자 간 정보공유가 빠르기 때문이다.

한편 최근 새롭게 나타난 트렌드로 ESG 경영 중시경향을 들 수 있다.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통칭하는 것으로 많은 스웨덴 글로벌기업들이 잇따라 ESG경영을 선언하면서 협력업체 전체로 ESG 경영기조가 확산되고 있다. 이같은 기업의 선제적 움직임에 보조를 맞춰 스웨덴은 국가차원에서도 제도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스웨덴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이 신경써야 할 부분이다.

스웨덴인들은 매우 보수적이어서 처음 사귀기는 힘이 들지만 한 번 사귀면 평생을 간다는 말이 있다. 비즈니스 세계에 있어서도 한 번 거래 관계가 성립되면 거래처를 잘 바꾸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오랜 기간 지속된 사회주의 체제에 익숙한 관계로 일반적으로 위험을

감수하는 '리스크 테이킹'(Risk Taking)을 꺼리는 경향이 높다. 따라서 스웨덴 시장을 뚫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접근하는 동시에 가격은 충분히 받는 대신 장기적인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탕주의(Spot Business)가 절대로 통하지 않는 시장임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 상품 이미지

품질이 좋고 값이 싼 한국산 타이어, 양말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이미 오래 전 부터이고 최근에는 가격 대비 품질이 좋고 개런티 기간이 7년으로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승용차, 디자인이 좋고 성능이 우수한 휴대폰 및 TV와 백색가전 등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제품이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스웨덴 소비자의 대부분(80% 이상)은 한국이 1960~1980년대를 거쳐 급속도로 공업화됐으며 수출 지향적 경제개발 정책을 시행해 왔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것에 근거해 한국산 제품의 품질이 나쁜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산 제품 품질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막연한 것으로써, 막상 특정 한국산 제품의 상표 및 브랜드명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 소비자가 한국이라는 국가의 존재를 알고 있는 점과 각종 소비재 공급국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대스웨덴 접근 정책에 시사점을 준다.

한편 수입상, 도매상 등 업계 관계자들은 소비자들과 다른 인식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한국 상품의 기술 수준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고 있다. 이들의 한국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는 소비자들보다는 높았으나 삼성, LG, 대우, 현대, 기아 등 대기업 위주의 몇몇 브랜드를 거론하는 정도이며 우리 상표들에 대한 인지도도 일본산, 유럽산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한류 콘텐츠의 확산으로 한국 화장품과 식품의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으나, 그 외 분야에서는 아직 한류의 영향은 미미한 편이다.

2. 비즈니스 에티켓

가. 상거래 유의사항

상거래 시 유의사항

1) 일반

스웨덴은 자유경쟁원칙에 충실한 시장으로 판매자와 구매자가 자신들의 이익을 쫓아 자유의사에 따라 활동하는 시장이다. 스웨덴은 1인당 GDP가 60,616달러(2021 기준)가 넘는 선진국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일반적인 선입견을 가질 수 있으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바이어들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유리하다.

첫째, 바이어들이 높은 품질과 우수한 디자인 감각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포장 및 딜리버리 등 제반 분야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 처음 진출하는 업체들에게는 다소 까다로운 상대로 비치기도 한다. 둘째, 스웨덴이 비교적 운택한 나라이므로 우수한 제품이면 무조건 다 잘 팔린다는 선입견은 잘못된 것이다. 스웨덴 바이어들은 가격에 민감한 편이며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어느 정도의 가격이면 구입할 수 있는지 등에 길들여져 있다. 셋째, 해외 생산공장과 거래기업의 윤리경영과 규모도 매우 중요시하여 품질 및 가격뿐만 아니라 잠재공급자의 CSR이나 평판도 공급업체 선정 시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다.

2) 바이어와의 연락

일반적으로 바이어와 연락을 취할 때는 일반 우편, e-mail, 팩스를 이용한다. 팩스는 종종 담당자에게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며, 전화는 초기에 담당자를 찾을 때나 연락이 한 두 번 오고 간 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잘 모르는 업체로부터의 전화 연락은 반감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메일을 보낼 때는 한국어가 들어가지 않도록 혹은 스팸 메일로 취급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ActiveX 등 별도의 다운로드를 요하는 메일도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다. 또한, hotmail 등 개인 메일보다는 회사 메일 계정을 통해 메일을 보내는 것이 전문적으로 보일 수 있다. 스웨덴이 선진국이긴 하나 한국보다 인터넷 속도사정이 나쁘므로 10메가바이트 이상의 파일을 첨부할 경우 바이어가 수신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용량이 큰 파일을 전송한 경우에는 반드시 수신 여부를 별도 확인해야 한다.

바이어에게 연락을 취할 때는 다음의 사항들을 명확히 해야 한다.

- 연락을 취하는 목적
- 업체 및 제품에 대한 소개: 영문 홈페이지가 있을 경우 효과적이며 일반적인 소개나 스팸성 메일보다는 해당 업체에 맞춤형 내용이 필요
- 한국 업체 담당자의 주소, 전화, 팩스 등 연락처

바이어와의 연락 시에는 구매 수량에 따른 가격 차이 등 일반적인 거래 가격 수준을 포함하는 것이 좋으며 가격 수준을 처음부터 너무 높게 제시하기보다는 초기에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제시하고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한데, 스웨덴 바이어들은 처음에 제시된 가격에 따라 거래 가능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또한, 협상을 위한 가격 폭은 10% 내에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제 방법은 신축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 초기 거래 때에는 바이어에 대해 신뢰가 부족하므로 L/C 베이스로 거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신뢰가 구축되면 바이어의 입장에서 거래 조건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L/C 개설에는 은행 수수료가 많이 들고, 목돈이 잠기기 때문에 L/C 조건의 거래를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의 스웨덴 바이어들은 초기에 소량 주문을 통해 시장성 테스트, 품질 및 납기 기한 이행 여부 등 기본 요소들을 점검하고 신뢰가 쌓이면 거래 규모를 늘려가기 때문에 초기의 소량 주문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구매 절차는 일반적으로 초기 접촉 → 테스트 및 거래에 대한 협상 단계 → 테스트를 위한 소량 주문 → 신뢰 구축 단계 → 대량 주문의 단

계를 거치게 되는데 통상 초기 접촉부터 거래가 성사될 때까지는 1년 이상이 소요된다. 비즈니스 미팅 시에는 상대방의 의견을 관심 있게 청취하며 상담 중 바로 대답을 해줄 수 없는 경우에는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책을 함께 찾아보는 것이 좋다.

3)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스웨덴의 경우 제품이 복잡하지 않고, 물량이 매우 크지 않은 경우는 쌍방 간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거래 조건만 합의되면 거래를 하게 된다. 그러나 독점 판매권을 부여할 경우는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경우는 아래 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먼저 독점 판매 지역과 관련해 스웨덴 바이어는 덴마크, 노르웨이 등 스칸디나비아 3개국을 하나의 상권으로 생각하고 스칸디나비아 국가 전체의 독점 에이전트 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덴마크나 노르웨이에 특별한 바이어가 없는 경우 이렇게 해도 무방하나 가능하면 거래를 일단 한번 해보고 독점권을 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독점권을 주기로 한 경우라 하더라도 바이어가 독점 판매권만 보유하고 마케팅을 잘못할 경우 다른 좋은 바이어가 나타나도 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연간 최소 주문 수량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 그리고 능력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독점 판매 권한의 기한을 너무 길게 설정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1년 정도로 설정하고 만족할 경우 갱신하는 형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금 결제, 운송, 품질 조건 등 의무와 권리가 수반되는 조항은 가능한 한 명확하게 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구실을 주지 말아야 한다.

분쟁 해결 조항에서는 분쟁을 우호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이것이 실패했을 때 가능한 스웨덴 상사 중재 기관이나 스웨덴 법원의 판정보다는 대한 상사 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는 국제 상사 중재원의 판정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계약서는 비용이 들더라도 법률 지식이 풍부한 전문인의 법률 자문을 받아 계약서에 불리한 조항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다.

4) 결제조건

지불조건은 거래기간 및 바이어 규모 등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중소기업 바이어의 경우, 대부분 첫 거래는 선불로 진행하는데 Proforma Invoice 에 바이어가 서명하고 송금한 후, 우리 국내수출기업들이 제품제작 또는 선적(재고가 있을 경우)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단, 글로벌 수준의 바이어들은 지불조건을 바이어에게 유리하게 진행하는 편이다. 스웨덴기업들은 L/C 개통을 하지 않는 편으로 일반적으로 지급수단으로 L/C 보다는 Cash 선호. 선적 시 80%, 제품도착 후 20%를 지불한다. 참고로 스웨덴 기업 간에는 인보이스 발행일로부터 30일 이후 지불이 일반적이나, 대기업 고객일 경우에는 지급기일이 60일, 최대 90일이다.

한편, 스웨덴으로 샘플송부 시, 우체국 EMS서비스 보다 DHL서비스 이용을 권장한다. 최근 스웨덴 우편시스템에 문제가 많아 우리업체들이 EMS로 샘플을 송부할 경우, 통관 및 적기접수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비용이 조금 비싸더라도 DHL의 DDP 서비스를 이용하면 수화물이 스웨덴에 도착 후 통관 중 관세가 발생하더라도 스웨덴 DHL사가 선 처리하기 때문에 원활한 배송이 이루어져 수취인 입장에서 훨씬 편리하다.

5) GDPR

GDPR은 기존의 유럽 개인정보보호지침(Directive 95/46/EC)를 강화한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법으로 2018년 5월 25일 발효되었다. 개인정보 보호체제를 확립하고 통합된 EU 디지털 시장 창출을 위해 도입된 동 법안은 단기적으로는 장벽(기업활동에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신뢰도 향상과 기업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EU 역내 투자기업 및 EU 거주민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며, EU 주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한국기업도 적용대상인 만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GDPR이 수출입에 직접 관련된 사항은 아니지만, EU 파트너와의 교신 등에 있어 자칫 문제 상황으로 발전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6) 상표권 분쟁

우리 제품의 경쟁력 향상으로 중소기업제품의 스웨덴 수출이 증가하면서 상표권 분쟁도 발생하고 있다. 유압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하는 국내기업 S사는 스웨덴 P사와 오랜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해오다 2009년 해당 부품사업 분야를 P사에 매각했고, P사는 동 사업부서를 별도로 분리하여 S사 로고와 함께 유럽 특허청에 PS사로 등록하고 S사의 브랜드 가치를 이용하여 활발하게 사업을 진행하였다. P사에 부품사업 부서를 매각한 S사는 P사와 관계 정리 후 새로운 비즈니스를 위해 신규 바이어를 발굴, 거래를 개시하려 했으나 P사가 등록된 PS 상표권으로 인해 S사 이름으로는 해당 부품을 유럽에 수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SWT라는 새로운 브랜드와 기업명을 유럽특허청에 등록한 후에야 새로운 비즈니스를 진행할 수 있었다. 상표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시간과 재정적인 손실이 막대한 까닭에 스웨덴시장 진출 시, 사전 스웨덴 특허청이나 유럽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할 것을 권장한다.

7) 무역사기사건

한동안 주춤하던 한국업체 대상 무역 사기가 2018년 말부터 스웨덴에서 다시 나타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주의 필요하다. 특히, 이전과 달리 이메일 해킹으로 업체정보를 빼내 수출입대금을 편취하는 수법이어서 우리 업체가 방심하는 사이 어이없이 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전에는 신뢰사회를 표방한 스웨덴 기업을 사칭하여 한국업체에 접근한 후, 대금만 받고 사라지는 형태였다면, 최근의 수법은 이메일 해킹을 통해 한국업체와 비즈니스 관계에 있는 거래업체 정보를 빼낸 후, 마치 거래업체인 양 한국업체와 이메일을 교신하면서 대금 수취은행을 해커계좌로 바꾸도록 하여 중간에서 돈을 가로채는 수법이므로 바이어의 계좌변경 요청 시 반드시 바이어와 직접 통화하여 확인해야 한다.

무역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 업체들의 대처요령은 하기와 같다.

- 기존 거래업체로부터 갑자기 대금 수취인이나 수취은행 변경을 이메일로 요청받을 경우, 반드시 거래처 담당자와 직접 통화하여 사실관계 확인할 것
 - 수취인 주소와 수취은행 소재지가 다를 경우에는 일단 의심해 볼 것
 - 신규 파트너사의 경우, 회사등록증이나 레퍼런스 서류를 요구하여 실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
- 무료 기업 디렉토리인 www.allabolag.se와 www.hitta.se, 회사등록청 홈페이지(www.bolagsverket.se)에서 확인 가능하다.

나. 상담 유의사항

상담 및 문화적 유의사항

- 스웨덴 사람은 일반적으로 차분하며 논리적이다. 따라서 현지인과 상담 시에는 이를 유의해야 한다. 대화가 논리적이며, 설득력이 있어야 하고 너무 소란스럽지 않고 조용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다. 서두에 다른 이야기를 할 분위기일 때는 날씨, 스웨덴의 전통 행사, 취미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다. 특히 스웨덴인은 대개 2~3개 정도의 취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제는 처음에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데 상당히 유용하다.

-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일반화돼 있지 않다

스웨덴에서는 비즈니스 파트너 간에 서로 선물을 주고받지 않는다. 스웨덴에서는 기업 간 비즈니스의 한 방편으로 선물을 주고받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만일 고가의 선물을 파트너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국세청에 신고하게 돼 있으며, 국세청에서는 이를 뇌물로 간주하여 세금을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미팅시간은 정확히 지켜라

스웨덴인은 시간에 매우 민감하므로 사전 약속된 미팅시간에는 정확히 도착해야 한다. 비록 10분을 늦었다 해도 스웨덴인들은 약속시각에 늦게 나타나는 것에 대해 나쁜 인상을 느끼며, 상대방이 믿을 만하지 못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인다.

- 관계 이전에 물을 중시한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볼 때 어떤 문화에서는 물을 중시하고 또 다른 문화에서는 물 보다는 관계를 더 중시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스웨덴인은 관계보다는 물을 더 중요시한다. 비즈니스 미팅에서는 본론에 앞서 Small Talk(잡담)로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스웨덴 사람들은 미팅 시작과 동시에 바로 비즈니스 사업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경향이 있다. 스웨덴 비즈니스맨은 언제나 비즈니스를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점심을 먹으러 나간 경우에도 주문한 음식이 오기도 전에 구체적인 대화를 전개한다.

- Mr. Mrs, Ms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는다

스웨덴 사람들은 거의 모든 상황에서 악수와 함께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인사를 한다. 비즈니스 상담 시에도 Mr. Mrs. Ms. 등의 호칭은 사용하지 않으므로 스웨덴인이 성이 아닌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그들이 무례하게 행동하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 직급 간 파워차이가 적다

스웨덴 기업은 다른 나라 기업들과 비교하면 명령체계의 고리가 없는 편으로 조직이 상당히 수평적이어서 직급 간 파워차이가 적으며 어떤 직급의 직원이라도 자신의 담당 분야에 대해서는 평등한 의사결정권을 가진다. 그러므로 하위 직급에 있는 사람과 미팅을 하더라도 그들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핵심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고, 회의를 마친 뒤 의사결정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 미팅 시 복장은 비즈니스 캐주얼이 일반적

대부분의 스웨덴 직장에서는 다른 나라보다 격식을 덜 차리는 복장이 일반적으로 옷만 잘 입으면 될 뿐이지 넥타이를 하거나 진한 색 정장을 입을 필요는 없다.

- 비즈니스에서도 여성을 평등하게 대하라.

스웨덴은 남녀 동등사회로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매우 활발하다. 따라서 여성과의 상담 시 남성과 다르게 대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 자기 자랑을 하지 마라.

스웨덴인들은 겸손과 평등을 중시하는 정서가 있으며 이를 대변하는 안테의 법칙(Jantelagen)이 오래전부터 계승되어 오고 있다. 비즈니스 문화도 마찬가지로 과장과 과시는 겸손과 적당함을 미덕으로 삼는 스웨덴인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줄 가능성이 높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 약간 차가워 보이는 대접방식이 관심이 없음을 의미하지 않음

스웨덴 사람들은 개인주의 성향이 짙고 사교성이 다소 떨어지는 편이다. 스웨덴 사람이 웃지 않더라도 그들이 화났거나 비즈니스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므로 오해하지 않는 것이 좋다. 스웨덴 사람은 서로 잘 알게 될 때까지는 등을 치거나 포옹하는 것보다 악수하는 것을 더 편안하게 여긴다.

- 휴대폰이 울리게 하지 마라.

스웨덴 사람도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지만 중요한 미팅자리에서 휴대폰을 마음대로 받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손님과 미팅 중 걸려오는 전화에 반응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으로서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보다 전화를 건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며, 중요한 미팅참석 시에는 휴대폰을 끄는 것이 좋다.

- 스웨덴 방식을 모른다면 자연스럽게 처신해라.

스웨덴 상관습을 잘 이해하고 따를 경우 비즈니스 파트너로부터 점수를 딸 수 있지만 외국인이 완벽하게 스웨덴 상관습을 체득할 수 없다는 사실도 잘 이해하고 있으므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 비즈니스 교신은 유선보다 이메일 선호

스웨덴 바이어들은 비즈니스 교신 시 유선보다는 이메일을 선호하며, 이메일도 간략하게 기재하는 편이다. 따라서 교신하는 우리 기업들도 가능한 간략하게 송부하는 것이 좋다. 우리가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여 송부하더라도 대부분 간략히 한두 줄로 회신하는 것이 일반적

다.

- CSR 중요

스웨덴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 사회적 공헌도(CSR)를 매우 중요시하므로 파트너업체 선정 시 CSR 여부도 꼼꼼히 따지는 편이다. 따라서 자사 소개 시 자사의 CSR 활동을 포함하는 것이 바이어 관심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가끔 우리 기업들이 프레젠테이션할 때 다른 아시아제품들과 비교하며 경쟁사를 비하하는 때도 있는데, 경쟁사를 비하하는 발언은 득보다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업무진행이 느리므로 인내심 필요

스웨덴은 개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회로 '워라벨'이 가능한 문화이나, 우리 기업입장에서 보면 근로자들의 충성도가 한국보다 낮아 업무진행이 느린 편이다. 따라서 빠른 템포로 일하는 우리 방식대로 너무 잦은 접촉으로 바이어를 독촉하기보다는 적당한 주기로 안건을 리마인드 시켜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 미팅은 정직하게

미팅시 바이어들에게 정직한 인상을 주어야 한다. 스웨덴은 시장이 협소하므로 관련 시장 내 소문이 굉장히 빠른 편이다. 다른 바이어와 만났는지를 물을 경우, 경쟁사명까지 굳이 밝힐 필요는 없지만 수출자 입장에서 보자면 많은 바이어와 접촉한 사실은 숨길 필요가 없다.

- 첫 미팅에서 제품 단가를 논의하지는 않음

공급업체 선정 시 가격이 중요하게 작용하기는 하나 가격보다 품질을 우선시하는 문화이므로 통상 첫 미팅에서 제품 단가를 논의하지 않는다. 바이어가 품질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가격을 논의하고 한 두 차례의 가격협상이 있을 수는 있지만 수차례에 걸쳐 가격협상을 반복하지 않는 문화이므로 네고를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가격을 높게 부르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 독점계약 요청에 서두르지 말 것

스웨덴 또는 북유럽시장을 커버하는 독점계약을 요청하는 바이어가 있을 경우 서두르지 말고 관련 바이어들의 영업역량을 비교 확인한 후 선택할 필요가 있다. 해당 기업의 역량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스웨덴이나 북유럽시장 독점권을 줄 경우, 더 좋은 파트너가 나타나도 대응할 방법이 없다.

3. 주요상거래 플랫폼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1) Webhallen(www.webhallen.com) ○ 개요: 비디오 게임의 온라인 판매로 사업을 시작한 Webhallen은 현재 컴퓨터를 비롯, IT 하드웨어, 가전제품, 각종 게임과 비디오를 판매하고 있으며, 스웨덴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중 하나로 성장했다. 2020년에는 스웨덴의 가격비교사이트 PriceRunner가 선정한 ‘Best e-commerce of the year’에 선정됐다. ○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Webhallen은 1999년 설립되었고, 2020년 기준 매출액 24억크로나(약 2.6억불), 고용인원은 160명이다. ○ 주요 판매 품목: 비디오게임, 영화, 컴퓨터 및 주변장비, 컴퓨터 소프트웨어, TV 등 가전제품, 핸드폰, 사운드 시스템, 라우터, 주방기기, 청소기, 바비큐 그릴, 여행가방, 유아용품, 장난감, 가드닝 기기, 덴탈 제품 등을 주로 판매하고 있다. ○ 특징: Webhallen은 비디오 게임에서 주로 이용하는 mimic 시스템(reward system)을 운영, 고객의 구매액이 높아질수록 어카운트 서비스를 레벨 업 해주는 회원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레벨에 따라 배송과 스페셜 오퍼 및 할인 서비스 등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한다. Webhallen에 상품을 주문할 경우 배달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전국 각지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픽업도 가능하다. 2) Dustin (www.dustin.se) ○ 개요: 컴퓨터 주변장비 판매를 시작으로 현재는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핸드폰, 오디오 제품 등으로 상품군을 확대했으며, 최근에는 기업고객 대상 맞춤형 IT솔루션을 판매하고 있다. 현재 북유럽은 물론 네덜란드로도 사업을 확대, 온라인 판매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1984년 설립되었으며, 연 매출 125억 크로나(2019년, 13.5억불)로 연매출액의 약 90%가 기업고객으로부터 발생한다. 현재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등 5개국에 2,300명의 종업원을 두고 있다. ○ 주요 판매 품목: 클라우드 서비스를 포함한 커스터마이징 IT솔루션, 컴퓨터 및 주변장비, TV, 비디오게임, Playstation 5, Xbox One 등 게임 콘솔을 주로 판매하고 있다. ○ 특징: 오프라인 매장없이 온라인 매장만 운영하며, 25만 5천 개의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현재 보유 고객은 약 35만명이며, 중소형 비즈니스에 주력하고 있어 동사 고객의 1인당 평균 소비액은 2,000크로나(약 235불) 내외이다. 3) CDON (www.cdon.se) ○ 개요: 북유럽 최대의 마켓 플레이스로 스포츠용품, 패션용품, 미디어용품, 전자제품 등 다양한 상품 군을 취급한다. CDON Marketplace라는 자체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쉽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셀러들이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손쉽게 올릴 수 있다. 해당 사이트 방문객은 연간 약 1억 명 내외로 알려졌다. ○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1990년 설립되었으며 연매출액은 16억크로나(1.7억 불)이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796백만 크로나(약 86백만 불)로 감소했다. 종업원은 120명이다. ○ 주요 판매 품목: 음반, 비디오, 서적, 비디오게임, 주방용품, 가전제품, 화장품, 가구, 완구, 가드닝 제품, 사무용품, 전기 스쿠터 등을 주로 판매하고 있다. ○ 특징: 안전하고 빠른 온라인 쇼핑을 모토로 주문상품을 집으로 배달해주고 있으며, Gucci, Kartell, Rrstrand, Louis Vuitton 등 프리미엄 브랜드도 취급하고 있다. 4) Zalando (zalando.se) ○ 개요: 독일에서 설립된 유럽 최대 패션 온라인 플랫폼으로 4,500여 브랜드 제품을 23개국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스웨덴 시장은 2012년 진출했다. ○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2008년 독일에서 설립됐으며, 스웨덴에는 2012년 진출했다. 2020년 기준 글로벌 연매출액은 79억유로(약 80억불)이며, 전세계에 14,000명의 종업원이 있다. ○ 주요 판매 품목: 의류, 화장품, 액세서리, 신발, 가방 등을 주로 판매하고 있다. ○ 특징: 소비자가 일정액 이상을 구매할 경우 무료로 배송해주고, 구입 후 100일 이내 환불과 반납이 가능하다. 파트너 프로그램을 이용, 셀러들이 쉽게 액세스하여 셀러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5) Amazon (amazon.se) ○ 개요: Amazon은 미국에서 설립된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아마존 자체 상품 및 셀러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스웨덴 사이트는 2020년 런칭했다. ○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1994년 미국에서 설립되었다. 스웨덴 지사는 2017년 등록을 완료했으나, 스웨덴 사이트 런칭은 2020년 후반에 이루어 졌다. 2020년 기준 아마존의 글로벌 매출액은 3,860억 불이며, 아직 스웨덴 지사의 연매출액은 발표되지 않았다. ○ 주요 판매 품목: 비디오 게임, 서적, 스포츠용품, 완구, 화장품, 의류, 신발, 공구류 등 생활소비재를 주로 판매하고 있다.
---------------------	--

	○ 특징: 아마존 프라임(Amazon Prime)이라는 회원제도를 통해 회원들에게 빠른 무료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프라임데이(Prime Day)라는 할인 판매 이벤트를 통해 대규모 판촉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그 외에도 일정 제품을 짧은 시간 동안 상당히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번개딜(Lightning Deal) 행사를 수시로 진행하고 있어 새로운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선보이고자 하는 판매자들이 동 프로모션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 스웨덴 Amazon은 'Prime' 고객을 비롯, 'Amazon Music', 'Echo' 고객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시장에 진출했지만, 2021년 Amazon Music을 스웨덴 사이트에 런칭하면서 고객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스웨덴 아마존의 무료 배송서비스는 최소 229크로나(27불) 이상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	--

4. 현지 진출 성공사례

가. 성공사례

1) W사의 시장 진출 성공사례

W사는 자동차 조립라인 자동화 설비를 생산하는 업체로 Volvo CC와 1천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다. 유럽 프리미엄 승용차 메이커인 Volvo CC가 신규모델 생산(2016모델)용 시설 개보수 및 확장증설 계획을 수립했고, KOTRA 스톡홀름 무역관의 세부 정보 입수와 W사 네트워크 지원으로 이루어진 결과이다. 당초 Volvo 경영진은 한국산 자동화 설비에 대해 기대 반 우려 반의 인식을 하고 있었으며, 조립라인 설비를 한국에 맡기는 일은 일종의 모험이었으나 현대, 기아차의 성공 저변에는 한국의 자동화 설비 능력이 있었음을 강조하는 한편, W사의 3차에 걸친 스웨덴 방문 및 신속 정확한 소통으로 신뢰확보를 통해 한국의 자동화 기계 설비 능력에 대한 Volvo사 최고경영진 인식을 전환했다.

W사는 '제조-납품-설치'만 하는 경쟁사와 달리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사후처리까지 일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량을 보유하고, 해외 수주 실적, 각종 인증보유, 실무 엔지니어 간 언어소통능력은 물론 불보의 기존 설비라인과 기계조작 프로그램 호환성 등 전 부문에서 신뢰를 확보했으며, 납기, 대금지급조건 등 기술 외적 부문에서도 첫 거래 고객의 수요를 전폭 수용할 능력을 갖췄고, 무엇보다도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 정확한 의사소통이 성공 요인이었다.

현재까지 Volvo와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Volvo사의 권고로 비즈니스 연속성 경영시스템 인증인 ISO 22301인증 취득 절차를 밟고 있다. W사 외에 제3 한국기업도 불보와 거래를 추진했으나, 의사 소통상 문제(신속하지 못한 대응)로 신뢰를 잃어 최종 단계에서 오더를 수주하지 못한 적이 있으므로 첫 거래의 규모가 작더라도 성실한 대응이 요구된다.

2) D사의 시장 진출 성공 사례

D사는 산업용 초정밀부품을 생산/수출하는 기업으로 미크론 단위의 작은 오차만 허용되는 기계부품 수출에 주력하고 있다. 그동안 생산 물량의 73%를 일본에 수출해왔으나 초정밀 기계부품의 유럽시장 진출을 위해 스웨덴 시장을 두드렸다. 초기에는 단가 조정을 통한 여러 차례의 견적 제출에도 가격문제로 수주를 받지 못하다가 D사의 독일 하노버 산업 전 부스에 유력 바이어를 직접 초대해 상담한 이후 회사와 제품에 대한 신뢰를 받으면서, 바이어가 D사의 공장 시사를 위해 한국을 직접 방문하고, D사도 스웨덴을 방문해 기술적인 논의를 거쳐 제품에 반영시키면서 신뢰를 쌓게 됐다. 비록 소량이지만 바이어의 요구에 적극 응대하면서 여러 차례 추가 RFQ를 접수했고 스웨덴 시장을 두드린 지 1년 만에 샘플선적을 시작으로 60만 달러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D사의 스웨덴 시장 진출 성공 요인은 우수한 품질과 높은 가격경쟁력은 물론, 인내심을 갖고 바이어의 요구에 빠르게 응대해 신뢰 관계를 구축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3) G사의 시장 진출 성공 사례

G사는 마스크 팩, 핸드크림을 주력으로 하는 화장품 생산업체로 최근 스웨덴 화장품시장 진입에 성공하였다. 한류 확산에 따른 K-Beauty 관심이 고조되는 것과 때를 같이해 적극적인 마케팅과 틈새시장 공략으로 스웨덴 약국 체인 중 하나인 Apoteket Hjarta(아포테크 예타)에 제품을 납품하게 된다. G사는 한국에서 브랜드 어워드를 수상한 기업으로 로드숍 매장인 올리브영 매장에서 인기를 누리던 화장품업체이다. G사는 스웨덴 화장품시장 진출을 위해 필수적인 CPNP 등록을 마친 상태로 때마침 K-Beauty 제품을 찾던 스웨덴 바이어를 적극 공략하여 성공하게 된 것이다. 관련 바이어는 G사의 진출 성공 요인으로 틈새시장 공략 주효, 유니크한 패키징 및 친근한 제품명을 꼽았다.

스웨덴에서 판매되는 핸드크림은 일반적으로 향이 없는 무향 제품이 대부분인데 G사 핸드크림은 다양한 향을 갖추었으며, 패키징 또한 알록달록한 색깔로 처리하여 유니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브랜드명이 스웨덴어로 향기를 뜻하는 Duft & Doft로 스웨덴 소비자들에게 친근감을 줄 뿐만 아니라 여러 라인 중 하나의 향은 Stockholm Rose라는 이름을 붙여 소비자들의 감성을 자극한 것이다. 여기에 가격경쟁력이 높고 친자연성분을 사용한 제품으로 약국의 성분검사 테스트를 통과하여 올 초 50만 달러 규모의 첫 계약을 체결했다.

4) E사의 시장진출 성공사례

E사는 수소발생기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로 석회수 문제가 고질적인 유럽시장 개척을 위해 바르샤바 한국 우수상품전에 참가했고, 스톡홀름 무역관은 다른 나라에 비해 수질이 좋고 석회수 문제가 덜한 스웨덴 상황을 고려, E사의 주력제품 보다는 비주력제품인 산림욕기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바이어를 발굴하여 바르샤바 한국우수상품전에 보냈다.

당초 E사의 산림욕기는 해당 바이어의 니즈에 적합한 제품이어서 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었으나 스웨덴 바이어는 당초 관심과는

달리 오히려 현지에서는 크게 필요치 않은 수소수기에 더 관심을 보였다. 이후 바이어는 자신의 네트워크를 이용, 수소수기 수요가 클 것으로 판단한 제3국 시장을 겨냥하기로 하고 E사와 밀고 당기는 협상에 들어갔고, 가격, 디자인, A/S 서비스, 물류문제 등에서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이에 스톡홀름 무역관은 무역관에서 기차로 6시간 거리의 바이어 사무실을 주기적으로 방문했고 팔로우업을 통해 마침내 첫 발주 합의를 이끌어냈다. 첫 발주 금액은 25만 불로 스웨덴 바이어는 내수용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제품을 제3국으로 재수출하기에 이른다.

첫 거래 이후 매년 꾸준한 성약을 달성하고 있는 E사의 성공 요인으로는 좋은 품질, 경쟁력 있는 가격, 철저한 A/S 노력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정기적 필터 교체가 요구되는 제품인 만큼 앞으로도 꾸준한 수출성약이 기대된다.

5) D사의 시장진출 성공사례

D사는 비구면렌즈성형기 제조업체로 코로나19 특수로 열화상 카메라 수요가 증가한 스웨덴 틈새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사례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급증하던 '20년 4월, 스톡홀름 무역관은 스톡홀름 외곽 소재 한 업체로부터 열화상 카메라 렌즈를 생산하는 비구면렌즈성형기를 생산하는 한국업체를 찾는다는 메일을 받았다. 해당 바이어는 열화상 카메라 글로벌리더로 제품 디자인부터 생산과 마케팅 등 전 공정을 관리하는 기업으로서 모기업은 미국에 소재한다. 동사는 현재 도시바(일본)사의 대형 성형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보다 작은 성형기를 물색하던 중 한국산 제품이 미국에서 유통 중이라는 정보를 접했으나 확인할 방법이 없어 스톡홀름 무역관에 지원을 요청하게 된다.

스톡홀름무역관은 바이코리아에 문의를 올리는 한편, 동 건이 구매의도가 확실하고, 긴급수출로 직결될 수 있다는 생각에 여러 루트를 통해 제조사를 물색해봤으나 예상과는 달리 등재된 문의를 보고 무역관을 만난 국내기업이 거의 없었고, 제조사 발굴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중간에 유리렌즈금형을 생산하는 I사를 통해 D사를 소개받게 된다.

이후 스톡홀름 무역관과 경남 KOTRA 지원단이 공동 주선한 2차례의 코로나19 대응 화상상담회를 통해 바이어와 국내기업이 상호 적격업체임을 확인하고 NDA를 작성했고 스웨덴 바이어가 D사의 비구면렌즈성형기 발주에 앞서 렌즈 샘플을 주문해 현재 선적 이전 단계이다. D사는 2013년 세계 최초로 곡면 스마트폰용 커버 글라스 원천기술을 자체개발한 업체로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스웨덴 바이어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었다. 금번에 주문한 D사의 샘플 테스트가 좋은 결과를 보일 경우 40만 달러 규모의 수출성약이 예상되며, 향후 추가 오더에 대한 기대도 높은 편이다.

6) C사의 시장진출 성공사례

C사는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코터장비와 포메이션, 싸이클러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로 품질 및 기술력 부문에서 인정을 받아 스웨덴 전기차 배터리 생산업체인 노스볼트사와 납품계약 체결에 성공하였다. C사가 생산하는 코터장비는 이차전지 전극 공정에 사용하며, 포메이션은 이차전지 활성화 공정에 사용한다, 싸이클러는 후공정 장비로 활성화 공정을 거친 이차전지를 일정비율로 성능, 수명검사 진행 시 사용하는 장비이다.

C사는 노스볼트사의 전기차배터리 프로젝트에 웰코스사 및 다른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이뤄 참가해 수주에 성공했다. 노스볼트사의 베스테로스 Lab 공장 프로젝트 수주 성공 이후, 현재는 스웨덴 북부지방에 신축 중인 노스볼트사의 웰레프테오 셀 공장 프로젝트 10개 공정 중 여러 개 공정을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C사는 관련 기술자 5명을 스웨덴 현지 공장에 파견해 현재 장비설치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7) S사의 시장진출 성공사례

S사는 신재생에너지 부품을 생산하는업체로 스웨덴 최대 태양열 패널 제조업체인 Midsummer사에 스테인레스 스틸 코일을 공급하는 데 성공했다. S사는 스톡홀름무역관에서 발굴한 인콰이어리를 기반으로 화상상담과 후속상담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샘플 성약기반 거래성과 창출을 위해 스웨덴 Midsummer사에 납품할 스테인레스 코일 1~3차 샘플을 제작, 납품하였고, 마침내 샘플제품의 품질과 기술을 인정받아 추가 오더를 받게 되었다. 2022년 첫해에는 약 20톤(3만달러 내외), 이후 연간 2~300톤(30~45만 달러) 규모의 주문이 예상되고 있다.

5. 출입국 안내

가. 비자

종류 및 발급절차

스웨덴의 노동 및 거주비자 발급 소요기간은 통상 11~15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웨덴에 유입된 난민은 2015년 16만 3천 명, 2016년 4만 5천 명, 2017년 3만 명, 2018년 2만 2천 명, 2019년 2만 2천 명, 2020년 1만 3천 명이며, 2021(1~6월)에는 코로나19로 4,800명으로 크게 줄었다(2022.4월 최신자료). 스웨덴 이민청은 비자발급 전문 대행업체를 선정해 이들을 통해 들어오는 신청서는 서류가 완전히 갖춰졌다는 전제로 패스트 트랙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1~2개월 안에 허가 발급을 해주었다.

그러나, 2017. 7. 5.부로 법을 개정, 영리 기관(스웨덴 진출 한국기업 등)은 전문 대행업체를 통한 패스트 트랙 이용이 가능했지만, KOTRA 등 비영리 기관은 전문 대행업체를 통하더라도 패스트 트랙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파견직원의 비자 취득에 매우 큰 애로를 겪고 있다. 전문 대행업체의 이용수수료는 보통 1인당 약 1,500달러로 상당히 높은 편이며, 이미 스웨덴에 들어온 상사 주재원들도 2년마다 비자를 갱신해야 한다. 또한 시기에 따라 불규칙하게 처리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다. 일례로, 스웨덴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한 주재원이 패스트트랙을 이용했음에도 비자 발급에 8개월 이상 소요된 바 있다. 따라서 비자 발급 시 이러한 사항을 유의하는 편이 좋다.

1) 비자 종류

- 90일 이하의 단기 체류는 비자발급이 필요 없으며 90일 이상 장기 체류 시에는 방문 비자, 학생 비자, 취업 비자, 가족동반 비자, 워킹 홀리데이 비자 등이 필요하다.

2) 비자 발급에 필요한 공통 서류

- 비자 신청서, 비자 접수 방문 예약, 유효 여권, 최근에 찍은 컬러 여권 사진 2매, 비자 수수료 1,500~2,000크로나(미화 약 156~209달러) 송금 확인서, 건강진단서, 보험증명서 등

(1) 학생 비자

스웨덴의 대학교나 전문대학에 풀타임 학생으로 입학허가를 받은 경우 학생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학업을 지속하는 동안 매년 한 번씩 학생비자를 갱신해야 한다. 3개월 미만 체류 시 거주권 신청은 불요하다.

필요서류 및 수수료는 아래와 같다.

- 수수료 : 1,500 SEK
- 비자 신청인이 인가된 학술 기관에 입학 및/혹은 정규, 풀타임 학생으로 등록되었음을 확인하는 원본 확인서
- 재정 보증서 (월 최소 생활비 보증서 : 8,694 SEK, 미화 약 908달러/월)
- 영문 발급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

Malmo World Maritime University, SI(Svenska Institute International Science Programmet), 옅살라 대학교 ISP(International Science Program) 입학 허가를 받은 학생에 한해 학생비자 신청 시 수수료가 면제된다.

(2) 취업비자

EU국가 국민의 경우 별도의 취업비자를 받지 않고도 스웨덴에서 일할 수가 있으며, 3개월 이상 일을 하는 경우에만 이민청에 등록하게 돼 있다. 그러나 EU 역외국가 국민이 스웨덴에서 취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비자의 사전 획득이 필요하며 우선 취업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스웨덴 기업이나 스웨덴에 진출한 외국 기업의 책임자(고용주)가 발급하는 Job offer를 이민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서류에는 고용인의 인적사항은 물론 급여 수준(최소 13,000 SEK/월), 근무 예상기간, 직책, 거주지 등이 분명히 나타나야 하고, 고용주가 채용하고자 하는 고용인에게 최소 3개월분의 급여 지불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은행 잔고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주가 이민청에 Job offer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관련 산업 노조로부터 사전 승인(향후 고용인의 실업상황에 대비해 실업보험 등 보험 커버가 가능한지 여부)을 받아 동 사실을 함께 보고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고용주에게 별도 연락해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취업비자 발급 처리 기간이 크게 지연될 수 있다.

난민 증가로 이민청의 업무가 폭주하면서 비자발급에 걸리는 기간이 최소 11~15개월로 장기화되는 한편, 취업비자 영장 발부도 최소 11개월(인터넷 신청 시)~15개월(우편 신청 시)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인에 대한 보험 커버가 안 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취업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고 있다.

필요서류 및 수수료는 아래와 같다.

- 수수료 : 2,200 SEK (비자 연장 시 동일 요금 적용) * 자영업자, 예술인, 스포츠선수 등 일부 직종에는 별도 요금 적용
- Job Offer (인적사항, 최소 급여 13,000SEK/월, 고용인에게 지불할 최소 3개월분의 급여 지불능력 확인할 수 있는 고용주 은행잔고 확인서 등 필요)
- 재정보증서
- 동반가족 비자 신청 시 부양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함

2022년 6월 1일부로 발효된 새로운 규칙에 따라, 석,박사 수준의 고등 교육을 마친 고학력 인력에 대하여 3개월에서 9개월 사이의 구직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해당 비자로는 구직 혹은 창업을 할 수 있으며, 가족 동반은 불가하다. 기간 내 취업할 경우 일반 취업비자로 전환해야 하며, 비자 신청 후 유예기간에도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

(3) 가족동반 비자

취업비자 또는 학생비자로 스웨덴에 입국 시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가족동반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필요서류 및 수수료는 아래와 같다.

- 수수료 : 성인 1,500 SEK, 18세 미만 아동 750SEK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4) 워킹홀리데이 비자

2010년 11월 1일 발효된 한-스웨덴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협정으로 18~30세의 우리 국민은 최장 1년 동안 스웨덴에 체류하면서 관광과 취업을 할 수 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으면 거주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연장이 되지 않는다.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으나, 지금까지 워킹홀리데이로 스웨덴을 방문하는 한국 청년들의 숫자는 상당하나 대부분 체류기간 내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귀국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청년은 한국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단순 노동을 제외하고 취업에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의 스웨덴 회사는 스웨덴어 구사 능력을 중시하기 때문에 언어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필요조건 및 수수료는 아래와 같다.

- 수수료 : 1,500SEK
- “모든 위험” 보장 보험 가입 확인서
- 귀국 항공권, 혹은 추후에 이를 구입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 능력 확인서
- 피부양자를 동반할 수 없으며 건강상태가 양호한 자
- 영문 발급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

(5) 방문비자

스웨덴에 있는 가족이나 친척을 방문, 3개월 이상 스웨덴에 체류할 경우 방문 비자가 필요하다. 방문 비자를 받게 되면 거주카드를 발급해 준다.

해당 비자로는 경제활동이 불가하다.

필요서류 및 수수료는 아래와 같다.

- 수수료 : 성인 80유로, 6-11세 : 40유로, 5세 미만 : 무료
- 유효한 여권(방문 종료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상 유효해야 함), 재정확인서, 왕복 비행기 표, 보험증명서 등

* 코로나19 관련 출입국 참고사항

2022.4.1부로 모든 외국인의 입국제한조치 해제, 이로써 스웨덴 입국시 백신접종 및 PCR테스트 증명서 제출 불요

나. 휴대품 통관

휴대품 면세

1) 외화 반·출입 한도

EU로 입국하거나 출국 시 10,000유로 이상의 현금을 지니고 있다면 규정에 따라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2) 휴대품 면세 한도

비 EU 국가에서 스웨덴 입국 시 최대 4,300SEK 만큼의 물품(술, 담배 제외)을 면세로 가지고 올 수 있다. 본인 또는 가족이 사용할 알코올과 담배의 경우, 알코올은 독주 1리터 또는 스트롱 와인 2리터, 와인 4리터, 스트롱비어(알코올 농도 3.5%이상 맥주) 16리터까지 면세이며, 담배는 200개비, 시가 50개까지 면세가 된다.

6. 유관기관

가. 대사관 및 한국기관

○ 주 스웨덴 한국대사관

전화번호	+46-8-5458 9400
주소	Laboratoriegatan 10, 102 53 Stockholm, Sweden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se-ko/index.do

○ 스웨덴 한인회

전화번호	+46-70 187 1586
주소	Pipersgatan 20, 112 24 Stockholm, Sweden
홈페이지	http://www.koreans.se
비고	이메일 : info@koreans.se

○ 스웨덴 한국학교

전화번호	+46-73 708 9095
주소	Eriksdalsskolan Ringvagen 66, 118 61 Stockholm
홈페이지	http://koreanschool.se/
비고	이메일 : rektor@koreanschool.se

○ 한국연구재단 스웨덴 사무소

전화번호	+46-8-20 5334
주소	Vallgatan 9, 170 67 Solna
홈페이지	https://overseas.nrf.re.kr/overseas/html/sweden/sweden_01.html

○ 요테보리 세종학당

전화번호	+46-70 920 8437
주소	Alleen 9, 431 35 Molndal
홈페이지	https://sejongkorean.se

비고	이메일 : sejong-gbg@outlook.com
----	------------------------------

◦ K-Startup Center

전화번호	+46-8-459 3060(Epicenter)
주소	Master Samuelsgatan 36, 111 57 Stockholm
홈페이지	https://weareepicenter.com/stockholm
비고	Epicenter 대표 이메일 : hello@epicenterstockholm.com

〈자료원 : 해당기관 홈페이지, www.hitta.se〉

나. 현지정부 및 언론기관

◦ 스웨덴 정부(Government of Sweden)

전화번호	+46-8- 405 1000
주소	Regeringskansliet, 103 33 Stockholm, Sweden
홈페이지	http://www.regeringen.se
비고	스웨덴 정부종합청사

◦ Dagens Nyheter

전화번호	+46-8-738 26 00
주소	Gjorwellsgatan 30, 105 15 Stockholm, Sweden
홈페이지	http://www.dn.se
비고	유력 일간지

◦ Dagens Industri

전화번호	+46-8-573 651 00
주소	Dagens Industri, Kundservice, 112 60 Stockholm, Sweden
홈페이지	http://www.di.se
비고	유력 경제 일간지

◦ Svenska Dagbladet

전화번호	+46-8-618 0220
------	----------------

주소	Vasta Jarnvagsgatan 21, 105 17 Stockholm
홈페이지	http://www.svd.se
비고	유력 일간지

◦ SVT

전화번호	+46-8-784 0000
주소	Sveriges Television 105 10 Stockholm
홈페이지	http://www.svt.se
비고	스웨덴 TV방송국

◦ Aftonbladet

전화번호	+46-8-725 2000
주소	Vastra Jarnvagsgatan 21, 111 64 Stockholm
홈페이지	http://www.aftonbladet.se
비고	유력 석간지, 이메일 support2aftonbladet.se

〈자료원 : 스웨덴 정부종합청사, DN, DI, SvD, SVT, Aftonbladet〉

7. 물가정보

가. 물가정보 표

1 USD : 8.58SEK(2021년 평균환율)

No	구분	품목	단위	금액(USD)
1	식품	햄버거(맥도날드 빅맥)	단품	6.090
2	식품	비빔밥	1인분	20.900
3	식품	김치찌개백반	1인분	19.890
4	식품	신라면	1봉지	1.990
5	음료	커피(스타벅스-아메리카노)	1잔	4.420
6	음료	생수 (마트, 최저가)	500ml	1.390
7	음료	코카콜라(마트, 최저가)	500ml	1.740
8	의료	항생제	20정	3.280
9	교통	시내버스요금	기본요금	4.540
10	교통	지하철요금	기본요금	4.540
11	교통	택시요금(공항-스톡홀름 시내)	기본요금	78.670
12	서비스	헤어컷 (시내중심가, 외국인 애용)	1회	55.090
13	서비스	무연휘발유 1L	1L	2.440
14	서비스	전기요금	1Kwh	0.590
15	서비스	영화입장권	일반	17.580
16	여가	담배 (말보로라이트)	1갑	6.790
17	여가	소주 (한식당내 판매최저가)	360ml	33.150
18	임금	최저임금	법정최저(자료없음)	
19	학비	국제/사립학교(고등학교 3학년) 수업료	연간	18414.000
20	금리	중앙은행 기준금리	%	0.250

<자료원 : 생필품점, 한국식당, 스웨덴 통계청, 스웨덴 인터내셔널 스쿨, 중앙은행, 맥도날드, 약국 등>

8. 출장정보

가. 환전

통화체계

화폐단위는 스웨덴 크로나(Swedish Krona, SEK)이며 부속단위는 어레(Ore)로 100어레가 1크로나이다. 표기방법은 통상 SEK 100이며 부속단위는 50어레까지만 사용한다. 표기 시 크로나와 어레사이에 "."이 아니라 ","인 점을 유의해야 한다.

화폐 종류로는 액면가 20, 50, 100, 200, 500, 1,000크로나 지폐가 있으며, 액면가 1, 2, 5, 10크로나 동전이 있다.

환전방법

환전은 은행, 우체국, 호텔 및 기타 환전소에서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환전하는 것보다 Forex Bank, X-change 등의 환전소에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하며, 호텔에서의 환전이 제일 비싼 편이다. 유로화나 달러화는 일반적으로 통용되지 않으므로, 현금 지불 희망 시 스웨덴 크로나화로 환전해야 한다.

○ 환율

- 1크로나(SEK) = 128.20원('22.5.4. 기준)
- 1 달러(USD) = 9.88SEK('22.5.4. 기준)
- 1 유로(EUR) = 10.40 SEK('22.5.4.. 기준)

○ 스톡홀름 소재 환전소: Forex Bank(City Terminal, Gallerian, Arlanda Flygplats 지점), X-Change (Arlanda Flygplats, T-central 지점)

신용카드 이용

스웨덴은 '현금 없는 사회'를 주도하는 글로벌 선도국으로 최근 10년 사이 현금 사용률이 절반 아래로 감소하였다. 스웨덴 중앙은행에 따르면, 스웨덴의 현금 사용비율은 GDP의 1% 선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의 평균 현금 사용비율은 GDP의 10%, 일본은 20% 내외이다)

스웨덴 도소매유통연구소에 따르면, 스웨덴 소비자들의 온라인 쇼핑 시 결제수단은 인보이스 결제가 37%로 가장 높고, 신용카드나 현금 카드 결제 28%, 은행직불결제 17%, Swish 8%, Paypal이나 Payson 등 기타 결제가 8% 선이다. Swish는 스웨덴 핀테크 회사인 Swish사가 개발한 결제수단으로서 모바일 뱅크 아이디만 있으면 모바일 간 현금 이체가 가능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나. 교통

교통상황

스웨덴 국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교통편으로는 택시, 지하철, 전철, 시내버스, 기차, 시외버스 등이 있다. 택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교통수단이 한국처럼 복잡하지는 않으나, 요금이 매우 비싸다. 또한, 버스, 지하철, 전철 등 대중교통수단은 각 시간표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운행되며 서비스가 매우 좋은 편이다.

버스

스톡홀름은 시내버스와 지하철 노선이 잘 연계돼 있을 뿐 아니라 한 티켓으로 지하철과 시내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시내버스 요금은 1회권(37크로나)이 필요하며 티켓은 승차 시에만 제시되며, 첫 승차로부터 75분 내에는 같은 티켓으로 버스나 지하철을 여러 번 이용 가능하다.

승차권은 SL(스톡홀름 로컬 트래픽) Center나 지하철역 근처의 편의점(Pressbyran) 및 슈퍼 또는 버스정류장의 자판기에서 사전 구입해야 하며, 시내버스 승차 후 기사에게 직접 구매할 수는 없다.

한편 버스표를 SMS로 구입하려면 사전에 SL 홈페이지에 휴대폰 번호를 등록해야 해서 방문객들은 이용이 어렵다. 하지만 핸드폰 앱 구매장에서 SL-Biljetter를 검색해 다운받고, 설정란에서 카드시불 또는 인보이스 발급 중 선택해 구매할 수는 있다.

택시

택시 이용 가격은 운행 회사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나며 가격 계산 방식도 각기 다르다. 스톡홀름의 대표적인 택시 회사인 Taxi Stockholm의 경우, 택시를 지정 장소까지 호출하는 기본요금이 45kr이며, 9:00~15:00 시간대에는 시간당 520kr에 1km당 11.7kr를 합산해 가격이 계산된다. 나머지 시간에 택시를 이용할 때는 가격이 좀 더 비싸진다.

택시는 회사나 지하철역 근처 또는 호텔 등지에서 대기하고 있으며, 승객을 찾아 시내를 배회하지는 않는다. 필요 시 호텔 프런트에 부탁하거나 전화 또는 공중전화로 직접 호출할 수 있다. 호출 시 승객 명, 택시 대기 장소, 목적지 등을 말해야 하며 택시 도착 시각을 정확히 알려주면 호출 후 10분 이내에 도착하는 게 보통이다. 택시 요금 지불 시 금액과 관계없이 각종 신용카드로 지불이 가능하며 택시 요금 영수증을 발급받게 된다.

택시의 겉면이나 위에 택시회사를 표시하는 사인보드가 있으며, 대개 스톡홀름 시내에서 알란다 공항 간의 고정 요금이 명기돼 있다. 표시돼 있지 않을 경우, 사전에 가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용할 만한 택시 회사로는 Taxi Stockholm(전화: 08-150000), Taxi Kurir(0771-860000), Taxi 020(020-202020) 등이 있다.

* 우버택시 이용방법

- . 아이폰의 경우 App Store, 삼성과 LG 등 안드로이드 기반 핸드폰의 경우 Play store 접속 → 'Uber' 검색 →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 계정 가입 (gmail 주소 활용하여 로그인 가능)
- . 현재 위치를 출발지로 설정, 행선지를 주소창에 입력 후, 아래쪽 'UBERX 확인' 클릭 → 드라이버 및 차량정보 확인 후 승차 대기
- . 가입 시 사전에 입력한 신용카드 정보로 자동 결제 (사전에 결제정보 변경 가능. 현금 및 기타 카드 등으로)
- . 우버운임은 택시운임의 70~80% 수준

지하철 및 시외버스

지하철의 경우, 모든 입구는 청색의 T(툰넬바나, Tunnelbana의 약자, 스웨덴어로 지하철을 의미함)로 표시돼 있다. 정액권으로는 연간(10,190크로나), 90일간(2,810크로나), 30일간(970크로나), 7일간(430크로나), 72시간(330크로나), 24시간(165크로나) 등이 있다. 1회권은 핸드폰 또는 현금카드, 자동판매기 구입시 39크로나이다. 2022년 5월10일 이후부터 모든 실물티켓은 앱과 연동되는 충전식 신규 교통카드로 전면 대체한다.

시외버스는 스톡홀름 중앙역 맞은편의 City Terminal에서 출발한다.

다. 통신

핸드폰

국제 전화 요금은 대체로 비싼 편이며, 특히 호텔에서 이용하는 국제 통화 요금은 매우 비싸므로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전화카드를 사서 공중전화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전화 카드는 호텔 리셉션 및 담배 가게, 지하철 근처 가게(Pressbyran) 등 여러 곳에서 구매할 수 있다. 한국으로 전화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전화한다.

스웨덴에서 한국으로 전화를 걸 경우, 먼저 00을 누르고 한국 국가번호 82를 누른 후 지역 번호 및 가입자 번호를 누르면 된다. 예를 들어 KOTRA 본사에 전화를 걸 경우, 00-82-2-3460 7114를 누르면 된다. 한국에서 스웨덴으로 전화를 걸 경우에는 먼저 001(혹은 002)을 누르고, 스웨덴 국가 번호 46을 누른 뒤, 지역 번호 및 가입자 번호를 누르면 된다. 예를 들어 스톡홀름 무역관에 전화를 걸 경우에는 001(혹은 002)-46-8-30 8090을 누르면 된다.

스웨덴 국내에서 국내 전화를 할 경우, 지역 번호 및 가입자 번호를 누르면 된다. 공중전화는 시내 요소마다 설치돼있으나 휴대폰 사용이 늘어나자 점점 사라지는 추세이다. 동전 사용 공중전화는 중앙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며, 대부분은 카드사용 전화기이므로 전화카드를 미리 구입해야 한다. 스웨덴의 주요 지역 번호는 스톡홀름 08, 요테보리 031, 옅살라 018, 룬드 046 등이다.

인터넷(와이파이)

스웨덴의 인터넷 속도는 대한민국의 인터넷 속도보다 느리지만 타 국가에 비해 빠른 편이다. 또한, 인터넷 보급률도 높으며 와이파이도 잘 갖춰져 있다.
인터넷 및 통신사는 Telia, Telnor, Tele2, Hi3G 등을 이용하면 된다.

라. 관광명소

◦ 감라스탄(Gamla Stan)

도시명	스톡홀름(Stockholm)
주소	gamla stan, Stockholm, Sweden
운영시간	해당사항 없음
휴무일	해당사항 없음
명소소개	스웨덴의 구시가지

◦ 시청사(Stadshuset)

도시명	스톡홀름(Stockholm)
주소	Hantverkargatan 1, 111 52 Stockholm
운영시간	08:30~16:00
휴무일	없음

명소소개	스톡홀름 정치의 중심지인 시청사는 매년 12월 10일 열리는 노벨상 파티장으로도 유명하며, 외국 관광객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관광지 중 한 곳이기도 하다. '임금님의 섬'으로 불리는 쿡스홀멘(Kungsholmen)에 시청사가 자리 잡고 있는데, 멀리서 보면 멜라렌 호수에 떠 있는 궁전처럼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 시청사는 구 스타브 바사 왕이 덴마크를 물리치고 스톡홀름으로 들어온 지 400년이 되는 1923년에 이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것이다.
	시청사 건물은 건축가로서 이름 높은 랑나르 웨스트베리가 설계해 12년에 걸쳐 완공됐다. 스웨덴의 상징인 '세 왕관'을 떠받친 탑에 올라서면 전 시가지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 정오가 되면 옛 민요의 일절을 탄 탑의 종이 울리며 인형이 움직인다. 호숫가에는 스톡홀름의 기초를 다진 비르예르 얄(Birger Jarl) 공의 동상이 서 있다.
	시청사는 시 행정의 중심부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실제 업무는 시의 여러 곳에 분산된 지방자치기관에서 이루어지며, 이곳은 주로 시의회 회의나 행사에 이용되고 있다. 시청사에는 황금방(Gyllene Salen)이라고 불리는 큰 홀이 있는데 이곳은 노벨 만찬 후 댄스파티가 열리는 연회 장소이다. 벽면은 1,900만 개의 작은 모자이크를 사용한 아름다운 그림으로 돼 있다. 정면에는 멜라렌 호수 여왕의 모습이 황금빛 모자이크로 묘사돼 있으며, 좌우의 벽에는 역사상의 인물과 사건들이 형상화돼 있다.
	또한, 시청사에는 100개의 의석을 가진 시 회의실(Rikssalen)이 있다. 벽면에 시의 옛 지도가 그려져 있으며 천장은 바이킹의 배를 본떠 만들어서 하늘이 보여야 할 부분에는 별과 달이 그려져 있다.

◦ 바사박물관(Vasa Museet)

도시명	스톡홀름(Stockholm)
주소	Galarvarvsvagen 14, 115 21 Stockholm
운영시간	수요일(10:00~20:00)을 제외하고 10:00~17:00
휴무일	없음
명소소개	바사 박물관은 스톡홀름 앞바다의 물 위에 떠 있는 기묘한 해상 박물관이다. 이 박물관에는 1628년 침몰해 333년 만인 1961년에 인양된 전함인 바사호가 전시돼 있으며, 인양 당시의 다른 인양물도 함께 전시돼 있다. 구스타브 아돌프 2세의 명으로 건조된 바사호는 1628년에 진수, 처녀 출항을 떠나기에 앞서 왕궁 아래의 선창에서 강풍과 함께 수심 32m의 항 내에서 침몰했다. 1956년에 인양작업을 시도, 333년 만인 1961년 4월 바사호가 수면에 다시 그 위용을 나타냈으며 함 내에서는 2만 4,000점에 달하는 물건이 수집됐다. 배는 습도 90%의 해상 박물관에 전시돼 있고 항시 보존용 약품이 뿌려져 있다. 배의 길이는 56미터, 높이는 18미터, 중량이 1,400톤이나 된다.

◦ 스칸센(Skansen)

도시명	스톡홀름(Stockholm)
주소	Djurgardsslatten 49-51, 115 21 Stockholm
운영시간	10:00~15:00
휴무일	없음
명소소개	과거 왕가의 사냥터였던 유르고덴 섬에 위치한 스칸센은 세계에서 가장 큰 야외 민속 박물관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150개의 재래 주택, 수공예점, 동물원 등이 있다.

◦ 드로트닝홀름(Drottningholm)

도시명	스톡홀름(Stockholm)
주소	178 02 Drottningholm, Stockholm
운영시간	주말 10:00~16:00
휴무일	평일
명소소개	1744년 Fredrik 1세에 의해 건축됐으며 1750년 Lovisa Ulrika 왕비의 명에 의해 증축된 왕궁으로 일명 스웨덴의 베르사유 궁이라고 불리고 있다. 바로크와 로코코 양식이 잘 어우러져 있다. 1777년 구스타브 3세와 Lovisa 여왕이 정부에 팔았다가 1981년 현 왕가에서 다시 사들였으며, 현재 스웨덴 국왕 가족이 거주하고 있다.

◦ 왕궁(Kungliga Slottet)

도시명	스톡홀름(Stockholm)
주소	107 70 Stockholm
운영시간	10:00~16:00
휴무일	없음
명소소개	감라스탄 북쪽에 위치해 있는 3층 건물로 13세기 중엽에 지어졌으나 1697년 화재로 거의 소실됐다가 1754년 복구됐다. 이탈리아의 바로크 양식과 프랑스의 로코코 양식을 도입한 건축물로, 1982년까지 왕궁으로 사용됐으나 지금은 드로트닝홀름 궁전이 왕궁으로 사용된다.

<자료원 : 감라스탄, 시청사, 바사박물관, 스칸센, 드로트닝홀름, 왕궁 홈페이지>

마. 식당

- 현지식당

◦ 오페라셀라렌(Operakällaren)

도시명	스톡홀름(Stockholm)
전화번호	08-676 58 00
주소	Karl XII:s Torg
가격	SEK 1000~1900
영업시간	메인 다이닝 : 화~토 18:00~22:00 캐주얼 다이닝 : 화-금 11:30-22:00, 토 12:00-22:00 바 : 화-금 11:30-22:00, 토 12:00-22:00
휴무일	일요일 / 월요일
소개	스웨덴식

◦ 빌라 굿뎀(Villa Godthem)

도시명	스톡홀름(Stockholm)
전화번호	08-684 23840
주소	Rosendalsvagen 9
가격	SEK 300~500
영업시간	월-금 : 11:30~23:00 토요일 : 12:00~23:00 일요일 : 12:00~23:00
소개	스웨덴식

◦ 울릭스달스 배드휘스(Ulriksdals Vardshus)

도시명	스톡홀름(Stockholm)
전화번호	08-85 08 15
주소	Ulriksdals Slottspark
가격	SEK 500
영업시간	6월15일~8월22일(미드섬머 연휴 휴무) 화-수 : 11:30-16:30 목 : 11:30-20:30 금-토 : 11:30~20:30 일 : 11:30~17:30
휴무일	월요일
소개	스웨덴식

◦ 홍콩(Hong Kong)

도시명	스톡홀름(Stockholm)
전화번호	08-653 7720
주소	Kungsbros Strand 23
가격	SEK 200~300
영업시간	평일 : 10:00~22:00 주말 : 13:00~22:00
휴무일	없음
소개	중식

<자료원 : 오페라셀라렌, 빌라곳뎀, 울릭스달스 배드휘스, 카프리, 홍콩 레스토랑 홈페이지>

- 한국식당

◦ 아리랑(Arirang)

도시명	스톡홀름(Stockholm)
전화번호	08-673 3225
주소	Luntmakargatan 65
가격	SEK 180~300
영업시간	화-금 : 10:00-19:00 토 : 12:00-19:00 아침식사(예약제) : 07:00-10:00 저녁식사(고정메뉴, 부정기적) 19:30-21:30
휴무일	일요일/월요일
소개	한식

◦ 코리아하우스(Korea House)

도시명	스톡홀름(Stockholm)
전화번호	08-30 9620
주소	Ynglingagatan 13
가격	SEK 150~200
영업시간	평일 : 11:00~21:00(14:00~17:00 브레이크 타임) 토 : 17:00-21:00
휴무일	일요일
소개	한식

◦ 김치(Kimchi)

도시명	스톡홀름(Stockholm)
전화번호	08-684 02629
주소	Luntmakargatan 95
가격	SEK 150~200
영업시간	점심식사 화-금 : 11:00~14:00 저녁식사 수-토 : 17:00-22:00
휴무일	일요일, 월요일
소개	한식

바. 호텔

- 비즈니스 호텔

○ 호텔 비르예르 얄(Hotel Birger Jarl)

도시명	스톡홀름(Stockholm)
주소	Tulegatan 8, 113 53 Stockholm
전화번호	+46 8 674 18 00
홈페이지	https://www.birgerjarl.se
숙박료	SEK 1,150~2,500(스탠다드 룸)
소개	비즈니스맨들에게 적합한 호텔로, 내부시설도 제법 깨끗하고 스톡홀름 시내 중심지에 위치

○ 클라리온 호텔 알란다 에어포트(Clarion Hotel Arlanda Airport)

도시명	스톡홀름(Stockholm)
주소	Tornvagen 2, 190 45 Stockholm-Arlanda
전화번호	+46 8 444 18 00
홈페이지	http://clarion-hotel-arlanda-airport.h-rez.com
숙박료	SEK 2,500(스탠다드 룸)
소개	스톡홀름 알란다 공항 바로 옆에 위치

○ 엘리트 플라자 호텔(Elite Plaza Hotel Gothenburg)

도시명	예테보리(Göteborg)
주소	Vastra Hamngatan 3, 404 22 Göteborg
전화번호	+46 31 720 40 00
홈페이지	https://www.elite.se/en/hotels/gothenburg/plaza-hotel/
숙박료	SEK 2,130(스탠다드 룸)
소개	예테보리 위치

- 게스트하우스

○ 시티 백패커스 호스텔(City Backpacker Hostel)

도시명	스톡홀름
주소	Upplandsgatan 2, 111 23, Stockholm
전화번호	+46 8 206920
홈페이지	http://citybackpackers.se
숙박료	SEK 300~900

○ STF 롱홀멘 호스텔(STF Langholmen Hostel)

도시명	스톡홀름(Stockholm)
주소	Langholmen 20, 117 33 Stockholm
전화번호	+46 08 720 8500
홈페이지	http://langholmen.com
숙박료	SEK 500

〈자료원 : 해당 업체 홈페이지〉

사. 치안

치안상황

치안은 매우 양호한 편이나 심야 단독 외출은 삼가는 편이 안전하다. 강력 범죄는 드문 편이나 좀도둑이 적지 않으므로 공항, 호텔, 기차역 등 공공장소에서 가방, 노트북 같은 개인 소지품 분실에 늘 유의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이민자 수가 전체 인구의 25% 내외에 육박하면서 일부 이민자 밀집 거주지역에서는 강력범죄도 가끔 발생하고 있다.

응급상황 대처요령

1) 교통사고

인명피해 발생 시, 우선 112로 구급차를 불러 부상자를 응급구조한 후 교통경찰과 사고조서를 꾸미도록 한다. 이 경우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충돌사고 및 접촉사고 시에는 도로 옆 안전한 곳에 비켜 세운 후 상대방 운전자와 사고 조서를 작성하여 사인한 후 보험사에 보내면 된다.

긴급전화 112는 경찰, 병원, 소방서 등 여러 기관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운영되므로, 무슨 일이든 상담 및 도움 요청이 가능하다. 사고를 대비해 운전 시에는 항상 신분증, 운전면허증, 보험가입증서 등을 지참하는 것이 좋다.

2) 여권/지갑 분실

여권 분실에 대비하여 복사본을 휴대하거나 휴대폰에 여권을 사진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것이 좋으며, 여권 분실 시에는 현지 경찰과 대사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한국대사관에 신고하면 여행증명서(여권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발급되는 여권내용증명서)나

여권 재발급이 가능하며, 여행증명서만으로도 한국으로 귀국은 가능하다.

○ 주 스웨덴 한국대사관

- 전화 : +46-(0)8 5458 9400, +46-(0)8 5458 9432(영사업무) / +46-(0)73 330 1616(일과시간 후 긴급 연락처/사건·사고 및 여행증명서 관련)

- 영사과 업무시간 : 9:30-12:00, 13:30~16:30 (영사 민원서비스 예약제 시행)

- 일반 업무시간 : 월-금/ 9:00~12:00, 13:30~17:00_

- 주소 : Laboratoriegatan 10, Stockholm, Sweden

○ 여권발급 구비서류

- 신분증, 여권용 컬러사진 2매(3.5x4.5 사이즈), E-Ticket 또는 항공일정, 수수료(현금, 단수여권 SEK 120/여행증명서 SEK 56), 본인의 등록기준지(구 본적지)정보

3) 응급 의료상황

응급 의료상황 발생 시에는 국번 없이 112를 누르거나 종합병원의 응급실에 찾아가면 된다. 병원 이용 시 스웨덴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진료비가 매우 비싸므로 여행 전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면 좋다.

○ Sodersjukhuset

- 전화 : +46-(0)8- 123 61000 (성인 응급실 : 08-123 62120)

- 주소 : Sjukhusbaken 10, Stockholm

○ Danderyds Sjukhus

- 전화 : +46-(0)8 123 55000

- 주소 : Entrevagen 2, Danderyd

스톡홀름 시내에서 응급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시내 응급실(Vasastans Vardcentral, 주소: Kungstensgatan 57, 전화: 08-128 55600/전화시간 8:00~17:00)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간단한 약은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으나 대부분은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한다. 약국 개장 시간(월~금: 10:00~19:00, 토:

10:00~16:00 내외로 약국별 상이) 이외에 약국을 이용해야 할 경우에는 연중 24시간 개점하고 있는 스톡홀름 시내에 위치하고 있는 약국(Apoteket C. W. Scheele 주소: Klarabergsgatan 64, 전화: 08-454 81 30)을 이용할 수 있다.

9. 생활정보

가. 주택

주택 임차 방법 및 유의사항

스웨덴에서는 주택 구하기가 쉽지 않다. 주택을 구하기 위해서는 주거 희망 지역의 부동산 업자(Bostad Direkt AB사, www.bostaddirekt.com)에게 의뢰하거나 일간 신문이나 지역 신문(Lokal Tidningen)의 주택 광고 또는 인터넷(www.blocket.se)을 통해 구할 수 있다. 도심에는 주로 오래된 아파트가 많으며 임차료가 높은 편이다. 교통체증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도심에서 약간 벗어난 지역을 거주지로 정할 경우, 더 넓은 주택에서 쾌적하게 살 수 있다. 다만, 취학자녀가 있으면 등하교 거리와 교통편을 고려해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4인 가족 기준 월 3만 크로나 정도의 임차료면 스톡홀름 주변의 90~110㎡ 크기의 주택을 임대할 수 있는데, 중개소를 통한 경우 1개월분의 임차료를 중개 수수료로 지급해야 한다. 인터넷을 통해 집을 구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집의 도면 및 약도 등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나, 대부분이 스웨덴 현지어로 돼 있어 외국인의 경우 부동산 회사를 통해 알아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스톡홀름의 경우 최근 주택난이 심해 해외 주재원들이 주택 임차에 애로를 겪고 있다.

연립 주택이나 아파트의 경우, 주차장이 임차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차장은 별도로 임대해야 한다. 특히 겨울에는 많은 눈이 오므로 매일 아침 차의 눈을 치우지 않으려면 실내주차장에 대해서도 사전에 알아보는 것이 좋다. 한편 주택 구입을 결정하면, 주택 상황을 일일이 점검하고 필요 시 수리를 사전에 요청하고, 하자가 있을 경우 본인 과실이 아님을 미리 소유주에게 알려거나 사진을 찍어 보관해두는 것이 좋다. 이는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배상 문제를 원만하게 처리할 방법이 될 수 있다. 입주 시에는 통상 2개월 치의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전화

국제전화 요금은 대체로 비싼 편이며, 특히 호텔에서 이용하는 국제 통화 요금은 매우 비싸므로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전화카드를 사서 공중전화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전화 카드는 호텔 리셉션 및 담배 가게, 지하철 근처 가게(Pressbyran)등 여러 곳에서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와이파이가 잡히는 곳일 경우 카톡이나 Skype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한국으로 전화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전화한다.

스웨덴에서 한국으로 전화를 걸 경우, 먼저 00을 누르고, 한국국가 번호 82를 누른 후 지역 번호 및 가입자 번호를 누르면 된다. 예를 들어 KOTRA 본사에 전화를 걸 경우, 00-82-2-3460 7114를 누르면 된다. 한국에서 스웨덴으로 전화를 걸 경우에는, 먼저 001(혹은 002)을 누르고, 스웨덴 국가 번호 46을 누른 뒤, 지역 번호 및 가입자 번호를 누르면 된다. 예를 들어 스톡홀름 무역관에 전화를 걸 경우에는 001(혹은 002)-46-8-30 8090을 누르면 된다.

스웨덴 국내에서 국내 전화를 할 경우, 지역 번호 및 가입자 번호를 누르면 된다. 공중전화는 시내 요소마다 설치돼 있으나 휴대폰 사용이 늘어나자 점점 사라지는 추세이다. 동전 사용 공중전화는 중앙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며, 대부분은 카드 사용 전화기이므로 전화카드를 미리 구입해야 한다. 스웨덴의 주요 지역번호는 스톡홀름 08, 요테보리 031, 옴살라 018, 룬드 046 등이다.

전압/플러그

전자제품의 경우 전압은 230V로 우리나라의 220V와 약간 차이가 있으나 사용에 큰 무리는 없다. 그러나 주파수의 경우 여타 유럽과 같이 50Hz로서 우리나라의 60Hz용으로 제조한 모터가 큰 세탁기 등의 경우는 장기간 사용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식수

스웨덴의 수도물은 그대로 식수로 사용할 수 있으며 질이 매우 양호하다. 그밖에 슈퍼마켓 등지에서는 미네랄 워터를 구입할 수 있다.

나. 차량 구입 및 운전면허

구매방법

스웨덴에서 차량을 구입할 때는 차량 딜러를 이용하는 방법과 개인적으로 구매하는 방법이 있다.

차량 딜러를 이용할 경우, 구매가는 비싸지만 개런티가 있어 안전한 구매가 가능하다. 개인적으로 차량을 구매하는 방법으로는 스웨덴 최대 규모의 중고거래 사이트인 Blocket(www.blocket.se)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량 딜러를 통해 구입하는 것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

차량가격

스웨덴 최대 규모의 중고거래 사이트인 블로켓의 현지 판매 차량의 가격 수준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블로켓: www.blocket.se

운전면허 취득

스웨덴 운전면허 법은 유효한 외국 운전면허증에 대해 스웨덴 내에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나, 인정 범위에 대해서는 유럽 경제 지역(European Economic Area: EEA) 국가와 여타 국가에 대해 차별을 두고 있다. EEA 국가 운전면허증에 대해서는 동 소지자가 스웨덴에 주민등록을 했는지에 상관없이 스웨덴 내에서의 효력을 인정해주나, 여타 국가의 운전면허증에 대해서는 소지자의 스웨덴 주민 등록일로부터 1년간만 효력을 인정해주고 스웨덴 면허증으로 교환 발급해 주지 않는다. 단 일본과 스위스 운전면허증은 스웨덴 면허증으로 교환해 준다.

한편, 상사 주재원과 같이 일정 기간 스웨덴에 체류하는 외국 운전면허증 소지자의 경우, 예외항목을 두어 스웨덴 주민등록일로부터 1년까지만 유효하다는 외국 운전면허증의 스웨덴 내 효력 규정에 대한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 행정 관청은 동 면제 신청이 충분한 사유가 있고, 교통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스웨덴 체류 동안 외국 운전면허의 효력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해 주나 절차가 복잡하고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다. 은행 계좌 개설

주요은행

- 스웨덴 중앙은행
 - 홈페이지: www.riksbank.se
- Nordea 은행
 - 홈페이지: www.nordea.se
- SEB 은행

- 홈페이지: www.seb.se

o Swedbank 은행

- 홈페이지: www.swedbank.se

o Handelsbanken 은행

- 홈페이지: www.handelsbanken.se

계좌 개설방법

공공요금 납부 등 대부분은 현금을 이용하지 않고 청구서를 받은 후 은행계좌에서 이체하기 때문에 은행계좌를 반드시 개설해야 한다. 계좌를 개설할 때 자동이체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은행의 단말기를 통해 직접 계좌이체를 할 수도 있으며, 인터넷 뱅킹을 통한 계좌 이체도 가능하다. 대표적인 스웨덴 은행으로는 SEB, Nordea, Handelsbanken, Swedbanken 등이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통장은 별도로 없고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은행 잔고 및 출입금 확인서(bank statement)가 송부된다.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스웨덴 주민등록번호(Personnummer)가 명기된 ID카드(신분증)가 필요하다(SEB 은행의 경우 고용계약서, 거주허가서, 여권만으로도 계좌 개설이 가능). 계좌 개설 시 그에 따른 계좌 사용료, 카드 발급비, 인터넷 뱅킹 사용료 등의 비용이 선택에 따라 추가된다.

라. 교육

- 주요 국제학교

o BISS (British International School of Stockholm)

도시명	스톡홀름(Stockholm)
커리큘럼	유치원~13학년
학비	o 신청비 : SEK 1,500 o 등록비 : SEK 40,000 o 과정 - 유아 : SEK 123,000 - 1학년 : SEK 120,000 - 12학년 : SEK 148,800 - 13학년 : SEK 148,800
홈페이지	http://www.bisstockholm.se
비고	영국 학교. 전화: +46-8-755 23 75

o Stockholm International School

도시명	스톡홀름(Stockholm)
커리큘럼	유치원~고등학교

학비	○ 신청비 : SEK 2,000 ○ 등록비 : SEK 40,000 ○ 과정 - 유아 : SEK 125,000 - 1학년 : SEK 11,200 - 12학년 : SEK 158,000
홈페이지	http://www.stockholmis.se
비고	스톡홀름 국제학교. 전화: +46-8-412 4000

〈자료원 : 해당 학교 홈페이지〉

- 현지학교

○ Rodabergsskolan

도시명	스톡홀름(Stockholm)
커리큘럼	초등학교~중학교
학비	무료
홈페이지	http://www.rodabergsskolan.stockholm.se
비고	전화: +46 8 508 44 800

〈자료원 : 해당 학교 홈페이지〉

마. 병원

○ Danderyd Vardcentral

도시명	스톡홀름(Stockholm)
주소	Golfvagen 8, 182 31 Danderyd, Stockholm
전화번호	(+46) 8 123 36500
진료과목	보건소
비고	1차 진료기관 Morby Vardcentral에서 Danderyd Vardcentrl로 개명

○ Danderyd sjukhus

도시명	스톡홀름(Stockholm)
주소	Entrevagen 2, 182 88 Stockholm
전화번호	(+46) 8 123 550 00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소아과, 내과, 외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등 종합진료과목
----	----------------------------------

○ Karolinska sjukhus

도시명	스톡홀름(Stockholm)
주소	Karolinska Universitetssjukhuset, Eugeniavagen3, 171 76 Solna, Stockholm
전화번호	(+46) 8 517 700 00
진료과목	소아과, 내과, 외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등 종합진료과목
비고	Karolinska 의대 부속 병원

<자료원 : 해당 병원 홈페이지>

바. 쇼핑 및 여가생활

- 쇼핑센터/몰/백화점

○ Ahlens

도시명	스톡홀름
주소	Drottninggatan 31, 111 51 Stockholm
홈페이지	https://www.ahlens.se/
비고	스웨덴 최대 백화점 체인

○ Mall of Scandinavia

도시명	스톡홀름
주소	Stjärntorget 2, 169 79 Solna, Stockholm
홈페이지	https://www.mallofscandinavia.se/
비고	스웨덴 최대 실내 쇼핑몰

○ NK 백화점

도시명	스톡홀름
주소	Hamngatan 18-20, 111 47 Stockholm
홈페이지	https://www.nk.se/stockholm
비고	스웨덴 최고급 백화점

<자료원 : 해당 쇼핑몰 홈페이지>

- 식품점

o ICA

도시명	스웨덴 전역
주소	스웨덴 전역
취급 식료품	과일, 생선 등 각종 식료품과 특산품
비고	스웨덴 최대 생필품매장 체인

o Coop

도시명	스웨덴 전역
주소	스웨덴 전역
취급 식료품	과일, 생선 등 각종 식료품과 특산품
비고	생필품매장 체인 중 하나

o Hemkop

도시명	스웨덴 전역
주소	스웨덴 전역
취급 식료품	과일, 생선 등 각종 식료품과 특산품
비고	생필품매장 체인 중 하나

<자료원 : 생필품 매장체인 홈페이지>

- 기타 편의시설

o Stockholms GK

도시명	스톡홀름(Stockholm)
주소	Kevinge strand 22, 182 57 Danderyd, Stockholm
홈페이지	http://stockholmsgolfklubb.se/
소개	단데뤼드 소재 골프장

o Huvudstads GK

도시명	스톡홀름(Stockholm)
주소	Lindovagen 1, 186 92 Vallentuna, Sweden

홈페이지	http://www.huvudstadensgolf.se/
소개	스톡홀름 외곽 발렌투나지역 소재 골프장

◦ ULLNA GK

도시명	스톡홀름(Stockholm)
주소	Roslagsvagen 36, 184 94 Akersberga, Stockholm
홈페이지	http://www.ullnagolf.se/
소개	스톡홀름 소재 골프장

◦ Eriksdalsbadet

도시명	스톡홀름(Stockholm)
주소	Hammarby slussvag 20, 118 60 Stockholm
홈페이지	https://m.facebook.com/eriksdalsbadet
소개	스웨덴 최대의 실내수영장으로 27,500m2 규모, 여름에는 야외 풀(Pool) 개장

〈자료원 : 해당 골프장 및 수영장 홈페이지〉

사. 현지 공휴일

공휴일명	시작일	종료일
예수공현일	2023-01-06	2023-01-06
신정	2023-01-01	2023-01-01
부활절 연휴	2023-04-10	2023-04-07
노동절	2023-05-01	2023-05-01
예수승천일	2023-05-18	2023-05-18
신정 이브	2023-12-31	2023-12-31
국경일	2023-06-06	2023-06-06
하지	2023-06-24	2023-06-23
만성일	2023-11-04	2023-11-04
크리스마스 연휴	2023-12-26	2023-12-24
성령강림절	2023-05-28	2023-05-28

〈자료원 : www.kalender-365.se〉

10. KOTRA 무역관 안내

○ 스톡홀름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 Svardvgen 11C, SE-182 33, Danderyd, Sweden
- 우편배송지 :
Korea Business Center (회사명)
Svardvagen 11C (Street Address)
182 33 Danderyd (우편번호, City)
Sweden (국가)
- 전화번호 : (46-8) 30 8090
- 이메일 : sto_ktc@kotra.or.kr
- 홈페이지 : www.kotra.or.kr/KBC/stockholm

공항-무역관 이동

스톡홀름 무역관은 스톡홀름 시 외곽 북쪽에 위치해 있으며, 알란다(Arlanda) 국제공항에서는 35km 떨어져 있다.

○ 공항버스(Flygbussarna/ Airport Coaches) 이용 시-알란다 공항
Arlanda(알란다) 공항에서 스톡홀름 시내(City Terminal)까지 공항버스(약 30분 소요)를 이용한다. 스톡홀름 시내 공항버스 터미널에서 스톡홀름 무역관까지는 택시로 약 30분 소요된다. 공항버스 운행시간(5:00~1:00) 15분마다 운행, 행선지가 3개로 나누어지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무역관으로 올 경우 Stockholm City 행 승차(가격 : 편도 139SEK, 왕복 219SEK) *인터넷 구매시 편도 119SEK, 왕복 189 SEK

○ 알란다 익스프레스(Arlanda Express) 이용 시
알란다 공항에서부터 스톡홀름 중앙역까지(평일 러시아워 시 5회/시간, 기타 매시 05, 20, 35, 50분 출발) 논스톱 운행되는 초고속열차로서 편하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으며 중앙역에서 지하철로 환승해야 한다(가격: 편도299SEK, 왕복 579SEK, 소요시간 20분).

○ 택시 이용 시
알란다 공항 각 터미널에서 택시를 잡을 수 있으며, 요금은 택시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700SEK 내외의 고정요금이 적용된다.
(Stockholm Taxi : 575SEK)

○ 지하철 이용 시
지하철 적색선을 타고 시내 중앙역(T-centralen)에서 Morby Centrum 방향으로 와서 종착역인 Morby Centrum역에서 하차한다. 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있다.

국가정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